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Analysis of the
2027 Tax Expenditure Budget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총 괄 | 한 석 현 |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이 진 우 | 조세분석심의관
백 경 업 | 세제분석2과장
박 연 서 | 세제분석1과장

작 성 | 김 주 현, 신 홍 철
김 효 경, 이 유 섭
박 지 원 |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엄 상 미 | 행정실무관
허 성 혁 | 자료분석연구원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국세감면액 전망치 87.0조원보다 17.9조원(20.6%) 증가한 수준으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국가의 세입 감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규모와 수혜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에 근거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를 지원하고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발간하여 조세지출의 주요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려는 17개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전환과 관련하여 지원 규모와 수혜대상의 변화 분석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지원의 연속성과 정책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세체계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 방안 및 조세지출 전망 오차 축소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부문별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정책목적과 수혜대상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유사·중복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건대, 본 보고서가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조세지출의 효과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차 례

I. 개 관 / 1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1
가. 2027년 조세지출예산 규모	1
나. 국세감면율 현황	3
다. 2027년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4

II.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17

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분석	17
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조세지출 전망	17
나. 분석의견	20
2. 총량 분석	29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	29
나. 12대 분야별 분석	35

III. 조세지출제도 이슈 분석 / 51

1.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분석	51
가.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항목	52
나.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항목	58
다. 유사 재정사업 통합 항목	65
라. 종합의견	78
2.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분석	81
가. 2026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실시 현황	81
나. 2026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85
다.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08

3.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가.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수립 및 조세지출의 구별 기준 공개 필요	120
나. 구조적 보정 항목의 조세지출 제외 사유 명시 필요	121
다. 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해당여부 검토 필요	122
라. 반복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검토와 실적 관리 필요	124
마.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분류기준 개편 검토 필요	129
4.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	133
가. 조세지출 전망오차 현황	133
나. 조세지출 전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0
5. 조세지출-재정지출 부문별 연계분석	144

부 록 / 159

1. 운용중인 조세지출 현황(경과규정 포함 총 290개)	159
2. 조세지출 신설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	175
3. 조세지출 폐지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	177

〈박스 차례〉

BOX 1.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	14
BOX 2.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 방식	19
BOX 3. 조세지출 전망오차의 시점 간 연계성	143

〈표 차례〉

[표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1
[표 2]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 2018~2027년	3
[표 3]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국세감면을 추이	3
[표 4] 12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24~2027년	5
[표 5] 16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18~2027년	6
[표 6] 세목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8~2027년	9
[표 7]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8~2027년	11
[표 8]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추이: 2022~2027년	13
[표 9]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2025~2027년	16
[표 10] 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18
[표 11] 2027년 국세감면을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18
[표 12]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법인세	22
[표 13]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소득세	23
[표 14]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개별소비세 ..	24
[표 15] 심층평가 발취;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유지시 예상 조세지출 규모	26
[표 16] 2018~2027년 총 재정지출	29
[표 17] 2018~2027년 재정지출 추이	31
[표 18] 2018~2027년 조세지출 추이	32
[표 19]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2027년 예산안 기준	33
[표 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36
[표 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36
[표 22] R&D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37
[표 23] R&D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38
[표 24] 환경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39
[표 25] 환경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39
[표 26]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0
[표 2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0
[표 28]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1
[표 29]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2

[표 30]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2
[표 31]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3
[표 32]	SOC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4
[표 33]	SOC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5
[표 34]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5
[표 35]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6
[표 36]	교육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6
[표 37]	교육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7
[표 38]	국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7
[표 39]	국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8
[표 40]	외교·통일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48
[표 41]	외교·통일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49
[표 42]	조세지출 재정전환 17개 항목 및 전환 사유	52
[표 43]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53
[표 44]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55
[표 45]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56
[표 46]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선별·효율적 지원	59
[표 47]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선별·효율적 지원	61
[표 48]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선별·효율적 지원	63
[표 49]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유사 재정사업 통합	67
[표 50]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유사 재정사업 통합	70
[표 51]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유사 재정사업 통합	73
[표 52]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항목(1건)	81
[표 53]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의무심층평가(14건)	83
[표 54]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임의심층평가(17건)	83
[표 55]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86
[표 56]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87
[표 57]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88
[표 58]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89
[표 59]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89
[표 60]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90

[표 61]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92
[표 62]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일반택시 부가카치세 납부세액 경감	93
[표 63]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94
[표 64]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95
[표 65]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 인지세 면제	96
[표 66]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97
[표 67]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소득세 관련 제도	99
[표 68]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법인세 관련 제도	100
[표 69]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개별소비세 관련 제도	101
[표 70]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유류세 등 간접세 관련 제도	103
[표 71]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	105
[표 72]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관련 제도	107
[표 73]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건수 비율: 2022~2026년	109
[표 7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109
[표 75]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 내용 및 사유	111
[표 76]	심층평가 결과의 반영여부	112
[표 77]	정부의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안	119
[표 78]	재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등	120
[표 79]	할당관세 품목 반복 지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	125
[표 80]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126
[표 81]	탄력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 반영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128
[표 82]	호주의 사례; 조세지출 보고 체계에 포함되는 관세 수입	129
[표 83]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131
[표 84]	적극적 관리대상 일몰 여부 현황	131
[표 85]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추이: 2016~2025년	134
[표 86]	세목별 예산연도 조세지출 전망 오차율	136
[표 87]	조세지출 규모별 전망 오차율	138
[표 88]	전망-실적 간 전망오차 상위 10개 항목	139
[표 89]	16대 분야 41개 부문별 조세지출 현황	147
[표 90]	16대 분야 75개 부문별 재정지출 현황	148
[표 91]	75개 부문별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결과	153

〈그림 차례〉

[그림 1] 국세감면액 추이: 2018~2027년	2
[그림 2]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2018~2027년	4
[그림 3] 상위 3대 분야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8~2027년	7
[그림 4] 세목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8~2027년	9
[그림 5] 수혜자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22~2027년	13
[그림 6] 호주의 사례; 조세지출의 대략적인 규모를 금액 범주로 제시	28
[그림 7] 12대 분야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2027년 전망치 및 예산안 기준	35
[그림 8] 양육지원제도별 공제액 및 지급단가 비교: 2026년, 2027년 상·하반기	54
[그림 9] 기준연도 전망오차율 추이	135
[그림 10] 예산연도 전망오차율 추이	135

요 약

I. 개 관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2026년 87.0조원 대비 17.9조원(20.6%) 증가할 전망
 - 2025년 국세감면액 실적은 76.1조원으로 전년 대비 5.6조원(7.9%) 증가하였으며, 2026년 잠정치는 87.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9조원(14.3%) 증가
 -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하여, 2027년에는 최초로 100조원을 초과할 전망
- 최근 10년(2018~2027년) 동안 국세감면액은 44.0조원에서 104.9조원으로 증가하여 국세수입 총액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표]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18	'19	'20	'21	'22	'23	'24	'25	'26 ^e	'27 ^e	연평균 증가율
국세 감면액	44.0	49.6	52.9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국세수입 총액 ¹⁾	302.7	306.7	303.7	364.0	422.9	370.4	365.7	402.1	444.8	615.3	8.2

주: 1) 국세수입 총액은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산한 금액

1. 국세감면액은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2. 국세수입 총액은 2026년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은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세감면율 현황)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전년 대비 1.8%p 하락하고, 법정한도(16.6%)를 2.1%p 하회할 전망
 -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국세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감면율 하락이 조세지출 규모의 축소로부터 야기된 것은 아님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 100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2027년 조세지출은 투자·연구개발 관련 감면 확대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기업에 대한 귀착 비중이 증가할 전망

- 12대 예산분류 기준으로 보건·복지·고용 44.2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8.3조원, 일반·지방행정 11.3조원 순으로 규모가 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62.1%, R&D 분야는 51.4% 증가할 전망
- 수혜자별로는 개인 55.1조원(52.5%), 기업 49.2조원(46.9%), 구분곤란 0.6조원(0.6%)으로 전망
 - 상호출자제한기업 귀착액은 2026년 10.8조원에서 2027년 24.6조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이 12.4%에서 23.4%로 확대
- 상위 20개 항목의 감면액은 2027년 85.1조원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여 대규모 항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전망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6.0조원에서 2027년 16.6조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 기간 6.9조원에서 10.5조원으로 증가

II.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분석

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조세지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 전망 104.9조원보다 2.6조원(2.5%) 낮은 102.3조원으로 전망

- 2026년 잠정치 87.0조원 대비 15.3조원(17.6%) 증가하는 수준으로, 정부 전망 증가율 20.6%보다 3.0%p 낮음
- 정부와의 전망 차이는 개별 항목의 추계 방식과 반영 지표, 최저한세 및 이월세액공제 적용 등에 관한 전제 차이에서 발생

[표] 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실적)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		차이 (C-B)	전년 대비	
			정부(B)	NABO(C)		정부 (B-A)	NABO (C-A)
조세지출	761,084	870,132	1,049,307	1,023,261	△26,046 (△2.5)	179,175 (20.6)	153,129 (17.6)

주: ()는 정부 전망치 대비 NABO 전망치 차이율과 2026년 잠정치 대비 2027년 전망치 증가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4.1%로, 정부 전망보다 0.4%p 낮고 법정한도 16.6%를 2.5%p 하회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수입 총액은 정부보다 9.9조원 높게, 국세감면액은 2.6조원 낮게 전망한 데 기인

[표] 2027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억원, %, %p)

구 분	정부 전망(A)	NABO 전망(B)	차이(B-A)
국세수입액	6,153,088	6,252,529	99,441 (1.6)
국세감면액	1,049,307	1,023,261	△26,046 (△2.5)
국세감면율(C)	14.5	14.1	△0.4
법정한도(D)	16.6	16.6	-
차이(C-D)	△2.1	△2.5	-

주: ()는 정부 전망치 대비 NABO 전망치 차이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 (세목별 전망차이) 항목별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간 전망 전제 상이

- (법인세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 확대와 함께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에 따른 실제 공제 가능 규모를 고려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부보다 1조 9,867억원 낮은 8조 5,24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정부보다 4,017억원 낮은 16조 1,566억원으로 전망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증가로 세액공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될 수 있어, 투자 확대가 같은 규모의 당해연도 국세감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근로소득 및 보험료 증가, 배당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증가율과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반영하여 정부보다 4,132억원 높은 9조 1,723억원으로 전망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는 임금근로자 수 및 근로소득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정부보다 1,922억원 높은 3조 8,244억원으로 전망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최근 배당소득 실적, 상장법인의 결산 배당 증가 및 추가 현금배당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정부보다 1,824억원 높은 5,613억원으로 전망
- (기타 세목)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감면한도 축소와 함께 적용 세율 및 차량당 실제 감면액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2027년 감면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국세감면액을 4,768억원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의 기본세율 환원과 기존 차량당 평균 감면액을 고려하여, 정부보다 1,018억원 높은 5,786억원으로 전망
- (추정곤란 항목의 정보 제공 개선) 정부가 '추정곤란'으로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도 추계 가능 부분을 반영하고, 추정이 어려운 사유와 예상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정부는 전체 251개 항목 중 209개 항목의 감면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42개 항목은 추정곤란으로 제시
 - 실제 감면이 발생하는 항목의 규모가 총액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과소하게 제시될 우려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재정지출 전환 이후에도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 예상되므로 이를 전망에 반영할 필요
 - 정부는 사업 추진 및 개량·증설 시기 등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2027년 감면액을 추정곤란으로 제시

- 그러나 경과조치 적용 대상 사업과 개량·증설 투자계획 등을 활용하면 감면액의 일부를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추정근란 사유와 부분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호주 사례와 같이 금액 구간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총량 분석

□ (총 재정지출 분석) 2027년 총 재정지출(=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은 925.8조원으로 2026년(840.0조원) 대비 10.2% 증가

- 최근 10년(2018~2027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인데 비해, 조세지출 증가율은 10.1%로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2%에서 2027년은 11.3%로 확대될 전망
- 지출 성질별로 보면, 2018~2027년 재정지출은 의무지출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조세지출은 2024년까지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증가폭이 컸으나 2025~2027년에는 일몰기한이 설정된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기간 기준으로 이들 항목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18~'27년 재정지출 증감률(%): 의무지출 7.9, 재량지출 6.7
 - '18~'27년 조세지출 증감률(%): 일몰 없는 항목 8.1, 일몰 있는 항목 12.4
 - * '18~'25년 조세지출 증감률(%): 일몰 없는 항목 8.6, 일몰 있는 항목 7.6
 - * '25~'27년 조세지출 증감률(%): 일몰 없는 항목 6.6, 일몰 있는 항목 31.0

□ (12대 분야 분석) 주요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의 조세지출 전망액은 총 98.7조원으로 같은 해 조세지출 총액의 94.1% 비중을 차지

- (총 재정지출(재정지출+조세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환경,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고용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 비중)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전체 조세지출과 전체 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 비중에 차이가 나타남

- (조세지출) 전체 조세지출 중 분야별 비중은 보건·복지·고용 42.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6.5%, 일반·지방행정 10.8% 순
- (재정지출) 전체 재정지출 중 분야별 비중은 보건·복지·고용 35.2%, 일반·지방행정 18.2%, 교육 13.5% 순

Ⅲ. 조세지출제도 이슈 분석

1.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분석

- (현황) 정부는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및 유사 재정사업 통합을 위해 17개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
 - 재정지출 전환 결과는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 대체적으로 기존 재정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
 - 혼인세액공제 → 혼인지원금, 연안화물선 유류세 감면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
 - 기존 조세지출 대비 지원내용이 변경되는 항목도 있으며, 조세지출과 재정전환의 대응관계가 불명확한 항목도 존재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조금 지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 주택청약 가입요건 완화
 - 다만, 지원금 지급 시차와 경과조치 등을 이유로 2027년 예산안에 전환에 따른 추가지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도 존재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문제점) 재정전환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환의 타당성, 수혜 변화, 지원의 연속성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한계
 - (전환의 타당성) 일부 항목은 종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대응관계가 불명확하며, 지원방식 변경만으로는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제약하던 요인이 해소되기 어려움
 - 목재펠릿에 대한 지원대상이 연료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면제에서 신규 보일러 구입 지원으로 변경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조성하던 감차 재원을 예산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재원조성 방식 변경만으로 감차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
 - (지원규모·수혜 변화) 재정전환과 기존 사업 확대·개편이 병행되고 수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전환 자체에 따른 지원규모와 수혜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혼인 및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직접 지원으로 전환 시 면세자 등 결정세액이 작아 지원받지 못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수혜인원 및 지원액 규모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전환 전후 비교가 어려움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지원대상에 주택관리공단 관리주택 외 지방자치단체 관리 주택에 대한 예산 등이 별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이 축소될 가능성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재정전환과 함께 기존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나, 재정전환에 대응하는 사업 규모 및 재정소요 변화가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음
 - (지원의 연속성) 재정전환 시 국가-지자체간 재원분담 구조와 지원대상 설정, 신청·선정 절차 등에 따라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혼인·출산지원금 등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설계된 사업의 경우 재정전환 이후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
 -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
 - (성과관리) 조세특례 종료와 재정사업의 편성·집행을 각각 관리할 경우, 전환 목적의 달성 여부와 전체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재정전환의 근거와 사업설계를 명확히 하고, 전환 전후 수혜 변화와 정책성과를 연계하여 조세지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전환의 타당성) 조세지출의 종료와 정부지원 자체의 지속 필요성을 구분하고, 조세지출 유지·보완 대비 재정전환의 이점과 종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설계 방안을 제시할 필요
 - (지원규모·수혜 변화) 종전 조세지출을 대체하는 예산안과 별도 사업 확대분을 구분하고, 전환 전후 지원규모·수혜인원 및 소득수준별 수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

- (지원의 연속성) 지방비 미확보, 예산소진 및 신청·선정 절차에 따른 지원공백을 점검하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은 향후 지원기준·재원분담·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성과관리) 종전 정책목표와 재정전환 목적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고, 준치 조세특례와 관련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되 부처 간 평가·조정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

2. 정부의 성과평가 분석

- (현황) 2026년 총 32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1건) 및 심층평가(의무 14건, 임의 17건) 실시
 -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의 평가의견이 세법개정안에 반영
 - 심층평가 1건은 제도 존폐에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몰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
- (문제점)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사례도 존재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비율은 2022~2026년 75~88%으로 높은 수준
 - 2026년의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4건 중 3건이 면제
 -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 조세특례도 정책적 타당성 등을 근거로 일몰 연장 의견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됨
- (개선방안)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축소하고,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특례는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료 필요
 - 현행 법령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사후 효과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책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조세특례는 원칙적으로 일몰에 따라 종료하고, 준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조세특례에 준하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준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

3.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정부는 조세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조세체계 수립 및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
 -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개별 항목을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및 구조적 지출로 구분하고 관련 통계를 제시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기준조세체계 개념을 설명하고, 현행 조세지출 중 일부 항목을 기준조세체제로 편입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따른 통계를 제시
 - (개편방향)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및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과세대상·세율체계 등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항목과 조세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할 방침
 - 기준조세체계 중 세법 외 공법상 의무에 따른 지출의 세법상 보정항목 등은 구조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세감면액에서 제외하되, 세부내역은 공개 계획
- (문제점) 그동안 기준조세체계가 부재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관리대상 분류체계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지출 정비 및 관리의 실효성이 제약됨
 - 조세지출의 구체적 범위를 먼저 확정된 후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관리유형을 구분하여야 하나, 관리대상 분류가 선행되고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후속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
- (개선방안) 조세지출의 범위 및 유형별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분류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수립)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구조적 보정 항목의 조세지출 제외 사유 명시 필요) 정부가 제시하는 구조적 보정 항목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경우 성과평가 등 조세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사유 설명 필요

- (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해당여부 검토) 타법상에 규정된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기준조세체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함께 관리할 필요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조세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
- (탄력세율 제도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및 실적관리 필요) 장기간 지속 운영되고 있는 일부 탄력세율 제도의 경우 조세지출과 유사한 국세감면 효과를 보이고 있어 조세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조세지출결산서를 활용하여 실적 관리 가능
 - 할당관세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을 국세감면액에 포함하여 추산시, 2021~2025년 동안 두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은 연평균 4.8조원 규모였으며, 이를 반영시 국세감면율 또한 연평균 0.9%p 상승
-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분류기준 개편 필요) 현행 조세지출 관리유형 분류기준의 경우에도 정비가능성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조세체계 수립과 함께 관리유형 개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

4.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

- (현황) 2025년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오차 절댓값 합계는 9.3조원으로, 전년(12.9조원) 대비 △3.6조원(△28.2%) 감소
 - 2025년 전망오차율은 12.3%로, 최근 10년 평균(13.7%)을 하회하였으나,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전망오차율은 14.1%로 이전 5년(2016~2020년)의 13.3%보다 소폭 확대
- (문제점)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전망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단순 합산한 전망오차만으로는 전망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
 - 최근 조세지출 전망의 오차율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항목별 전망오차의 절댓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항목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항목별 오차가 서로 상쇄될 경우 단순 합산한 전체 전망오차는 실제 전망오차의 규모를 과소하게 나타낼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전망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전망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조세지출결산서의 전망오차 분석도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어 전망오차의 발생 원인과 전망방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전망오차의 측정·관리 방식을 보완하고, 개별 항목의 전망방법 및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세지출결산서의 사후분석을 강화할 필요
 - 조세지출결산서에 단순 합산한 전망오차와 항목별 전망오차의 절댓값을 합산한 결과를 함께 제시·관리하여 전망오차의 방향과 전반적인 규모를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전망오차가 큰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망방법, 주요 활용변수, 전망치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세지출결산서의 전망 대비 실적분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항목의 전망오차 발생 원인과 전망방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 전망방법의 개선에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조세지출-재정지출 부문별 연계 분석

- (현황) 12대 분야의 75개 부문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결과, 6개 부문에서 조세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여 일부 정책영역에서는 조세지출이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
 - 교육일반(87.3%), 사회복지일반(82.5%), 산업·중소기업일반(81.5%), 산업혁신지원(71.8%), 보건의료(65.6%),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53.0%)
- (문제점)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분야별 조세지출 규모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일부 항목은 복수 분야·부문에 해당하여 정책영역별 귀속 규모 파악도 곤란

- 부문별 연계는 조세지출 비중이 높거나 정책수단별 구성 변화가 큰 영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나,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분야별 조세지출 규모만을 제공
 - 또한 동일한 기능별 분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어 부문별 구성비만으로 정책수단 간 실질적 대응관계나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
- (개선방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통합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우선 검토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영역의 관련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내용 등을 비교하여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 아울러 조세지출의 분야·부문 분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귀속정보 구체화 및 관련 자료 제공을 확대할 필요

I. 개 관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가. 2027년 조세지출예산 규모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 조세지출예산액(이하 ‘국세감면액’으로 표기한다)은 2026년 87.0조원 대비 17.9조원(20.6%) 증가한 104.9조원 규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이 제시되는데, 2025년 국세감면액 실적치는 2024년(70.5조원) 대비 5.6조원(7.9%) 증가한 76.1조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6년 국세감면액은 잠정치 기준으로 2025년 대비 10.9조원(14.3%) 증가한 87.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표 1]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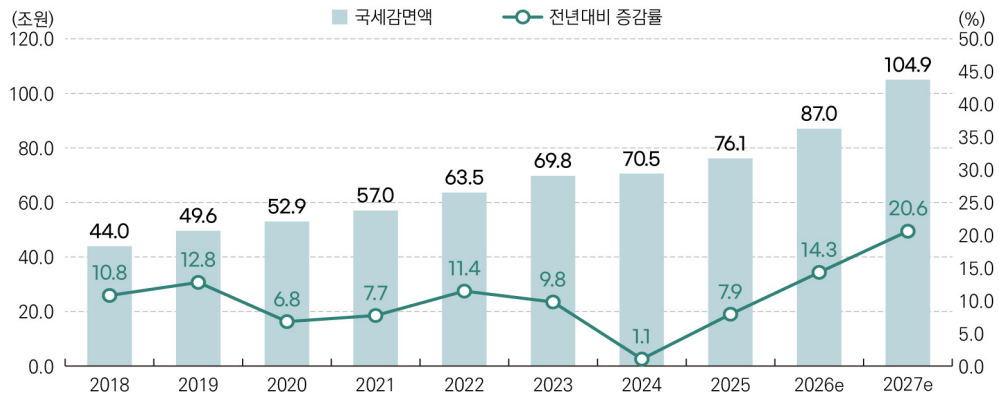
	2025 실적	2026 잠정(A)	2027 전망(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국세감면액	76.1	87.0	104.9	17.9	20.6
- 조특법상 조세지출	39.7	47.8	63.2	15.5	32.3
- 개별법상 조세지출	36.0	38.9	41.5	2.6	6.7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0.4	0.3	0.2	△0.1	△38.3
국세수입 총액 ¹⁾	402.1	444.8 ²⁾	615.3 ²⁾	170.6	38.3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

2)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2025년 조세지출 결산(실적), 2026년 및 2027년 전망치로 구성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10년(2018~2027년) 동안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4.0조원이던 국세감면액은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으로 인해 50조원 규모까지 확대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22년 6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후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향상을 통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규모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6년 국세감면액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인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증가하여 87.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 또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국세감면액이 최초로 100조원을 초과한 104.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국세감면액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세수입 총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302.7조원에서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03.7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국세수입이 422.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법인 실적 악화로 인해 2022년 대비 국세수입 총액이 소폭 하락하였다. 이후 법인 실적이 반등하며 2025년 국세수입총액 규모는 400조원대를 회복하였으며, 2026년에는 444.8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2027년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인해 국세수입총액이 615.3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18	'19	'20	'21	'22	'23	'24	'25	'26 ^e	'27 ^e	연평균 증가율
국세 감면액	44.0	49.6	52.9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국세수입 총액 ¹⁾	302.7	306.7	303.7	364.0	422.9	370.4	365.7	402.1	444.8	615.3	8.2

주: 1) 국세수입 총액은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산한 금액

1. 국세감면액은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2. 국세수입 총액은 2026년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은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국세감면을 현황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관리를 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규정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을 평균+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2026년 잠정치 기준 국세감면율(16.3%) 대비 1.8%p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율이 하락하는 것은 국세수입총액 증가에서 기인한다.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87.0조원)보다 17.9조원(2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세수입 총액이 2026년 444.8조원에서 2027년 615.3조원으로 170.6조원(38.3%)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4.5%로 전망되어 법정한도(16.6%)를 2.1%p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국세감면율 추이

(단위: 조원, %, %p)

	2025 실적	2026 잠정(A)	2027 전망(B)	전년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감면액(A)	76.1	87.0	104.9	17.9	20.6
국세수입 총액 ¹⁾ (B)	402.1	444.8 ²⁾	615.3 ²⁾	170.6	38.3
국세감면율[A/(A+B)]	15.9	16.3	14.5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³⁾	15.5	16.4	16.6	-	-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

2) 국세수입 총액의 경우 2026년은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 정부 국세수입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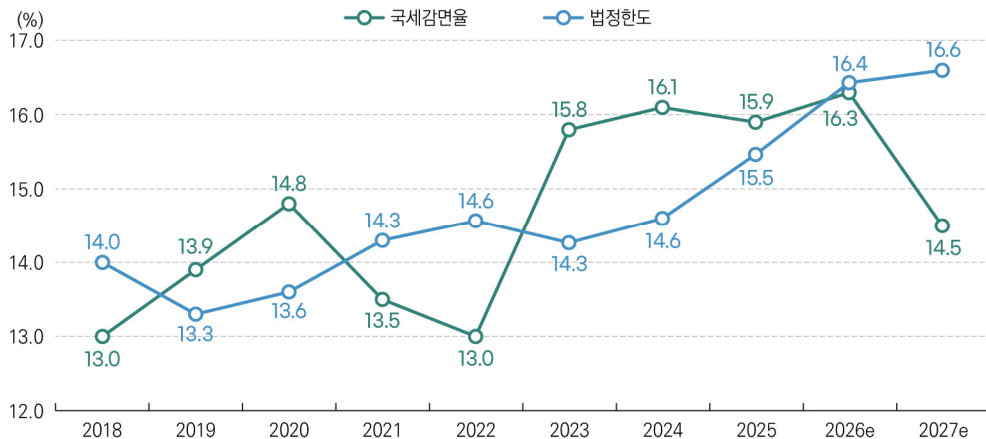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최근 10년(2018~2027년) 동안 국세감면율 추이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15.8%로 전년대비 2.8%p 증가한 후 최근 4년 동안 16% 내외를 유지하였다.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총액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4.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다. 2026년에는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나 법정한도를 하회하고, 2027년에는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법정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2027년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1) 예산분류 기준

가) 12대 예산분류 기준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24년 9월 이후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예산안·중기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통계를 2024년도부터 제시하였다. 12대 예산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16대 예산분야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보건·복지·고용’으로 통합되었고, ‘교통 및 물류’

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SOC’로 통합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신설된 ‘R&D’ 항목으로 분류되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R&D 관련 항목은 ‘R&D’ 분류로 중복하여 계상된다.

2027년 조세지출 예산 기준으로 12대 예산분야 중 국세 감면 규모가 큰 상위 분야는 보건·복지·고용(44.2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38.3조원), 일반·지방행정(11.3조원)이다. 2027년 국세감면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62.1% 증가하였으며, R&D 분야 역시 51.4%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12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24~2027년

(단위: 조원, %)

연번	분류	2024 (실적)	2025 (실적)	2026 (잠정)	2027 (전망)	연평균 증감률
1	일반·지방행정	9.4	10.0	10.4	11.3	6.3
2	공공질서·안전	0.0	0.0	0.0	0.0	-
3	외교·통일	0.001	0.001	0.001	0.001	0.0
4	국방	0.02	0.02	0.02	0.02	0.4
5	교육	1.0	1.0	1.1	1.2	5.9
6	문화·체육·관광	0.3	0.4	0.4	0.3	10.2
7	환경	2.1	2.5	3.2	2.9	11.1
8	보건·복지·고용	36.5	38.6	41.6	44.2	6.6
9	농림·수산·식품	6.0	5.8	5.6	5.7	△1.6
10	SOC	1.1	1.1	1.2	0.9	△5.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	16.6	23.6	38.3	39.4
12	R&D ¹⁾	3.0	4.2	7.0	10.5	52.2
(16대 분야 기준) 전체 ²⁾		70.5	76.1	87.0	104.9	14.2

주: 1)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
 2) 전체값은 12대 예산분류가 아닌 16대 예산분류를 기준으로 한 값으로,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값을 합하는 경우 이를 상회할 수 있음
 1.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16대 예산분류 기준

한편, 12대 예산분류 기준의 경우 일부 항목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R&D’에 중복 계상되어 있어, 12대 예산분류 기준에 따른 국세감면 총계값이 정부가 발표하는 국세감면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이하에서는 국세감면액의 과거 추이를 함께 살펴보기 위

해 16대 예산분류 기준으로 2027년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7년 조세지출 예산 기준으로 16대 예산분야 중 국세 감면 규모가 큰 상위 3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38.3조원), 사회복지(29.9조원), 보건(14.3조원) 분야이다. 최근 10년간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국세감면액이 가장 컸으나, 2027년의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14.7조원(62.1%) 증가함에 따라 국세 감면 규모가 가장 큰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상위 3대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82.5조원으로, 2026년 65.2조원 대비 26.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상위 3대 분야의 최근 10년(2018~2027년) 국세감면액은 연평균 11.4%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 중 해당 상위 3대 분야의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0.8%에서 2027년 78.6%로 7.8%p 확대될 전망이다.

[표 5] 16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o	2027 ^e	연평균 증감률
일반·지방행정		2.7	4.6	5.4	9.3	9.4	10.0	10.4	11.3	17.0
통일·외교		0.0	0.0	0.0	0.0	0.0	0.0	0.0	0.0	1.2
국방		0.0	0.0	0.0	0.0	0.0	0.0	0.0	0.0	△8.6
교육		1.4	1.0	1.0	1.0	1.0	1.0	1.1	1.2	△1.4
문화 및 관광		0.0	0.0	0.0	0.3	0.3	0.4	0.4	0.3	26.1
환경		1.1	1.5	1.8	1.9	2.1	2.5	3.2	2.9	11.3
사회복지		11.9	20.0	21.1	23.4	25.0	26.4	28.4	29.9	10.8
보건		6.1	7.9	9.1	10.6	11.4	12.2	13.2	14.3	9.9
농림수산		5.7	6.4	6.2	6.2	6.0	5.8	5.6	5.7	0.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	14.0	17.1	16.0	14.1	16.6	23.6	38.3	12.6
교통 및 물류		0.5	0.5	0.6	0.7	0.8	0.8	0.7	0.4	△1.4
국토 및 지역개발		1.3	1.1	1.2	0.4	0.3	0.3	0.5	0.5	△10.4
과학기술		0.0	0.0	0.0	0.0	0.0	0.0	0.0	0.0	6.6
전체		44.0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3대	합계(조원)	31.1	41.9	47.3	50.0	50.6	55.2	65.2	82.5	11.4
항목	비중(%)	70.8	73.5	74.5	71.6	71.7	72.6	74.9	78.6	1.2

주: 1.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2. 3대 항목(음영)은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분야를 지칭함

3. 16대 예산분류 중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 분야는 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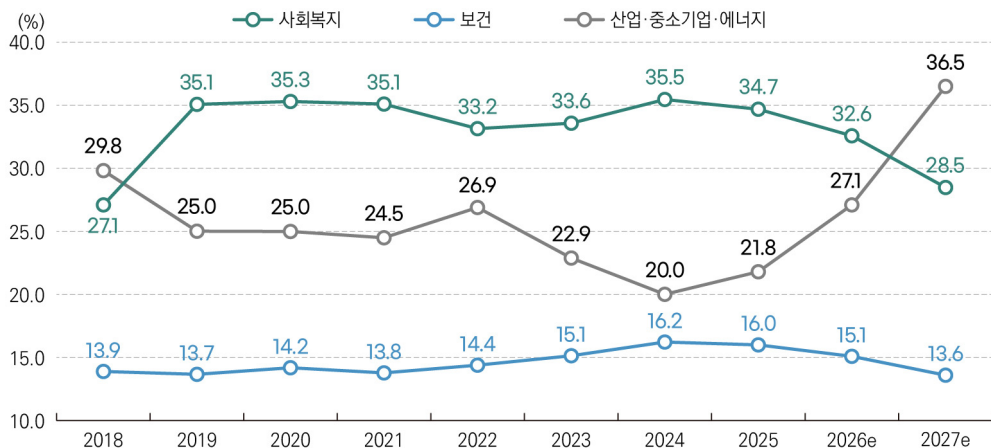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대 예산분류기준별 상위 3대 분야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2027년 기준 38.3조원으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대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전년 대비 증가분 +10.5조원, 이하 동일하게 전년대비 증가분)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조원)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9.8%에서 2024년 20.0%까지 감소하였으나, 2027년 36.5%로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2027년 기준 29.9조원으로 연금보험료공제(+0.5조원), 통합고용세액공제(+0.3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0.2조원) 등 ‘사회복지’ 분야 주요 제도의 감면 규모 확대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5.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에는 28.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2027년 기준 14.3조원으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0.7조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0.2조원) 등의 항목이 명목소득 증가에 연동되어 지속 상향하는 데에 따라 국세감면액도 2018년 이래 지속 증가하였다. 다만, 그 비중은 2024년 16.2%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는 추세로, 2027년 기준 전체 국세감면액 대비 비중은 1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상위 3대 분야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세목별 분류

세목별 국세감면액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대 세목의 국세감면액이 2027년 전망치 기준 99.4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81.5조원 대비 17.9조원 (22.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감면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특히 법인세 국세감면액이 2026년 18.5조원에서 2027년 32.8조원으로 14.3조원 (77.3%)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분을 크게 전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세목별로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7년 소득세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53.5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49.4조원 대비 4.1조원(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국세감면은 2018년 24.7조원에서 2027년 53.5조원으로 확대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0%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6.2%에서 2027년 50.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대 세목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법인세 분야 국세감면액은 2027년 32.8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18.5조원 대비 14.3조원(7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국세감면은 2018년 8.2조원에서 2027년 32.8조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2027년 법인세 국세감면 증가폭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3대 세목 중 법인세가 전체 조세지출 증가를 가장 크게 전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2027년 13.1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13.7조원 대비 0.6조원(4.4%) 감소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국세감면은 2018년 8.6조원에서 2027년 13.1조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7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감면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국세감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세목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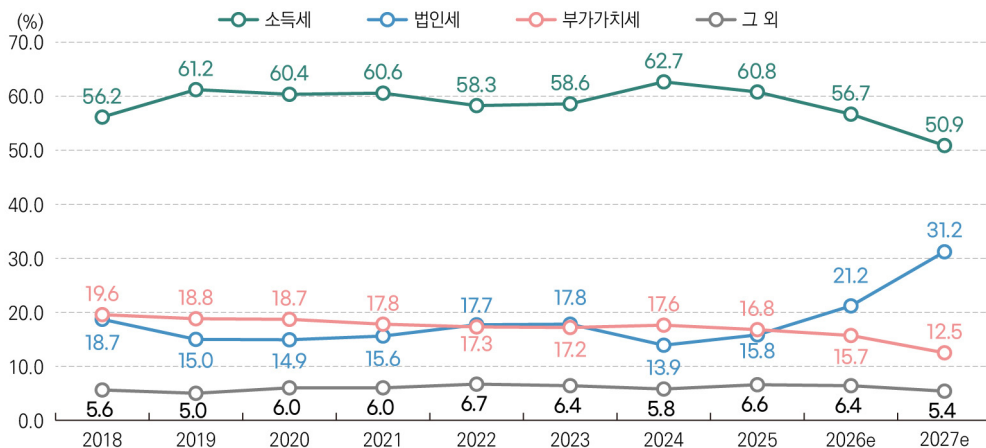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연평균 증감률
소득세		24.7	34.6	37.0	40.9	44.2	46.3	49.4	53.5	9.0
법인세		8.2	8.9	11.3	12.4	9.8	12.1	18.5	32.8	16.6
부가가치세		8.6	10.2	11.0	12.0	12.4	12.8	13.7	13.1	4.8
그 외		2.5	3.4	4.2	4.5	4.1	5.0	5.5	5.6	9.5
전체		44.0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3대 세목	합계 (조원)	41.5	53.6	59.3	65.3	66.4	71.1	81.5	99.4	10.2
	비중 (%)	94.4	94.0	93.3	93.6	94.2	93.4	93.7	94.7	-

주: 2026년은 잠정치 및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3대 세목의 조세지출 99.4조원은 같은 해 전체 조세지출 104.9조원의 9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소득세는 53.5조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31.2% 및 1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조세지출 내 3대 세목의 비중 추이를 보면, 소득세는 2018년 56.2%에서 2027년 50.9%로 낮아지는 반면, 법인세는 2018년 18.7%에서 2027년 31.2%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2018년 19.6%에서 2027년 12.5%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목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류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제6장에 걸쳐 조세 비과세·감면 등 개별 조세특례 제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에 따른 경우 2027년 조세지출 전망액 기준으로 국민생활안정 29.3조원(27.9%, 이하 전체 내 비중), 투자촉진 16.7조원(15.9%), 간접국세 15.2조원(14.4%), 연구개발 11.3조원(10.8%), 고용지원 6.3조원(6.0%) 순으로 국세감면액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2027년의 경우 투자촉진 분야의 국세감면액이 2026년 6.1조원 대비 10.6조원(173.8%) 증가한 16.7조원으로 전망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는 2026년 7.7조원에서 2027년 11.3조원으로 3.6조원(4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안정 분야의 국세감면액도 2026년 27.0조원 대비 2.3조원(8.5%) 증가한 2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간접국세 분야는 2026년 15.9조원에서 2027년 15.2조원으로 0.7조원(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전체 조세지출은 104.9조원으로 2026년 87.0조원 대비 17.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촉진 분야의 증가가 전체 조세지출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2018~2027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지원 분야가 연평균 31.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0.5조원에서 2027년 6.3조원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규모 증가로 인해 투자촉진 분야가 연평균 26.8% 증가하고, 연구개발 분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로 인해 연평균 16.7%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 분야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1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2018년 2.6조원에서 2027년 1.4조원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분야	2018	2022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연평균 증감률
국민생활안정	14.9 (33.9)	19.5 (30.7)	21.8 (31.3)	22.9 (32.5)	24.7 (32.5)	27.0 (31.1)	29.3 (27.9)	7.8
투자촉진	2.0 (4.5)	2.3 (3.6)	2.2 (3.1)	1.8 (2.6)	2.6 (3.4)	6.1 (7.0)	16.7 (15.9)	26.8
간접국세	9.7 (22.2)	12.3 (19.4)	13.3 (19.0)	13.7 (19.4)	14.3 (18.8)	15.9 (18.3)	15.2 (14.4)	5.0
연구개발	2.8 (6.4)	4.1 (6.5)	5.1 (7.3)	3.5 (5.0)	4.9 (6.4)	7.7 (8.8)	11.3 (10.8)	16.7
고용지원	0.5 (1.2)	4.0 (6.2)	4.6 (6.6)	5.0 (7.1)	5.5 (7.2)	5.8 (6.7)	6.3 (6.0)	31.9
근로·자녀장려	1.8 (4.2)	5.0 (7.9)	5.2 (7.5)	5.7 (8.1)	5.5 (7.3)	5.4 (6.2)	5.4 (5.1)	12.8
기타직접국세	1.6 (3.7)	3.5 (5.5)	3.7 (5.3)	3.6 (5.2)	4.0 (5.2)	4.2 (4.8)	4.4 (4.2)	11.8
중소기업	2.8 (6.3)	3.4 (5.3)	3.8 (5.4)	3.6 (5.1)	3.9 (5.2)	3.8 (4.3)	4.0 (3.8)	4.2
저축지원	1.6 (3.5)	2.0 (3.1)	2.6 (3.7)	3.3 (4.6)	3.1 (4.1)	3.3 (3.7)	3.6 (3.4)	9.8
지역균형발전	2.6 (6.0)	2.4 (3.8)	1.6 (2.3)	1.4 (1.9)	1.3 (1.7)	1.3 (1.5)	1.4 (1.4)	△6.4
기타	3.6 (8.2)	5.1 (8.0)	5.9 (8.5)	6.0 (8.5)	6.3 (8.2)	6.5 (7.6)	7.3 (7.1)	8.1
합계	44.0 (100.0)	63.5 (100.0)	69.8 (100.0)	70.5 (100.0)	76.1 (100.0)	87.0 (100.0)	104.9 (100.0)	10.1

주: 1) 기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타 항목, 공익사업지원,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등 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의 합계

1. 2027년 전망액 규모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분야별 ()는 각 연도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수혜자별 분류

조세지출예산서는 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수혜자별 귀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를 개인, 기업과 그 외 구분이 곤란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다시 중·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구분한다.

2027년 조세지출 전망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분류한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55.1조원(52.5%), 기업은 49.2조원(46.9%), 구분곤란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은 0.6조원(0.6%) 수준으로 전망된다.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을 소득규모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36.9조원(35.1%),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18.2조원(17.4%)으로 구분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 24.6조원(2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20.8조원(19.8%), 중견기업 1.2조원(1.2%)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2027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이후 수혜자별 조세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2년 39.5조원에서 2027년 55.1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2년 23.6조원에서 2027년 49.2조원으로 연평균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같은 기간 연평균 5.2%,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022년 3.9조원에서 2027년 24.6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27년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증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은 2022년 63.5조원에서 2027년 104.9조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6년 이후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큰 폭으

로 증가하면서 수혜자별 귀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의 46.9%를 차지하여 개인(52.5%)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추이: 2022~2027년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연평균 증감률
개인	39.5	43.1	46.0	48.8	51.3	55.1	6.9
- 중·저소득자 ¹⁾	27.0	29.1	31.0	33.6	34.7	36.9	6.4
- 고소득자	12.5	13.9	15.0	15.1	16.6	18.2	7.8
기업	23.6	26.2	24.1	26.8	35.0	49.2	15.8
- 중소기업	16.1	18.1	18.1	18.8	20.3	20.8	5.2
- 중견기업	0.9	1.0	1.0	1.1	1.1	1.2	5.5
- 상호출자제한기업	3.9	4.4	2.3	4.3	10.8	24.6	44.6
- 기타기업 ²⁾	2.7	2.8	2.7	2.6	2.8	2.6	△0.6
구분곤란 ³⁾	0.4	0.5	0.5	0.6	0.7	0.6	8.4
전체	63.5	69.8	70.5	76.1	87.0	104.9	10.6

주: 1) 2026년 기준 근로소득 8,9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2)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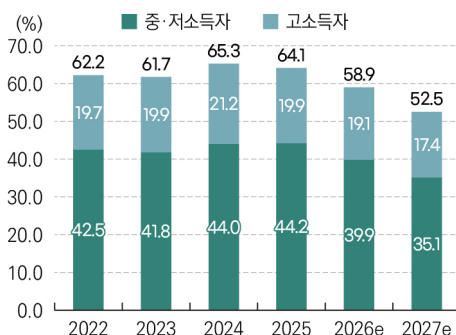
3)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1. 2026년은 잠정치 및 2027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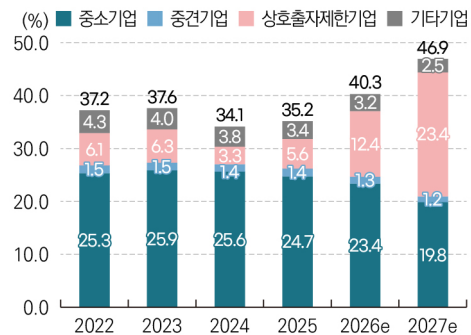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 수혜자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22~2027년

<개인>



<기업>



주: 1. 2026년은 잠정치 및 2027년은 전망치

2. 연도별 각 수혜자별 비중은 전체 조세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1.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

- 정부는 올해 최초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서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을 실시
- 소득수준과 조세지출 간 연계 가능성, 조세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11개 제도 분석
 -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와 근로소득자(근로소득금액)를 통합하여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및 세부담 등 분석
-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세부담(결정세액)이 높아지고, 조세지출 규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는 10분위 귀착이 높음
 - 근로장려금,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

[표] 주요 소득세 조세지출 소득분위별 귀착

(단위: %)

	소득분위									
	10	9	8	7	6	5	4	3	2	1
보험료 공제	51.5	16.7	11.5	8.2	5.7	3.8	1.9	0.5	0.1	0.0
연금보험료 공제	46.1	21.4	12.6	7.8	4.9	3.1	2.1	1.4	0.6	0.0
신용카드소득공제	31.2	18.8	16.0	12.2	8.9	6.3	3.8	1.9	0.6	0.2
근로장려금	0.0	0.0	0.0	18.5	13.7	18.3	13.1	16.9	9.8	9.6
자녀장려금	0.0	20.4	18.0	17.0	11.2	11.8	7.0	7.5	3.0	4.0
연금계좌 공제	52.1	22.2	13.0	6.8	3.1	1.5	0.9	0.3	0.0	0.0
의료비 공제	34.5	28.4	16.7	9.2	5.6	3.7	1.5	0.3	0.1	0.1
교육비 공제	50.4	26.3	13.1	5.7	2.4	1.2	0.5	0.2	0.1	0.1
주택자금 공제	41.0	25.1	16.4	8.6	4.6	2.7	1.2	0.4	0.1	0.0
중기취업자 감면	1.7	7.1	20.5	32.7	23.5	9.8	3.5	1.0	0.2	0.0
자녀세액공제	31.9	24.9	14.6	8.9	6.1	4.9	4.4	2.6	1.2	0.5
주요 조세지출 합계	34.7	17.1	11.9	11.4	7.6	6.3	3.9	3.6	1.9	1.7
결정세액	77.6	11.6	5.4	2.5	1.2	0.7	0.5	0.2	0.03	0.00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

5) 감면액 규모에 따른 분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2025년 57.9조원에서 2026년 67.6조원으로 2025년 대비 9.7조원(16.8%) 증가하였고, 2027년은 85.1조원으로 2026년 대비 17.5조원(2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상위 20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76.1%에서 2026년 77.6%, 2027년 81.0%로 확대되어, 조세지출 증가가 감면규모가 큰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을 일몰기한이 규정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면, 2027년 기준 상위 20개 항목 중 일몰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2025년 34.1조원에서 2026년 37.1조원, 2027년 39.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4.7%에서 2026년 42.6%, 2027년 37.2%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 자체는 증가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과 같이 부분일몰이 적용되는 일부 대규모 항목의 2027년 조세지출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요 항목별 추이를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 규모가 2025년 2.5조원에서 2027년 16.6조원으로 증가하여 2027년 감면규모 상위 1위 항목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투자 확대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감면규모는 2025년 4.1조원에서 2027년 10.5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그 순위가 6위에서 2027년 2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체 상위 20개 조세지출의 약 32%를 차지하는 등 투자·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가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는 매년 조세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5년 4.3조원에서 2026년 4.1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7년 4.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및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2026년 대비 2027년 국세감면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2025~2027년

(단위: 억원, %)

항목	2025년	2026년 ^e	2027년 ^e	25년 대비 순위 변동
1. 통합투자세액공제	24,887	60,116	165,583	↑9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1,476	69,385	105,114	↑4
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2,530	80,170	87,591	↓2
4. 연금보험료공제	47,581	51,745	56,499	↓2
5. 통합고용세액공제	43,035	45,542	48,414	-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3,243	41,360	48,292	↓2
7. 근로장려금	46,367	45,470	46,042	↓4
8.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5,874	37,209	38,544	↓1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3,654	34,102	36,322	↓1
1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1,080	34,935	32,633	↓1
11. 연금계좌세액공제	20,654	25,751	28,010	↑2
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3,404	22,875	24,380	↓1
13.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8,203	21,305	21,873	↑1
1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914	20,566	21,304	↓2
1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5,721	17,375	18,999	-
1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4,362	15,551	17,016	-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074	14,926	16,309	-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608	12,297	14,239	-
19. 자녀세액공제	8,620	13,436	11,965	NEW
2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259	11,433	11,668	↓1
합계 ¹⁾	578,546	675,549	850,797	
(전체 조세지출 대비, %)	(76.0%)	(77.6%)	(81.1%)	
상위 20개 항목 중 일몰 없는 항목 합계	340,517	370,670	389,930	
(전체 조세지출 대비, %)	(44.7%)	(42.6%)	(37.2%)	

주: 1) 합계는 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연도별 조세지출액을 합산한 것임

- 음영 항목은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각 부분일몰(국가전략기술/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기술) 존재]
- 2025년 기준 상위 20대 항목에 속하지 않았던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및 2027년 기준 상위 20대 항목에 신규 진입하였고, 2025년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2026년 및 2027년 기준 상위 20대 항목에서 제외됨
- 2026년은 잠정치 및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분석

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조세지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정부가 전망한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망오차율은 12.3%로, 최근 10년 평균(13.7%)을 하회하였으나,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전망오차율은 14.1%로 이전 5년(2016~2020년)의 13.3%보다 소폭 확대되었다. 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망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항목별 오차가 단순히 합계되는 경우 전망오차가 과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¹⁾

특히 정부가 올해 최초로 발표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서는 전망 대비 조세지출 실적 비교시 2025년 국세감면액 실적이 전망치를 소폭 하회(△3,635억원)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망오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주요 차이가 발생한 3개 항목²⁾의 전망오차 규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의 국세감면 규모를 추계하는 방법은 서술하지 않아 정부 전망오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조세지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망을 실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조세지출 전망액(102조 3,261억원)은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치 104조 9,307억원보다 2조 6,046억원(△2.5%)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조세지출 규모의 2026년 대비 증가폭은 15조 3,129억원(17.6%)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정부 전망치(20.6%)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계 방식과 반영 지표의

김주현 추계세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836)

1) 조세지출 항목의 전망-실적 오차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Ⅲ 장의 “4.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3개 항목

차이,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서의 국세감면 규모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표 10] 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실적)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		차이 (C-B)	전년 대비	
			정부(B)	NABO(C)		정부 (B-A)	NABO (C-A)
조세지출	761,084	870,132	1,049,307	1,023,261	△26,046 (△2.5)	179,175 (20.6)	153,129 (17.6)

주: ()는 정부 전망치 대비 NABO 전망치 차이율과 2026년 잠정치 대비 2027년 전망치 증가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국세수입 전망(625.2조원)과 조세지출 전망(102.3조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1%로, 정부가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한 국세감면율(14.5%)보다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수입액은 9조 9,441억원 많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세감면액은 2조 6,046억원 적게 전망함에 따라 국세감면율 전망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2027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억원, %, %p)

구 분	정부 전망(A)	NABO 전망(B)	차이(B-A)
국세수입액	6,153,088	6,252,529	99,441 (1.6)
국세감면액	1,049,307	1,023,261	△26,046 (△2.5)
국세감면율(C)	14.5	14.1	△0.4
법정حد도(D)	16.6	16.6	-
차이(C-D)	△2.1	△2.5	

주: ()는 정부 전망치 대비 NABO 전망치 차이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BOX 2.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 방식

-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직전연도의 실적금액, 해당연도의 전망금액, 다음연도의 전망금액을 제시
 - 직전연도 조세지출의 규모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집계 하되, 준비금 등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추정하여 반영하고,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세 비과세·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행정기관,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해당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상반기까지 신고된 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산출
 - 다음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연도 조세감면 추정금액에 경제성장률(경상 GDP)·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와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추계
 - 이 외에 국세청 및 행정기관의 자료 수집 한계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곤란’으로 표시

나. 분석의견

정부·국회에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차이 원인 분석

2027년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증가폭을 더 낮게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감면 규모가 정부 국세감면 규모보다 2조 6,046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는 경우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7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10조 5,11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조 9,867억원 낮은 8조 5,247억원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정부는 그 규모가 16조 5,583억원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4,017억원 낮은 16조 1,56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각각 3조 5,729억원(51.5%), 10조 5,467억원(175.4%)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폭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연구활동 및 시설투자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위 세액공제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구활동 및 시설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주된 차이는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에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³⁾ 및 제144조⁴⁾에 따르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하지 않으며,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상당액은 이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투자 확대 및 연구인력개발 지출 확대에 연계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이월되어 국세감면 규모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간 전망 차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및 시설투자 증가율에 대한 전제와 더불어, 최저한세 적용 및 이월세액공제의 실제 공제 규모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경우, 정부는 2027년 국세감면액 규모를 1조 634억원 규모로 전망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1,121억원 높은 1조 1,755억원으로 전망하였다. 2023~2024년 별다른 제도 변화 없이도 소득세 감면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감면을 축소 및 감면한도 신설에도 2026년에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의 높은 증가세와 2026년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 상향(8,000만원→1억 400만원)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소득세 감면액 증가율을 정부보다 높게 반영하였다.

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을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 12]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법인세

(단위: 억원, %)

항목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정부 (C)	NABO (D)	차이 (D-C)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전망 (A)	45,117 (28.5)	48,129 (6.7)	30,990 (△35.6)	69,385 (123.9)	105,114 (51.5)	85,247 (22.9)	△19,867
	실적 (B)	46,302 (24.4)	29,575 (△36.1)	41,476 (40.2)	-	-	-	
	차이 (B-A)	1,185 [2.6]	△18,554 [△38.6]	10,486 [33.8]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 (A)	24,186 (33.2)	56,832 (135.0)	42,883 (△24.5)	60,116 (40.2)	165,583 (175.4)	161,566 (168.8)	△4,017
	실적 (B)	20,798 (△5.5)	17,693 (△14.9)	24,887 (40.7)	-	-	-	
	차이 (B-A)	△3,388 [△14.0]	△39,139 [△68.9]	△17,996 [△42.0]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전망 (A)	6,803 (27.9)	8,093 (19.0)	8,953 (10.6)	10,413 (16.3)	10,634 (2.1)	11,755 (12.9)	1,121
	실적 (B)	7,629 (25.5)	8,333 (9.2)	9,181 (10.2)	-	-	-	
	차이 (B-A)	826 [12.1]	240 [3.0]	228 [2.5]	-	-	-	

주: 1. 소괄호()는 전년 대비 실적(전망)의 증가율을 의미함

2. 대괄호[]는 전망 대비 실적 오차율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 소득세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정부는 2027년 국세감면 실적이 8조 7,59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세 전망 증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2027년도 국세감면액을 9조 1,723억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대비 4,132억원 높게 전망하였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항목의 경우, 정부는 2027년 국세감면 실적이 3조 6,32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명목임금에 연동되며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규모 전망시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근로소득 증가 추이 등

이 반영된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국세감면액을 3조 8,244억 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대비 1,922억원 높게 전망하였다.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정부는 2027년도 국세감면액을 3,789억원 규모로 전망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1,824억원 높은 5,613억원 규모로 전망하였다. 이는 최근 배당소득 실적과 전년 대비 2025년 결산 상장 법인의 결산배당 증가율 및 추가 현금배당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결과이다.⁵⁾

[표 13]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소득세
(단위: 억원, %)

항목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정부 (C)	NABO (D)	차이 (D-C)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전망 (A)	58,902 (14.8)	67,202 (14.1)	75,095 (11.7)	80,170 (6.8)	87,591 (9.3)	91,723 (14.4)	4,132
	실적 (B)	63,083 (15.5)	69,020 (9.4)	72,530 (5.1)	-	-	-	
	차이 (B-A)	4,181 [7.1]	1,818 [2.7]	△2,565 [△3.4]	-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에 대한 비과세	전망 (A)	23,113 (13.1)	29,326 (26.9)	33,622 (14.6)	34,102 (1.4)	36,322 (6.5)	38,244 (12.1)	1,922
	실적 (B)	28,866 (17.0)	30,195 (4.6)	33,654 (11.5)	-	-	-	
	차이 (B-A)	5,753 [24.9]	869 [3.0]	32 [0.1]	-	-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전망 (A)	- -	- -	- -	신설 -	3,789 -	5,613 -	1,824
	실적 (B)	- -	- -	- -	- -	- -	- -	
	차이 (B-A)	- -	- -	- -	- -	- -	- -	

주: 1. 소괄호()는 전년 대비 실적(전망)의 증가율을 의미함

2. 대괄호[]는 전망 대비 실적 오차율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한국예탁결제원,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배당금 37조 7,519억원 지급(전년대비 16.9% ↑)」 보도자료, 2026.5.28.

그 외 기타 세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정부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26년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으로 축소⁶⁾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 국세감면 규모는 4,768억원 수준으로 전망하여 2026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⁷⁾된 점과 기존 1대당 평균 감면액 실적을 고려하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축소의 영향이 일부만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국세감면액 규모를 5,786억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대비 1,018억원 높게 전망하였다.

[표 14] 정부와 NABO의 2027년 전망치 차이가 발생한 주요 항목: 개별소비세
(단위: 억원, %)

항목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e	2027 ^e		
						정부 (C)	NABO (D)	차이 (D-C)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망 (A)	1,336 (102.4)	2,589 (93.8)	3,822 (47.6)	5,820 (52.3)	4,768 (△18.1)	5,786 (△0.6)	1,018
	실적 (B)	2,580 (23.1)	2,674 (3.6)	3,288 (23.0)	-	-	-	-
	차이 (B-A)	1,244 (93.1)	85 (3.3)	△534 (△14.0)	-	-	-	-

주: ()는 전년 대비 실적(전망)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추계의 경우 거시 변수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의 차이, 추계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그 전망액이 상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전망 차이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추계 모형 개선을 통해 전망 오차를 줄여 조세지출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전기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26년) 300만원, ('27년) 200만원 ('28년) 100만원

7)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경우 2026년 상반기까지 3.5% 단력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기본세율인 5%로 환원되었다.

추정곤란 항목에 의한 국세감면 규모 과소추정 지양 및 세부 정보 제공 필요

정부가 산출한 국세감면 규모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51개 항목 중 209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 규모를 산출한 결과이며, 정부는 그 외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감면 규모를 ‘추정곤란’으로 제시하였다. 조세지출의 경우,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거시여건 변화 및 납세자의 행태변화 등에 의해 그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점, 비과세 제도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실적을 추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은 일정 부분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감면 규모를 추정하지 않는 항목이 증가하는 경우, 국세감면 규모가 축소되어 발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감면 규모를 부분적으로라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에 대해 매해 조세지출 규모를 전망하였던 것과 달리 2027년도 감면액을 별도로 전망하지 않았는데, 해당 항목에서 적지 않은 국세감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세감면액을 ‘추정곤란’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해당 항목의 국세감면액 추정이 곤란하다고 제시한 사유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의 적용을 종료하고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그 적용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경과조치에서는 ① 신규건설 사업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가 완료된 민자사업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재정사업, ② 개량·증설사업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도시철도 개량·증설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에 정부가 개별 실시협약 체결, 개량·증설 시기 등에 따라 해당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이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정부는 신규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승인·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고시 및 착공·준공의 절차를 거친다. 이에 개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단계를 검토하여

신규 건설 사업 중 경과조치의 대상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법개정안 경과조치상 최소 개량·증설 분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과 같이 일정 규모의 국세감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번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재정 소요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올해 해당 항목에 대해 실시된 심층평가에서는⁸⁾ 동 제도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시 국세감면 예상액은 2027년의 경우 7,053억원, 2027~2031년은 총 3조 3,974억원으로 추정한 규모가 제시되었다. 심층평가에서는 ① 신규건설 사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 26건의 사업⁹⁾이 검토 대상 사업으로 꼽혔으며, ② 개량·증설사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7~2031년의 유지보수를 위한 개량·증설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규모가 추정되었다고 명시되었다.

[표 15] 심층평가 발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유지시 예상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비 투입 추정액 (A)	65,834	70,905	71,578	64,838	35,294	61,690
유지보수 건설용역 (B)	4,693	7,120	6,071	6,705	6,705	6,259
도시철도 건설용역비 추정액 (A+B)	70,527	78,025	77,649	71,543	41,999	67,949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조세지출 [(A+B)*부가가치세율 10%]	7,053	7,803	7,765	7,154	4,200	6,795

자료: 재정경제부(2026),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8) 재정경제부(2026),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p.157~163

9) 추진 주체로 구별하는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11건, 지자체 추진 사업이 15건이며, 재원 마련 방식에 따라 구별하는 경우 민자사업은 7건, 재정사업은 19건이다.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등 조세 지출 항목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모든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국세감면이 모두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개량·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며 예년 수준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금년 실시한 심층평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광역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그 규모를 추계하여 개량·증설 등 유지보수 건설용역에 따른 영세울 조세지출 규모는 469억원으로 이미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국세감면액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세감면 전망 규모를 단순히 ‘추정곤란’으로 밝히기 보다는, 그 전망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위와 같이 국세감면이 부분적으로만 추계되는 경우에는 부분추계의 내용을 밝혀 개별 조세지출 항목이 국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금액 구간에 대한 범주를 사용하여 조세지출의 대략적인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즉, 국세감면액의 구간을 밝혀 국세감면 규모의 대략적인 범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 상기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울 항목의 경우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실시된다고 가정하고, 개량·증설 사업에 따른 국세감면 규모는 심층평가 결과와 비슷하다고 추정하여 예상 조세지출 규모를 ‘1,000억 원~1조원’ 범위로 그 감면 규모를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 가능하다.

10) 호주 재무부, 「2025-26 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2025), p.58

[그림 6] 호주의 사례; 조세지출의 대략적인 규모를 금액 범주로 제시

The following codes apply where a point estimate is not available:

- nil
- .. not zero but rounded to zero
- * unquantifiable
- nfp not for publication due to commercial sensitivities

Where tax expenditures are not quantifiable, an order of magnitude is provided using the categories set out below, with a sign indicating whether it is a positive or negative tax expenditure.

Category	Expected expenditure (\$m)
0	0 on average over reporting period
1	0-10
2	10-100
3	100-1,000
4	1,000 +
NA	not available

D48 Transport for oil rig and remote area employees exemption

Other economic affairs – Total labour and employment affairs (\$m)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	*	*	*	*	*	*	*
<i>Tax expenditure type:</i>	Exemption				<i>2024-25 code:</i>	D48	
<i>Estimate Reliability:</i>	Not Applicable				<i>*Category</i>	2+	
<i>Commencement date:</i>	1986				<i>Expiry date:</i>		
<i>Legislative reference:</i>	Subsection 47(7) of the <i>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i>						

Under the income tax benchmark, fringe benefits are classified as individual employee income, with the grossed-up value taxed at the employee's marginal income tax rate. However, transport provided to employees working in remote areas or on oil rigs may be exempt from fringe benefits tax.

자료: 호주 재무부, 「2025-26 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2025), p.57~58, p.161

2. 총량 분석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 · 분석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총량 비교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 일정 집단 · 활동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세출 · 세입 측면의 정부지출로, 이들을 합한 총 재정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한 전반적인 재원의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다.

먼저 총 재정지출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78.1조원에서 925.8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며,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434.1조원에서 820.9조원으로 연평균 7.3%, 조세지출은 44.0조원에서 104.9조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2018~2027년 총 재정지출

(단위: 조원, %)

구분	조세지출(A)	재정지출(B)	총 재정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2018	44.0	434.1	478.1	9.2
2019	49.6	485.1	534.7	9.3
2020	52.9	549.9	602.8	8.8
2021	57.0	601.0	658.0	8.7
2022	63.5	682.4	745.9	8.5
2023	69.8	610.7	680.5	10.3
2024	70.5	638.0	708.5	10.0
2025	76.1	684.1	760.2	10.0
2026 ^e	87.0	753.0	840.0	10.4
2027 ^e	104.9	820.9	925.8	11.3
2018~2027 ^e 연평균 증감률	10.1	7.3	7.6	-

주: 2025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세지출 잠정치 기준, 2027년은 예산안 및 조세지출 전망치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 재정지출의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7~2019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조세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지출 비중은 2020년 8.8%에서 2022년 8.5%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사업이 축소·종료되면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71.7조원(10.5%) 감소한 반면, 조세지출은 6.3조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 8.5%에서 2023년 10.2%로 1.7%p 상승하였다.

이후 조세지출 비중은 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와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은 2026년 전년 대비 14.3% 증가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증가율이 20.6%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조세지출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9.0%)을 크게 상회하면서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1.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출 성질에 따른 재정지출·조세지출 총량 분석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정부지출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총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10년간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어떠한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양 지출의 확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지출은 지출성질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¹¹⁾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을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지출 성질별 증가율을 비교하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7.9%, 재량지출은 6.7% 증가하여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재정지출의 확대는 재량지출보다 의무지출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다만 연도별로는 재량지출의 증감폭이 크게 나타난 시기도 있었다. 2020년에는 의무지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데 비해 재량지출은 21.0%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면서 재량지출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23년에는 의무지출이 전년 대비 2.3% 감소한 데 비해 재량지출은 18.6% 감소하였다. 2022년까지 확대되었던 코로나19 관련 지원 지출이 2022년 68.2조원에서 2023년 5.5조원으로 크게 축소되면서 재량지출의 감소폭도 크게 나타났다.

2026년에는 의무지출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데 비해 재량지출은 12.9% 증가하였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재량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다.

[표 17] 2018~2027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지출 합계 (C=A+B)
	규모(A)	비중	규모(B)	비중	
2018	214.4	49.4	219.7	50.6	434.1
2019	239.6	49.4	245.5	50.6	485.1
2020	252.8	46.0	297.1	54.0	549.9
2021	279.5	46.5	321.5	53.5	601.0
2022	332.6	48.7	349.7	51.2	682.4
2023	325.1	53.2	284.6	46.6	610.7
2024	342.5	53.7	295.5	46.3	638.0
2025	368.5	53.9	315.6	46.1	684.1
2026 ^e	396.8	52.7	356.2	47.3	753.0
2027 ^e	426.8	52.0	394.1	48.0	820.9
2018~2027 ^e 연평균 증감률	7.9	-	6.7	-	7.3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2. 결산치 세출외 항목으로 의무·재량 총합과 총지출 간 차이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법률상 지출 성격에 따른 별도의 구분기준이 없다. 다만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지출은 적용기한 도래 시 심층평가, 자체평가 등을 거쳐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임의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 정비나 종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설계 또는 폐지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조세지출을 일몰기한의 설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증가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8~2025년에는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이 연평균 8.6% 증가하여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의 증가율(7.6%)을 상회하였다. 이는 각종 보험료 공제와 근로장려금 등 일몰기한이 없는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이 명목소득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지출은 적용기한 도래 시 제도의 연장·정비 여부가 주기적으로 검토되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5~2027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크게 달라져,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연평균 6.6% 증가한 반면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은 3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6년 전체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10.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두 항목의 증가액은 6.3조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57.9%를 차지한다. 2027년에도 전체 조세지출 증가액 17.9조원 중 두 항목의 증가액이 14.1조원으로 7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8~2027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은 연평균 8.1% 증가한 반면,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은 12.4% 증가하여 후자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일몰기한이 설정된 대규모 조세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기간의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8] 2018~2027년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		일몰기한이 설정된 항목		조세지출 합계 (C=A+B)
	규모(A)	비중	규모(B)	비중	
2018	248,437	56.5	191,096	43.5	439,533
2019	304,541	61.4	191,159	38.6	495,700
2020	309,653	58.5	219,704	41.5	529,357
2021	321,489	56.4	248,759	43.6	570,248
2022	363,791	57.2	271,693	42.8	635,484
2023	399,905	57.3	297,759	42.7	697,664
2024	416,925	59.1	288,246	40.9	705,171
2025	442,014	58.1	319,071	41.9	761,084
2026 ^e	474,479	54.5	395,653	45.5	870,132
2027 ^e	501,847	47.8	547,460	52.2	1,049,307
2018~2027 ^e 연평균 증감률	8.1	-	12.4	-	10.2

주: 1. 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기준

2. 2026년 9월 기준 일몰기한의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재정지출 비교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12대 분야별 분류기준에 따라 2027년 세출예산안과 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를 연계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27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925.8조원으로 이 중 조세지출은 104.9조원이며 전체 정부지출의 11.3%를 차지한다.

[표 19]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2027년 예산안 기준

(단위: 조원, %)

12대 분야 분류기준		조세지출 (A)		재정지출 (B)		총 재정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일반·지방행정	11.3	10.8	149.0	18.2	160.3	17.3	7.0
2	공공질서 및 안전 ¹⁾	0.0	0.0	28.8	3.5	28.8	3.1	0.0
3	외교·통일	0.0	0.001	7.1	0.9	7.1	0.8	0.0
4	국방	0.0	0.02	73.3	8.9	73.3	7.9	0.0
5	교육	1.2	1.2	110.7	13.5	112.0	12.1	1.1
6	문화·체육·관광	0.3	0.3	11.6	1.4	11.9	1.3	2.8
7	환경	2.9	2.8	14.6	1.8	17.6	1.9	16.7
8	보건·복지·고용	44.2	42.1	289.0	35.2	333.2	36.0	13.3
9	농림·수산·식품	5.7	5.4	30.7	3.7	36.4	3.9	15.7
10	SOC	0.9	0.9	28.9	3.5	29.8	3.2	3.1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8.3	36.5	41.2	5.0	79.5	8.6	48.2
12	R&D ²⁾	10.5	10.0	39.5	4.8	50.0	5.4	21.0
4대분야 합계(8+9+11+12)		98.7	94.1	400.4	48.8	499.1	53.9	19.8
총계(12대 분야)		104.9	100.0	820.9	100.0	925.8	100.0	11.3

주: 1) 12대 분야별 분류 중 2. 공공질서 및 안전은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2) R&D 분야 등의 중복계상으로 분야별 지출액의 합계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규모와 일치하지 않아, 분야별 비중은 정부 발표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1. 조세지출 비중은 억원 단위로 계산하여 반올림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조세지출은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등 주요 4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분야의 조세지출 전망액은 단순 합산 기준 98.7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94.1%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4대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400.4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48.8%를 차지하여,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부 분야에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였으며, 전체 재정지출에서도 해당 분야의 비중이 35.2%로 가장 높았다. 다만 그 밖의 분야에서는 정책수단별 재원배분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재정지출은 일반·지방행정(18.2%), 교육(13.5%), 국방(8.9%) 등에도 상당한 규모가 배분되었다. 특히 교육과 국방 분야는 전체 재정지출에서 각각 13.5%, 8.9%를 차지한 반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 0.02%에 그쳤다.

이처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각각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특정 정책분야에서 두 정책수단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분야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정책수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으나,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정부지원은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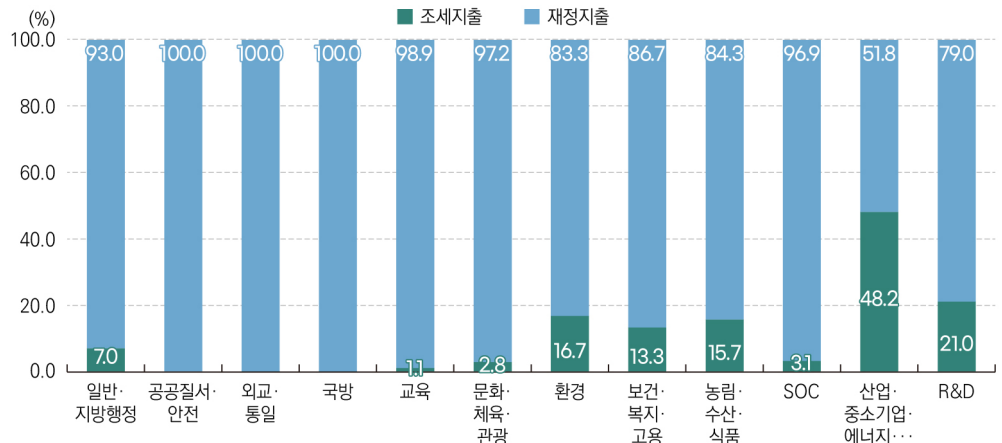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체 조세지출의 36.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총 재정지출에서도 조세지출 비중이 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에서 재정지출과 함께 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출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비교하면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R&D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정책수단별 구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R&D와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 5.4%이며, 각 분야의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0%, 15.7%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국방 등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데 비해 조세지출 비중은 매우 낮아, 정부지원이 주로 재정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부지원이라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상대적 활용 정도가 정책분야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재원배분 구조를 살펴볼 경우 특정 정책분야에 투입되는 총 재정지출 규모와 정책수단별 구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분야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전체 지원규모와 정책수단별 구성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림 7] 12대 분야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2027년 전망치 및 예산안 기준 (단위: %)



주: 총 재정지출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합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12대 분야별 분석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27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38조 2,739억원으로, 2026년 대비 14조 6,629억원(62.1%)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42.6%에서 2027년 48.2%로 5.6%p 상승하여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실적 회복 등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감면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지출도 제조업의 AI 전환과 반도체·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에 따라 2026년 대비 9.4조원(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세지출 증가율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조세지출 비중은 48.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표 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236,110	382,739	146,629 (62.1)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42.6	48.2	5.6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10조 5,467억원(175.4%) 증가한 16조 5,583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전체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및 공제여력 확대를 주요 증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2026년 대비 3조 5,729억원(51.5%) 증가한 10조 5,114억원으로 전망된다. 두 항목의 증가액은 총 14조 1,196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전체 조세지출 증가액의 96.3%를 차지한다.

[표 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통합투자세액공제	60,116	165,583	105,467 (175.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9,385	105,114	35,729 (51.5)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R&D 분야

2027년 R&D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3조 5,736억원(51.4%) 증가한 10조 5,246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R&D 분야의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6.4%에서 2027년 21.0%로 4.7%p 상승하여, 12대 분야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지출도 지역주도형 R&D 및 투자형 R&D 확대, 기초연구 강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2026년 대비 4.0조원(11.3%)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조세지출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 R&D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69,510	105,246	35,736 (51.4)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16.4	21.0	4.7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조세특례 항목별로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3조 5,729억원(51.5%) 증가한 10조 5,114억원으로 전망되어 R&D 분야 조세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2026년 대비 5억원(5.6%) 증가한 94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R&D 분야의 조세지출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세특례 1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R&D 관련 조세특례 4건을 합산¹²⁾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부 조세지출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중복계상된다. 이에 따라 12대 분야별 조세지출을 단순 합산한 금

1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의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의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2),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의3, 4)

액은 전체 국세감면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분야별 비중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3] R&D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9,385	105,114	35,729 (51.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9	94	5 (5.6)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환경 분야

2027년 환경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2,509억원(7.9%) 감소한 2조 9,357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크지 않으나, 환경 분야의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나타나 조세지출도 주요 지원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26년 18.6%에 비해 1.9%p 하락한 수준이나, 2027년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R&D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한편 2027년 환경 분야의 재정지출은 14.6조원으로 조세지출보다 규모가 크지만, 전체 재정지출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인 반면 전체 조세지출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나타난다. 이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구조와 비교할 때 조세지출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4] 환경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31,866	29,357	△2,509 (△7.9)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18.6	16.7	△1.9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환경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대비 2,088억원(74.1%) 감소한 729억원으로 전망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1,052억원(18.1%) 감소한 4,76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차 관련 일부 세제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되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감면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8년 종료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기한을 2026년 말 종료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각각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2026년 대비 568억원(2.7%) 증가한 2조 1,873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7년 환경 분야의 조세지출 감소는 전기 시내버스 및 전기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의 축소와 재정지출로의 전환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환경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17	729	△2,088 (△74.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20	4,768	△1,052 (△18.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1,305	21,873	568 (2.7)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2027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1,454억원(2.6%) 증가한 5조 7,035억원으로 전망된다.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12대 분야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해당 비중은 2026년 16.6%에서 2027년 15.7%로 0.9%p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2026년 대비 2.7조원(9.6%) 증가하여 조세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표 26]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단위: 억원, %, %p)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55,581	57,035	1,454 (2.6)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16.6	15.7	△0.9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26년 대비 738억원(3.6%) 증가한 2조 1,304억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235억원(2.1%) 증가한 1조 1,668억원으로 전망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628억원(9.0%) 증가한 7,627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2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단위: 억원, %)
			증감(B-A)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566	21,304	738 (3.6)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1,433	11,668	235 (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99	7,627	628 (9.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복지·고용 분야

202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2조 6,249억원(6.3%) 증가한 44조 2,048억원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체 조세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42.1%)을 차지하지만,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 수준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조세지출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증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및 주거지원 등 관련 재정지출도 2026년 대비 7.4% 증가함에 따라,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3.4%에서 2027년 13.3%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415,799	442,048	26,249 (6.3)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13.4	13.3	△0.1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보험료 특별소득 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7,421억원(9.3%) 증가한 8조 7,591억원으로 전망된다. 해당 항목은 2026년까지 전체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으로,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물가 상승 등에 따른 보수총액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2026년 대비 4,754억원(9.2%) 증가한 5조 6,499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872억원(6.3%) 증가한 4조 8,414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29]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80,170	87,591	7,421 (9.3)
연금보험료공제	51,745	56,499	4,754 (9.2)
통합고용세액공제	45,542	48,414	2,872 (6.3)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2027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9,152억원(8.8%) 증가한 11조 2,840억원으로 전망되며, 전체 조세지출의 10.8%를 차지한다. 다만 범정부 AI 서비스 확산 및 공공부문 AI 전환,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조세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7.9%에서 2027년 7.0%로 0.8%p 하락할 전망이다.

[표 30]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103,688	112,840	9,152 (8.8)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7.9	7.0	△0.8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6년 대비 6,932억원(16.8%) 증가한 4조 8,292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와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632억원(13.3%) 증가한 5,377억원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2,302억원(6.6%) 감소한 3조 2,633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31]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1,360	48,292	6,932 (16.8%)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4,745	5,377	632 (13.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4,935	32,633	△2,302 (△6.6)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SOC 분야

12대 분야 중 2026년 대비 조세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SOC, 환경, 문화·체육·관광 등 3개 분야이며, 이 가운데 SOC 분야의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SOC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2,663억원(22.3%) 감소한 9,269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크지 않으며,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6년보다 1.0%p 하락한 3.1%에 그쳐, SOC 분야에서는 재정지출이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OC 분야의 조세지출이 도시철도 건설이나 공익사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지출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의 확충에 직접 투입되는 등 정책수단의 활용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2] SOC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11,932	9,269	△2,663 (△22.3)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4.1	3.1	△1.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SOC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은 2026년 말 적용기한 종료와 함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26년 조세지출액이 2,610억원으로 예상되나, 2027년에는 추정곤란을 사유로 전망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이 2027년 SOC 분야 조세지출 전망액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2026년 대비 415억원(91.6%) 감소한 38억원으로 예상된다.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적용기한 종료의 영향으로 2027년 감면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역시 2026년 40억원에서 2027년 4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6년 대비 333억원(9.0%) 증가한 4,042억원으로 전망된다.

13)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과조치에 따라 신규 건설의 경우 2026년 말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가 완료된 민자사업과, 2026년 말 이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7년 말 이전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승인된 재정사업은 준공 시까지, 개량·증설의 경우 2027년 말까지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7년 전망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발생할 수 있다.

[표 33] SOC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610	추정곤란	△2,610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453	38	△415 (△9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709	4,042	333 (9.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895억원(20.9%) 감소한 3,383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크지 않으며,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6년보다 1.4%p 하락한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4,278	3,383	△895 (△20.9)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4.3	2.8	△1.4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25년 말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경과규정 항목으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 제공된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이 2026년에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2027년 조세지출액은 0원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주 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는 2026년 대비 71억원(2.8%) 증가한 2,602

억원으로 전망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2026년 대비 334억원(100.3%) 증가한 667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35]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324	-	△1,324 (△100.0)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2,531	2,602	71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33	667	334 (100.3)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 분야

2027년 교육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1,750억원(16.5%) 증가한 1조 2,355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과 동일한 1.2% 수준이며,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교육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10,605	12,355	1,750 (16.5)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1.1	1.1	0.1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교육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2026년 대비 1,696억원(18.0%) 증가한 1조 1,10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 분야 전체 조세지출의 89.9%를 차지하며, 증가액도 교육분야 전체 조세지출 증가액의 96.9%에 해당하여 교육 분야 조세지출 확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대비 34억원(3.6%) 증가한 980억원으로 예상된다.

[표 37] 교육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9,411	11,107	1,696 (18.0)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46	980	34 (3.6)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 분야

2027년 국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3억원(1.7%) 증가한 176억원으로 전망된다. 2027년 전체 조세지출에서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방 분야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2%로, 국방 분야의 조세지출은 전체 조세지출과 분야 내 재정지원 모두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8] 국방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173	176	3 (1.7)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0.03	0.02	0.0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국방 분야의 조세특례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1건으로, 해당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 대비 3억원(1.7%) 증가한 176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39] 국방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173	176	3 (1.7)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교·통일 분야

2027년 외교·통일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6년과 동일한 10억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조세지출과 총 재정지출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0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0] 외교·통일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조세지출 규모	10	10	0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	0.01	0.01	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외교·통일 분야의 조세특례는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와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는 2026년과 동일한 9억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1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41] 외교·통일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 항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6년 잠정(A)	2027년 전망(B)	증감(B-A)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9	9	0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	1	0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조세지출제도 이슈 분석

1.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분석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전환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환대상은 혼인세액공제 등 총 17개 항목이며, 전환 사유로 ①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②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③유사 재정사업 통합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발표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거나 유사·중복지출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조세지출에 대한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결과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와 협의(‘26.4.~7.)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 시 소득재분배 및 양극화 완화 필요성, 정책 효과성, 유사·중복지출에 따른 제도 효율화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우려 및 집행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선정 및 부처의 전환사업 예산요구서 작성 당시에는 2027년 조세지출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세수효과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6년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17개 조세지출 항목의 총량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재정전환 사유를 중심으로 재정전환 대상 17개 조세지출 항목 및 각각에 대응하는 재정사업 현황과 분석의견을 제시하고,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홍철 추계세제분석관(hongfe@assembly.go.kr, 6788-4745)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표 42] 조세지출 재정전환 17개 항목 및 전환 사유

항목	사유
혼인세액공제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출산·입양세액공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연안화물선용 경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유사 재정사업 통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중교통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감차보상분)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1”, 2026.8.3.

가.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항목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혼인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3개이다.

1) 현황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및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혼인세액공제는 거주자가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출산·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혼인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기한이 2026년 말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출산·입양세액공제는 별도의 적용기한이 없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기한 종료에 맞추어 폐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 역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폐지하되, 2026.12.31. 이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표 43]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조세지출	주요 내용	일몰기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혼인세액공제	'24~'26 혼인신고한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출산·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출산·입양 시 출생순서별 세액공제 (첫째/둘째/셋째+ 30/50/70만)	-	제도 폐지 (26년 출산·입양자녀까지 세액공제 적용)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안) 주요 내용

혼인세액공제 등 3개 조세지출 항목은 조세지출 폐지에 대응하여 신규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재정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혼인세액공제는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혼인지원금(4235-300)'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2027.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1회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신규사업으로, 혼인신고 시점에 일정 금액을 생애 1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기본적인 지원 요건 및 금액은 동일하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기존 출산지원 사업의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7년 상반기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출산지원금

지원(4235-300)’ 세부사업을 통해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6년 첫만남 이용권 지급 단가(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에 출산·입양세액공제의 자녀순서별 공제액을 각각 더한 금액이다.

2027년 하반기 출생아에 대해서는 첫만남 이용권을 대신하여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¹⁾를 통합·조정한 제도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되, 우대지역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가산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림 8] 양육지원제도별 공제액 및 지급단가 비교: 2026년, 2027년 상·하반기
(단위: 만원)

2026년 출생아			
출산·입양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째/둘째/셋째+ 30/50/70	첫째/둘째+ 200/300	24개월간 총 1,800 (0세 월 100, 1세 월 50)	월 10 (만 8세까지 지급)

↓

2027년 상반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째/둘째/셋째+ 230/350/370	24개월간 총 1,800 (0세 월 100, 1세 월 50)	월 10 (만 9세까지 지급)

&

2027년 하반기 출생아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첫째/둘째/셋째+ (기본지역) 1,000/1,200/1,500 (우대지역) 1,500/1,700/2,000	(기본지역) 월 20 + 0~1세 가정보육 월 30 (우대지역) 월 30 + 0~1세 가정보육 월 30 (만 12세까지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에너지바우처(5146-301)’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2027년부터 영구임대주택 4.7만 가구를 대상으로 열요금 부가가치세 지원을 위해 가구당 2.34

1) 보건복지부 소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2543-300)’ 세부사업에 해당한다.

만원의 요금 할인 또는 바우처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및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연료 전환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였으나, 이번 재정지출 전환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

[표 44]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조세지출	재정지출 전환			
	전환 방식	세부사업명 (코드)	소관	사업 내용
혼인 세액공제	사업 신설	혼인지원금 (4235-300)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27 이후 혼인신고 시 최초 1회 100만원 지급
출산·입양 세액공제	기존사업 반영 (단가인상)	출산지원금 지원 (4235-300)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27 상반기 출생아) 첫째/둘째/셋째+ 230/350/37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존사업 반영 (대상확대)	에너지바우처 (5146-301)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영구임대주택 난방요금 할인 또는 바우처 지급 (4.7만가구 2.34만원씩)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른 2026년 실적 전망치²⁾는 1,288억원이며, 혼인지원금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1,663억원이 편성되었다.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지원요건 및 1인당 지원금액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무소득자 및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포함 여부, 최근 혼인건수 추이, 사업 운영관리비 반영여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입양세액공제의 2026년 실적 전망치는 1,312억원³⁾이며,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6,981억원이 편성되었다. 다만, 2027년 예산안은 상반기 첫만남 이용권과 하반기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세지출 규모와

2) 재정경제부는 재정지출 전환 항목 선정 및 전환사업 예산안 편성 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6년도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를 활용하였다는 입장²⁾이므로, 해당 실적 전망치를 소개한다. (이하 동일)

3) 이는 재정경제부에서 추계한 수치로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전체 자녀세액공제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상반기 첫만남 이용권 지급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반기분 예산안은 2,685억원 수준으로 2026년 첫만남 이용권 지급 예산(4,111억원)의 절반인 약 2,055억원보다 630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출산·입양세액공제의 2026년 실적 전망치 1,312억원의 절반인 656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추정곤란’ 항목으로 전환 전후의 규모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열요금 부가세 지원분 2027년 예산안은 11억원이 편성되었다.⁴⁾

[표 45]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단위: 억원)

조세지출			재정사업		
구분	'26 전망 ¹⁾	'27 세수효과 (정부)	구분	'27 예산안	비고
혼인 세액공제	1,288	- ²⁾	혼인지원금	1,663	-
출산·입양 세액공제	1,312	- ²⁾	출산지원금 지원	6,981 ⁴⁾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³⁾	추정 곤란	에너지 바우처	11	영구임대주택 열요금 부가세 지원분 예산액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6년 실적 전망치임
 2)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 귀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
 3)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0억원 수준임
 4) 참고로, 상반기 첫만남 이용권 예산액은 2,685억원이 편성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석의견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또는 면제 방식에서 발생하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제고 효과가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크기에 따라 실제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직접 재정지원은 소득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일

4) '4.7만가구 × 2.34만원'으로 반영되었다.

정한 금액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면세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도 온전히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이러한 재정전환의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종합소득자가 아니거나 산출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법률에서 정한 공제액의 전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홀벌이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급단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은 유지하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가격효과가 실제 소비자에 어느정도 귀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대상 및 단가가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어 수혜계층별 지원 규모와 실제 지원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정전환 이후에는 재정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편성 구조에 따라 종전 조세지출의 수혜범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사업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종전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국가가 부담하였으나, 재정전환 이후에는 전체 사업비 중 서울특별시 45%,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2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열요금 부가가치세 지원 사업도 현행 조세지출 대비 지원 대상 주택 호수가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지출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관리주체와 관계없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지역난방 주택⁵⁾에 적용된다. 반면,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열요금 부가가치세 지원대상 주택은 약 4.7만호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47,498호와 유사한 규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⁶⁾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5) 가스 등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난방을 수행하는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현재 난방용역비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집계되고 있어 난방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주택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주택관리공단의 사례를 준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급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은 약 26,498호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주택관리공단 관리 영구임대주택(144,691호) 대비 지역난방 주택 세대 수의 비중(32.8%)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전환 이후 지원대상이 현행 조세지출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전환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세액공제나 세금 면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재원조달 및 집행구조를 기준으로 기존 수혜범위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항목

선별·효율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등 6개이다.

1) 현황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및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운영비 중 특정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운동경기부는 3년간 해당 비용의 10%를,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를 공제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및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는 내항 화물운송 선박용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56원/ℓ 감면하고, 연안운항 여객선박용(관광목적 제외) 석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각각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하는 제도이며,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전기·수소전기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공급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말로 적용하고,

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영구임대주택(80,719호)에 적용하여 산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적용기한은 2026년 말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 3개 제도는 적용기한 종료와 함께 폐지되고,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기한을 2026년 말로 설정하여 2027년부터 적용을 종료할 예정이다. 반면,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9년 폐지를 전제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표 46]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선별·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주요 내용	일몰기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에 대해 운영비 중 일부 세액공제 (일반·이스포츠/장애인 3년간 10%/5년간 20%)	-	제도 폐지 (2026년 말을 일몰기한으로 설정)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감면	내항 화물운송 선박용 경유 교통세 56원/ℓ 감면 [부가세(surtax) 포함 시 78.96원/ℓ 감면]	2026년 말	- (일몰 종료)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관광목적 제외) 석유류 간접세 면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 100% 감면	2026년 말	일몰 2년 연장, 한도 축소 (²⁷ 200 → ²⁸ 100) (2029년 폐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400만원 한도 100% 감면	2026년 말	일몰 2년 연장, 한도 축소 (²⁷ 300 → ²⁸ 150) (2029년 폐지)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수소전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2028년 말	- (일몰 조기 종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안) 주요 내용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등 6개 조세지출 항목은 조세지출과 지원 대상이 유사·동일한 재정사업에 흡수·통합하거나 관련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5264-302)’ 및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5561-304)’ 세부사업과 일반회계의 ‘게임산업 육성(1232-302)’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반영될 예정이다. 각 사업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금이 팀당 5,700만원, 장애인 실업팀 지원금이 팀당 4~10억원,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 장려금이 팀당 2,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재정전환 이후에는 개별 사업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제도는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안보기금의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5101-300)’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를 구매하는 경우 종전 조세지출에 따른 감면단가와 동일한 78.96원/ℓ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유류세보조금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환급)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재정전환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신청으로 절차가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안보기금의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5101-301)’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신규사업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경유 또는 중유를 구매하는 경우 각각 575.62원/ℓ, 98.1원/ℓ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종전 면세유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정세율에 따른 감면액보다 낮게 반영되었다.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무공해차 보급사업(6134-311)’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7년 예산안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36.8만대에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승용차 6,000대분의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은 과세대상 전기·수소전기승용자동차를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재정전환 이후에는 자동차 가격, 국산·수입여부, 구매자 특성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무공해차 보급사업(6134-311)’ 세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의 전기·수소 전기 승합자동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전기·수소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것이나,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운영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표 47]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선별·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전환			
	전환 방식	세부사업명 (코드)	소관	사업 내용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사업 반영 (대상선별)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5264-302)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 진흥기금, 일반회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금 지급 (355개팀, 5,700만원씩)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5561-304)		신규 창단, 입단팀 등 장애인 실업팀 육성 (팀별 지원금 상이)
		게임산업 육성 (1232-302)		이스포츠 지역팀 창단 장려금 지급 (30팀, 2,300만원씩)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	기존사업 반영 (절차일원화)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5101-30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기금)	유류세보조금에 더해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78.96원/ℓ 추가지원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사업 신설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5101-30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기금)	연안여객선 경유, 중유 유류세 575.62원/ℓ, 98.1원/ℓ 지원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존사업 반영 (대상·금액 차등화)	무공해차 보급사업 (6134-311)	기후에너지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전기승용차 36.8만대에 대당 300만원 구매보조금 지급 (예산안 편성 수량 단가 기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승용차 6천대에 대당 2천만원 구매보조금 지급 (예산안 편성 수량 단가 기준)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신설			전기·수소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신설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6년 실적 전망치는 10억원이며, 2027년 각 세부사업 중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금과, 이스포츠 지역팀 창단 장려금 예산안은 각각 201억 5,800만원, 7억원이 편성되어 2026년 확정예산 대비 8억 7,000만원, 3억 4,800만원 증액되었다. 장애인 실업팀 육성분 2027년 예산안은 150억원이 편성되어 작년과 동일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재정전환과 함께 증액된 규모는 12억 1,800만원으로 2026년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의 2026년 실적 전망치는 34억원이며, 2027년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추가 지원분(유류세감면 재정전환) 예산안은 62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 실적 전망치보다 28억원 큰 규모로, 이는 예산안 편성 물량(78,547kl)이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역산한 감면물량(53,571kl)보다 크게 설정된 데 주로 기인한다. 2027년 예산안 편성 물량은 최근 3년간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물량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2026년 실적 전망치는 406억원이며, 2027년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 예산안은 493억원이 편성되었다. 조세지출 실적 전망치는 자동차세 면제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반면, 2027년 예산안은 최근 3년 평균 면세유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편성되어 2026년 실적 전망치와 2027년 예산안 편성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2026년 실적 전망치는 각각 3,489억원, 43억원이다. 2027년 전기·수소전기승용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안은 각각 1조 1,045억원과 1,200억원으로, 2026년 확정예산 대비 전기자동차는 2,645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수소전기자동차는 150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기존 구매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규모로서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 및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증감액을 단순히 재정전환에 따른 규모 확대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보조금 지급 단가와 요건은 매년 초 발표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확정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의 2026년 실적 전망치는 2,89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수소전기 버스 구매보조금은 2,99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48]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선별·효율적 지원

(단위: 억원)

조세지출			재정사업		
구분	'26 전망 ¹⁾	'27 세수효과 (정부)	구분	'27 예산안	비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	- ²⁾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20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금 지급분 예산액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150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 예산액
			게임산업 육성	7	이스포츠 지역팀 창단 장려금 예산액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감면	34	3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2	유류세감면 재정전환 사업 예산액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406	268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493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489	1,112	무공해차 보급사업	11,045	전기승용차분 구매보조금 예산액
수소전기차 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3	0		1,200	수소전기승용차분 구매보조금 예산액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2,893	326		2,998	전기·수소전기 버스 신규 보조금 예산액 (조세지출 재정전환 내역)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6년 실적 전망치임

2)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 귀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석의견

선별·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정책수요에 맞게 조정하거나, 기존 지원제도와와의 관계를 정비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일정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6개 조세지출 항목은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수준을 조정하려는 목적의 항목과 기존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와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재정전환을 통해 지원대상을 보다 선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의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이었으나, 재정전환 공모 등을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도 재정전환 이후 차량의 가격과 친환경성, 구매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수준을 보다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 구매보조금은 차량의 가격·성능 등 정책적 고려요소에 따라 지원여부와 수준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선별적 지원의 가능성이 실제 지원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지는 재정전환 이후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공모 절차나 선정 요건, 보조금 지급 단가 및 지원 요건 등 선별적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은 차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연말연초 또는 실제 사업 집행 시기에 맞추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세지출의 정책목표나 지원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기준이 재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향후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집행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전환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과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집행절차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재정전환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분에 상응하는 지원을 기존 유류세보조금과 동일한 절차로 지급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과 세무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집행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연안여객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비 지원 등 재정사업⁷⁾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유류비 보조를 시행할 경우 집행 및 관리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존 지원체계의 활용 가능성이 재정지출 전환을 통한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지는 재정전환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세지출의 신청·집행절차와 전환사업의 집행절차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일원화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별·효율적 지원을 위한 재정전환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단순히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재정전환을 계기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정책수요에 맞게 재설계되었는지, 기존 지원체계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신청·집행절차가 실질적으로 간소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유사 재정사업 통합 항목

1) 현황

유사 재정사업 통합을 위한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중 감차보상분 등 8개이다.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및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현행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8년 말까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청년·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7)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6136-300) 사업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와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을, 농·임업인 난방용 및 농·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며, 국가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특례의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경감하되,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급(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택시 감차 보상재원(5%)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중 택시 감차 보상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⁸⁾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6년 말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 중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4개 제도는 적용기간 종료에 맞추어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우 2026~2027년 말까지 진행 중인 신규건설 및 2027년까지 공급되는 개량·증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감차보상재원분에 한정해 폐지하고 나머지 항목은 2029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 재정사업 통합 목적의 전환 항목의 경우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 중 3건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분⁹⁾, 청년우대형 주

8) 재단법인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징수·집행 및 정산 관리하고, 택시 자율감차사업의 원활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등으로 밝히고 있다. (출처: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홈페이지)

9) 대중교통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일몰(2028년 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3개 항목은 적용기한이 2028년 말로 아직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표 49] 재정지출 전환 대상 조세지출 항목 주요 내용: 유사 재정사업 통합

조세지출	주요 내용	일몰기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분)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 소득공제 (공제율 40%, 한도 200~300만원 ¹⁾)	2028년 말	일몰 종료 (나머지는 적용기한 유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세대주 청년 등 가입 시 비과세(한도 500만원)	2028년 말	일몰 조기 종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028년 말	일몰 조기 종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가 등에 공급하는 ²⁾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26년 말	- (일몰 종료, 경과조치 적용 ³⁾)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개최(수도권 외 지역)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2026년 말	- (일몰 종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감차보상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99%) 중 감차보상 재원분(5%)	2026년 말	- (일몰 종료, 나머지 항목 일몰 3년 연장)

주: 1)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관·도시공원 등 추가공제 대상 한도 합산 기준

2) 공급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3)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 (신규건설) 민자사업은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은 '26.12.31. 이전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
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제도 등 8개 조세지출 항목은 조세지출과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동일한 재정사업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다. 다만, 일부 조세지출은 당장의 수요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7년에 관련 내역이 편성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K-패스’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동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95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8만명 확대될 예정인데, 현행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수혜자 규모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전환 전후의 지원대상 및 1인당 지원수준 변화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농어촌전기공급사업(5457-301)’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한전)의 자가발전시설 관리에 따른 연료비를 포함한 운영결손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료비 지원 단가 및 물량이 확대되었다.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는 산림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재산업육성(지원)(1535-300)’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주택용·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사업), 재정전환에 따라 농·임업인의 목재펠릿 보일러(270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혜자 규모 등을 집계한 자료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전환 전후 수혜 대상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의 ‘게임산업육성(1232-302)’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따라 이스포츠협회가 주관하고 지역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리그(지역리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전환에 따라 지역리그 대회 개최 일수가 2026년 대비 2배로 확대되고, 이에 맞추어 2027년 예산안에는 지역리그 운영 예산도 증액되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중 감차보상분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택시산업지원(4931-316)’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감차보상분은 그간 운송사업자가 재원관리기관에 납입하면 재원관리기관에서 이를 택시감차보상¹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촉진 지원금)로 지급해 왔다. 감차보상분의 재정 전환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는 택시감차촉진지원금 9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7년 택시감차보상 지원 대수 784대분의 촉진지원금 및 기타 재단 운영비가 반영된 것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기존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저축장려금(1631-301)’ 세부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 금리 외에 법정장려금¹¹⁾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2027년 예산안 편성내역에 비과세제도의 재정전환에 따른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7년 이후 가입분의 만기·중도해지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2027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¹²⁾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기존 도시철도 건설 재정사업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교통수요·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른 지원의 효율성, 도시철도 건설 추진 능력 등과 관련한 지역 간 형평성, 다른 교통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2027년 예산안에서 조세지출 전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¹³⁾ 참고로, 현재 2026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신규건설 사업과 향후 1년간 공급되는 개량·증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7년 예산안에 관련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로, 청년우대형을 포함한

10)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신청한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 부담금을 재원으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11) 일반 농어민 연 0.9~1.5%, 저소득 농어민 연 3.0~4.8%

12)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실질 수익에 변동이 없도록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계획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2026.8.7.)

13)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이 중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에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1071-798)'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표 50] 재정지출 전환 주요 내용: 유사 재정사업 통합

조세지출	재정전환			
	전환 방식	세부사업명 (코드)	소관	사업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분)	기존사업 반영 (대상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31-354)	국토교통부	청소년 유형· 시차출퇴근 환급 등 기존 정액·정률 지원규 모 확대
도리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기존사업 반영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5457-301)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자체 도서 결손지원 확대(과세 전환에 따른 유류 단가 상승 반영)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기존사업 반영 (내역신설)	목재산업육성(지원) (1535-300)	산림청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신설
이스포츠 대회 운영 과세특례	기존사업 반영	게임산업 육성 (1232-302)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리그 대회 운영비 등 확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감차보상분)	기존사업 반영 (내역신설)	택시산업지원 (4931-316)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분으로 조성하던 감차 인센티브를 재정지원으로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2027년 전환분 미편성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1071-798)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청약 가입 소득요건 완화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비과세	2027년 전환분 미편성	저축장려금 (1631-301)	금융위원회	'27년 가입분의 만기·중도해지 시차로 별도 예산 미편성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2027년 전환분 미편성	-	-	'26~'27년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영세율 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분은 ‘부분 전환’ 항목으로, 재정경제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조세지출 감면액은 2,735억원¹⁴⁾이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8,652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사업 운영·지원 예산액을 제외한 실제 환급비용 지원 예산안은 8,606억원 수준이다. 이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환급비용 지원 예산 7,445억원보다 1,161억원 증가한 것이다.¹⁵⁾ 환급비용 지원 내역에는 기존 정률·정액형 지원 외에 기후동행카드 전환 수요, 시차출퇴근 환급 확대 및 청소년 유형 신설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전환 규모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재정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액이 종전 조세지출 금액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도세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6년 실적 잠정치는 22억원이며, 2027년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발전시설 관리에 따른 연료비 지원 예산안은 54억원이 편성되어 2026년 확정예산 33억원 대비 21억원 증액되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연료비 지원 단가가 2026년 1,415원/ℓ 대비 1,940.1원/ℓ로 525.1원/ℓ 인상되었으며, 편성물량의 확대(308만ℓ → 370만ℓ) 또한 예산안의 증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2026년 실적 잠정치는 3억원이며, 2027년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예산안은 4.32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보일러 270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가격(400만원 기준)의 40%를 지원하는 규모이다. 2026년에는 농·임업인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총 540대에 대해 보일러 가격(400만원 기준)의 30%를 지원하였으나, 재정전환과 함께 기존 주택용 540대의 절반을 농·임업인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보조율을 10%p 인상한 것이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따른 과세특례의 2026년 실적 잠정치는 0.1억원 수준이며, 2027년 이스포츠 지역리그 운영 예산안은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6년 확정예산 6억 4,300만원 대비 3억 3,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온·오프라인 대회 개최 일 수당 운영비 단가는 2026년과 2027년 동일하나(오프라인 3,500만원, 온라인 400만원), 리그 개최일수가 늘어나면서(오프라인 12→18일, 온라인 12→30일) 운영

14)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실적만 제시되어 있다.

15) 2026년 본예산 기준 환급비용 지원 예산은 5,580억원이었다.

예산도 확대된 것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특례 중 감차보상분의 2026년 실적 잠정치는 117억원¹⁶⁾으로 예상되며, 2027년 택시감차촉진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9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6년 실적 잠정치 대비 소폭 감소한 규모인데, 종전 조세지출 하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가 자동적으로 감차촉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지급되었다면,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 대수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수준의 감차촉진 지원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우 2027년 예산안에 재정전환에 따른 추가지원 내역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2027년 이후 가입분에 대한 지원금은 만기해지(3년 또는 5년) 또는 가입일로부터 1년 후 일정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시점에 지급되므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의 2026년 조세지출 잠정치는 6억원이다. 정부는 동 조세지출의 재정전환 방식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과세 특례는 이자수의 누수 방지를 통한 가입자 실질수익률 보장 제도이고, 가입요건 완화는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유사 재정사업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안은 2027년 1조 3,589억원이 편성되어 2026년 확정예산 대비 6,313억원 증액되었다.

16)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전체 납부세액 경감(99% 감면) 잠정치(2,319억원)를 바탕으로, 감차보상을 위한 감면분(5%)을 계산한 것이다.

[표 51] 재정사업 전환 전후 지출규모 비교: 유사 재정사업 통합

(단위: 억원)

조세지출			재정사업		
구분	'26 전망 ¹⁾	'27 세수효과 (정부)	구분	'27 예산안	비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분)	2,735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652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22	16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확대	54	지자체 도서 결손지원 연료비분 예산액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3	2	농임업인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4.32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조금 예산액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	0.1	-	게임산업 육성	9.8	이스포츠 지역리그 운영분 예산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감차보상분)	117	65	택시산업 지원	90	택시 감차축진지원 내역사업 예산액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9	9	저축장려금	- ²⁾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4,015	추정곤란	-	- ²⁾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6	1	-	- ²⁾³⁾	-

주: 1)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6년 실적 전망치임

2) 미반영

3) 참고로, 202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에 따른 이자지급을 위한 예산안은 1조 3,589억원 편성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석의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유사한 정책목표 및 대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원 수준·대상·성과 등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 유사한 대상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이 각각 운영되는 경우 개별 제도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므로, 전체 지원규모와 수혜범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공통된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를 판단하고 재원을 배분하며 성과를 관리하기 용이할 수 있다.

조세지출은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적용되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조정하거나 실제 감면액과 정책 효과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재정지출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통합하면서 이러한 재정지출의 장점을 활용할 경우,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정책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전환대상 중에는 이러한 취지에 비교적 부합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므로, 통합을 통해 지원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세부담 경감효과도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청년·다자녀·저소득층 등 유형별로 환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이용실적 및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설계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동일한 저축 가입자에 대해 만기 등 지급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이 함께 지원되고 있어, 이를 재정사업으로 일원화하면 가입자에 대한 전체 지원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과 함께 운용¹⁷⁾되고 있는 만큼 재정전환을 통해 동일한 감차목적에 투입되는 재원을 예산체계 내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농·임업인용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조세지출 규모가 작고,

1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감면 규모와 혜택의 귀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주택용·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목재펠릿 이용을 지원하는 현 조세지출을 관련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면 지원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관리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다만 조세지출을 기존 재정사업에 편입하는 것만으로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통합되거나 종전 제도의 정책적 한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전환안에 대해서는 지원경로와 집행체계가 실제로 정비되는지, 통합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방식이 설계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일한 대상이나 목적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통합하는 항목은 재원의 일원화와 함께 집행구조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의 경우 감차보상분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과 함께 관리할 수 있으나, 이번 전환안은 기존 지자체의 택시감차보상과 별도로 감차재단이 수행하는 택시감차촉진지원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 집행체계의 일원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¹⁸⁾에 따르면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낮은 성과는 감차유인과 보상구조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통합하는 한편, 보상구조 등 재정사업이 실제 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지 검토하고 통합 이후 감차 실적의 개선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동일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저축장려금의 재원이 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의 경우 2022년 및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 기금 존치의 실익과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¹⁹⁾ 따라서 비과세 지원을 기존 장려금 체계에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금 운용 방식과 가입자에 대한 전체 지원수준이 농어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면제 종료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을 기존 운영결산 보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지원경로를 단순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료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발전효율 개선이나

18) 재정경제부, 2026조세특례 심층평가(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26.9.

19) 금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²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 시 발전효율 개선, 연료절감 및 친환경 전환 등과 지원방식을 연계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편, 재정전환과 함께 기존 재정사업의 확대나 정책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합된 지원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환 전후의 예산과 수혜자 증가를 모두 통합의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조세지출을 대체하는 지원과 기존 사업의 확대·개편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변경된 지원대상과 기준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재정전환과 함께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추가환급 등 기존 환급제도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예산 및 수혜대상의 증가를 모두 재정 전환의 효과로 간주하기 어렵다. 특히 환급요건(월 15회 이상 이용 등) 적용 시 종전 소득공제 수혜자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통합 이후의 지원범위를 설정하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임업인이 구입하는 목재펠릿 연료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나, 재정전환 이후에는 신규 보일러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연료 소비에서 신규 보일러 구입으로 변경될 경우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의 정책 목표 달성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2025년 신설된 이후 2026년 조세지출 전망액이 0.1억원 수준에 그친 반면, 재정전환 이후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의 조세지출 규모가 미미한 원인이 지원 방식에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²¹⁾ 재정사업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대안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통합된 재정사업은 종전의 조세지출이 담당하던 지원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재정사업으로 통합 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시철도 건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지원규모의 불확실성이 사업계획과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 이후의 중

20) 재정경제부, 2026조세특례 심층평가(1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외」, 2026.9.

21) 세액공제 방식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나 재정지원은 전체 기업이 대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모 등을 포함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지원방향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통수요·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른 지원의 효율성, 도시철도 건설 추진 능력 등과 관련한 지역 간 형평성, 다른 교통시설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동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²²⁾는 영세율 방식의 경우 지원강도를 차등화하기 어렵고 재정통제 및 사후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수출 거래에 주로 적용하는 영세율 제도를 국내 거래에 예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직접 재정지원의 방식은 영세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나, 영세율 방식이 공급가격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고 지원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면서, 재정전환 이후에도 다년도 확정 보조 협약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 종료에 따른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였다. 다만, 경과조치 종료 후 신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향후 재정지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지원 체계 내에서 영세율 종료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시하고, 사업주체가 향후 지원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재원분담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³⁾

종합하면, 유사 재정사업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의 재정전환은 지원경로의 일원화를 넘어 지원기준과 집행구조를 정비하여 지원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목별로 종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연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 확대·재설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원방식의 적절성과 통합 자체의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의 효율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22) 재정경제부, 2026조세특례 심층평가(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26.9.

23) 사업비 증가에 대한 실질 부담 주체(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민간사업자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별로 국고 보조 및 사업비 분담구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 종합의견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17개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전환안은 조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 및 수준을 조정하며 분산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유사 중복사업 통합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지원규모와 수혜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집행 과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정책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조세지출의 종료 필요성과 재정지출 전환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재정사업 전환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한계가 곧바로 재정지출 전환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목표와 운영성과에 비추어 조세지출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계속 필요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의 유지·보완과 재정지원의 기대효과 및 비용을 비교하여 적절한 지원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의 필요성과 기존 수혜자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목재펠릿 보일러 구입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 내용은 목재펠릿 구입비용 경감에서 보일러 취득비 지원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경이 종전 정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와 기존 설비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 변화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등의 영향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제약하던 요인도 재정전환 과정에서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택시 감차지원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조성하던 재원을 예산으로 전환하여 지원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으나, 재원조성 방식의 변경만으로 감차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심층평가에서 지적된 낮은 감차실적을 개선하려면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수준과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재정전환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재원과 집행체계의 변경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사업설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전환 전후의 지원규모와 수혜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재정전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전 조세지출의 지원규모와 수혜대상이 재정전환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사업의 예산안에는 조세지출의 전환에 따른 효과 외에도 사업 자체의 확대·개편에 따른 반영분이 포함될 수 있어 예산안 편성내역만으로는 조세지출의 재정전환에 대응하는 지원규모를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재정전환과 함께 청소년 유형 신설 등 기존 사업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전체 예산 중 종전 조세지출의 전환에 대응하는 규모와 기존 사업 확대에 따른 규모가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아 재정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지출 전환 단계에서부터 종전 조세지출과 이에 대응하는 세부사업·내역사업을 파악하고, 전환 전후의 지원규모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혜 측면에서도 재정전환으로 지원대상과 실제 수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혼인 및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면 종전 면세자 등 결정세액이 없거나 규모가 작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종전 조세지출의 수혜인원과 재정전환 이후 예상 수혜인원, 소득수준별 지원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기 어렵다. 재정전환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후의 수혜인원과 지원액, 소득수준별 수혜구조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공백을 방지하고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은 예산 확보와 신청·선정 절차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지원대상 조정과 집행상의 제약으로 인한 지원공백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소진이나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지원 중단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원대상자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신청 부담으로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은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사업계획 및 추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지원방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종료에 따른 기존 사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²⁴⁾를 마련하였으나, 신규사업 등 경

24)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 (신규건설) 민자사업은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은 '26.12.31. 이전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분

과조치 적용대상 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재원분담, 지원일정 등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전환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환사업의 평가는 소득재분배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전환 목적에 따른 개선효과와 종전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전환항목과 대체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전체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지출 준치 항목과 관련 재정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규모·수혜구조와 지원수단 간 중복·보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평가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부처 간 조정을 함께 요구한다. 조세특례 종료와 대체사업의 편성·집행을 각각 관리하면 전환의 근거가 사업설계에 반영되었는지, 기존 평가에서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 관리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재정사업 소관 부처 간 자료제공·평가역할을 정하고, 통합평가를 주관하며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재정사업의 예산·지원요건 조정과 조세지출의 준치·개편 판단에 반영하여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분석

가. 2026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실시 현황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로 사전적 평가인 ‘예비타당성평가’와 사후적 평가인 ‘심층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²⁵⁾에 따른 것으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사전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세법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²⁶⁾을 통해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계획을 공개했으며, 2026년 9월 국회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다.

[표 52]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항목(1건)

항목	내용	수행기관
국내생산세액공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을 국내 생산시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 2026.3.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useuplee@assembly.go.kr, 6788-4838)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26)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 2026. 3.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2026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 등 3건의 항목에 대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후적 평가제도인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²⁷⁾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구분한다. 의무심층평가는 해당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실시하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심층평가’는 의무 평가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²⁸⁾

정부는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4건의 의무심층평가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7건의 임의심층평가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2026년 9월 국회에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임의심층평가 대상은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항, 그 밖에 재경부 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기본계획」, 2026. 3.)

[표 53]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의무심층평가(14건)

항목	내용	수행기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청년의 경우 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5~45% 감면	한국개발연구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면제	한국개발연구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 1대당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환급	한국개발연구원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 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국개발연구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의료비·교육비의 15%,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6.3.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4]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항목: 임의심층평가(17건)

항목	내용	수행기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한국개발연구원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1대당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 사용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리터당 56원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이 지방정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 양도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국개발연구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국개발연구원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한국개발연구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시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	한국개발연구원

항목	내용	수행기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모 부동산펀드·리츠에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한국개발연구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 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 출자 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사업재편계획에 따 른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를 위한 주 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6.3.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6년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1)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예비타당성평가(1건) 결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안은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해당 안의 취지는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제품 중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지원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데 있다.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적격분야의 국내 생산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등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편익을 창출하고, 기존의 투자 중심 세제지원만으로는 생산단계 비용 부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세특례 신설의 필요성과 적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공급망 대응력과 산업경쟁력,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6개 적격분야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도 설계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적격품목과 품목별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성 분석 등 정량적 경제성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세부담 경감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 차원의 편익과 연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AHP(전문가 계층화 분석)

평가 결과 도입안의 종합 평점은 0.68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향후 적격품목·지원단가의 구체화와 사후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55]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항목	예비타당성 결과
국내생산세액공제	공급망 안정·경제안보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적시성이 인정되고, 정책목표·대상·제도설계도 대체로 적절하여 도입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적격품목·지원단가가 미정인 상황에서 정량적 경제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원대상 구체화와 사후 성과관리 필요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국내생산세액공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2026년 의무심층평가 결과

2026년 총 14건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하여 의무심층평가가 수행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해외 우수인재 확보 여건 악화,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주변국과의 인재 유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세제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2017년 특례세율 인상 이후 일부 고소득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이 관찰되었으나, 자료의 제약 등으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19% 단일세율 혜택이 고소득 외국인에게 집중되어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적용기간도 주요국보다 장기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특례세율 상향 또는 누진구조 전환을 검토하고 적용 기간·지원 요건은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자·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56]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항목	심층평가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필요성 및 주변국과의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의 타당성 인정. 다만 19% 단일세율 혜택이 고소득 외국인에 집중되어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성 저해 우려 - (효과성) 세율 인상 이후 일부 고소득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이 관찰 되었으나, 자료 제약 등으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 (결론)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19% 단일세율의 조정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인력 불일치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간 대상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동 제도의 목적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임을 감안할 때 각 대상 간 정책의 적절성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감면 확대의 혜택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년여성 대상 정량분석에서는 감면 종료가 노동시장 잔류, 공식부문 고용 및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속 유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이 타당하되, 제도의 일차적 목적을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사후소득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고용증대까지 목표로 할 경우 노동수요 제고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별 차등 지원은 검토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와 지역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이질성과 노동수요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차등 우대하여, 청년은 지역에 따라 감면기간을 6년·7년·10년으로 연장하고,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감면율을 75%·80%·90%로 상향하였다.

[표 57]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	심층평가 결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불일치에 대응할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정책의 적절성은 대상 간 상이한 것으로 평가 - (효과성) 감면 확대의 혜택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여성 대상 분석에서는 감면 종류가 고용·임금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속 유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결론) 일몰 연장은 타당하되, 제도 목적을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후 소득 지원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지역별 차등 지원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농업의 법인화·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와 조합원 간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여 법인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고소득 조합원은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등 지원수준의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조세특례가 조합원의 세후 배당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당소득이 일부 상위 법인에 집중되고 목적 외 법인 활용 가능성도 있어 수혜귀착과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농업 법인화 촉진과 농업인 소득보전이라는 정책 목적 및 장기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반복적인 일몰 연장보다는 상시화 하되, 정책 성과와 수혜 귀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영농조합법인 관련 법인세·배당소득세 및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화하였다.

[표 58]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항목	심층평가 결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농업의 법인화·조직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 및 조세지원 방식의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조세특례가 조합원의 세후 배당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일부 상위 법인·고소득 조합원에 편익이 집중될 가능성 존재 - (결론) 제도 상시화가 타당하되, 수혜 귀착 및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공익사업으로 재산권이 비자발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과 조세지출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보상방식별 차등 감면이 협의취득을 촉진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최근 보상수준이 정당보상에 근접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감면 필요성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감면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 기준시점과 보상방식별 감면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표 59]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	심층평가 결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비자발적 재산권 제한에 따른 세부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 및 조세지출 방식의 타당성 인정 - (효과성) 보상방식별 차등 감면의 협의취득 촉진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최근 보상수준 개선으로 감면 필요성은 다소 약화 - (결론) 제도는 유지하되 감면 확대에는 신중하고, 감면 기준시점과 보상방식별 감면체계 정비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 도시철도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영세율 방식은 지원 수준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지역 간 재정부담 및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영세율이 도시철도 건설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이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구조와 연계되어 있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도시철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영세율 제도에는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적용범위의 모호성, 지원체계상의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일몰 연장의 경우와 폐지 후 재정지출 전환의 경우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종료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일정한 절차를 진행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0]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항목	심층평가 결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영세율 방식은 지원수준 조정과 지역 간 재정 부담·형평성 측면에서 한계 - (효과성) 영세율은 도시철도 건설비와 관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구조와 연계되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 - (결론) 도시철도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제도에 정책목표·적용 범위·지원 체계상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일몰 연장과 재정지출 전환 각각의 장단점 및 과제를 검토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5):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생산 지속 가능성 확보와 농림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유류 구입 단계에서 자동 적용되어 행정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지원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유류 사용량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경영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고, 탄소중립 정책과의 상충, 공급기준량 과다 배정 및 부정사용 등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도 폐지 시 농업·어업 부문의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유가격 중 세액 비중 감소 등에 따라 정책효과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공급기준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다.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해상교통권 확보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완전 면제 방식은 관광 수요에도 폭넓게 지원되어 선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도 폐지 시 사업자의 재무상태 악화와 운임 상승, 이용객 감소 등이 예상되어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서민에게 직접 귀착되는 편익은 제한적이고 상당 부분이 관광 수요에 귀착되며, 장기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선별성 부족, 탄소중립 기조와의 상충, 장기간 존속에 따른 일몰제의 형식화 등을 고려하여 일몰 도래 시 제도 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급격한 종료에 따른 충격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보조항로·도서민 운임지원 등 선별적 재정지원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를 2026년 말로 종료하고 연안여객선 지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1]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항목	심층평가 결과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생산 지속 가능성과 농림수산물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는 타당하나, 대규모 경영체 혜택 집중과 탄소중립 정책과의 상충 등 한계 존재 - (효과성) 제도 폐지 시 생산비 상승과 농어가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정책효과는 인정되나, 효과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 - (결론)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공급기준량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해상교통권 확보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광 수요에도 폭넓게 지원되는 등 현행 완전 면제 방식의 선별성에는 한계 - (효과성) 제도 폐지 시 사업자 재무악화·운임 상승·이용객 감소 등이 예상되어 일정한 효과는 있으나, 도서민에게 직접 귀착되는 편익은 제한적이고 상당 부분이 관광 수요에 귀착 - (결론) 일몰 도래 시 제도 종료를 검토하되, 급격한 충격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보조항로·도서민 운임지원 등 선별적 재정지원을 병행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6):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외」,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택시의 공익적 기능과 정부 규제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운수종사자의 낮은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경감 방식은 사업장 간 수혜 격차를 야기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금지원이 운수종사자 총급여의 연평균 13% 내외를 차지하여 실질소득 보전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반면, 감차보상재원과 복지사업재원을 통한 처우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현행 간접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직접 보조금 방식에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정부개입의 지속 필요성과 택시산업 규제체계의 합리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되 경감률을 99%에서 94%로 조정하고, 감차보상재원에 해당하던 5%를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2]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항목	심층평가 결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택시의 공익적 기능과 경영·소득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사업장별 수혜 격차 등 현행 부가가치세 경감 방식에 구조적 한계 - (효과성) 현금지원은 운수종사자의 소득 보전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나, 감차보상·복지사업을 통한 치우개선 효과는 제한적 - (결론)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정부 개입의 지속 필요성과 택시산업 규제체계의 합리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효과 개선과 무공해차 보급목표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현행 지원을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차종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지원이 내연기관차 대체와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무공해차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지원 축소 시 내연기관차 회귀와 무공해차 전환이 모두 발생하되 무공해차로의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행 지원이 전면 축소보다 명확히 우월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도입 목적은 상당 정도 달성된 반면 전기·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6년 말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말 종료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효과와 전기·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기차 지원 축소 시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로 이동하여 생애주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믹스 개선 등 기술진보가 진행될수록 전기차 지원의 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지원액과 방식을 단순유지 하기보다 구매시점의 지원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구매보조금으로의 전환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감면한도를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부터 종료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63]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항목	심층평가 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친환경·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이브리드차를 현행 방식과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별도 판단 필요 - (효과성) 내연기관차 대체·탄소감축에 기여하나 무공해차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현행 지원이 전면 축소보다 명확히 우월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결론) 포괄적인 친환경차 보급 목적은 상당 정도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말 종료할 것을 제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지원 필요성은 인정 - (효과성) 지원 축소 시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로 수요가 이동하여 생애 주기 배출량이 증가하며, 기술진보에 따라 전기차 지원의 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가능성 - (결론) 2026년 이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지원 가시성을 높이도록 재설계하고 구매보조금 전환도 검토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8):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차의 연비 경쟁력 약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환급한도 인상이 경차 등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효과는 제한적이고, 탄소저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경차 기준에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을 추가하고 소득·차량 보유요건 등 지원대상을 개선하는 한편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가 되어 환급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혼인으로 세대 내 경차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 환급을 허용하였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보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모든 LPG 택시에 연료사용량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지원대상의 표적성이 낮고 유가보조금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며, 무공해차 전환정책과의 정합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감면 규모가 택시업의 수익성·고용에 미치는 독립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면 축소 시 유가보조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감면 자체의 추가적인 정책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일몰 연장의 타당성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가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확보 재원을 전기택시 전환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 LPG 공급시장 불안과 택시업계의 경영 애로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몰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4]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항목	심층평가 결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제도 유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차의 연비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는 재검토할 필요 - (효과성) 환급한도 인상은 경차 등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효과는 제한적이며, 탄소저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결론) 제도를 유지하되 경차 기준에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을 추가하는 한편 소득·차량 보유요건 등 지원대상을 개선하고,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가 되는 경우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할 필요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택시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정부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모든 LPG 택시에 대한 일몰 지원은 표적성이 낮고 유가보조금과 중첩되며 무공해차 전환 정책과도 정합성에 한계 - (효과성) 수익성·고용에 대한 독립적 개선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가보조금과의 자동연동으로 감면 자체의 추가성도 제한적 - (결론) 단순 일몰 연장의 타당성은 낮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축소·유가보조금 산식 개편과 전기택시 전환지원이 필요하나, LPG 시장 불안과 업계 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기 연장은 가능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0):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2)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창업의 고용창출 등 외부효과와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고려할 때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목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지세 부담이 차입금의 최대 0.075%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부담분까지 면제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실효성과 수혜 귀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감면액이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당기순이익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등 감면과 기업성과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몰 연장은 타당할 수 있으나, 현행 구조를 그대로 단순 연장하기보다는 수혜구조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면제는 유지하되 금융기관 부담분은 50% 감면으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다.

[표 65]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	심층평가 결과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창업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지세 부담이 작고 금융기관 부담분까지 면제되어 지원 수단의 실효성과 수혜 귀착에 한계 - (효과성) 감면액과 매출액·당기순이익 등 기업성과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결론) 일몰 연장은 가능하나 현행 구조의 단순 연장보다는 수혜구조 개선을 병행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3):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의료·교육·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자와 유사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간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제 적용에 따른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으나, 제도의 주된 목적인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일몰을 연장하여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대상 공제 규정과 통합·상시화하고 성실사업자 요건과 일부 공제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요건의 경기대응적 탄력 운용, 자발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허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범위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대상 연간 월세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반영하였다.

[표 66] 2026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결과: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항목	심층평가 결과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의료·교육·주거 지원 필요성과 근로자·성실사업자 간 수평적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의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속되지 않았으나, 주된 정책목적인 과세형평성 제고와는 별개로 평가할 필요 - (결론) 일몰을 연장하되,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공제와 통합·상시화하고 성실사업자 요건 및 일부 공제대상을 정비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임의 심층평가 결과

2026년에는 총 17건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임의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번 임의심층평가는 외국인 인력 지원, 농·어업 법인 지원, 친환경자동차 지원, 공익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등 의무심층평가 대상과 정책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유사한 항목을 다수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외국인기술자,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공익사업용 토지·대토보상 관련 특례가 각각 함께 검토되었다.

주요 심층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해외 고급인재 유치 여건 악화, 국내 기업의 외국 전문인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과 조세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외국인기술자의 지원대상 범주는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행 50% 감면율의 조정 필요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의 추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외국인기술자 특례 관련 정책변화가 2019년 이후 이루어져 코로나19의 영

향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효과성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합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세제지원은 인재 유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자·정주여건 개선 등 비세제 정책을 병행하는 한편, 실제 체류·재유입 행태와 적용기간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용기간 및 요건의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50% 감면방식은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외국인기술자 등의 학위요건은 자연·이공·의학계의 경우 학사 이상에서 박사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경력 2년 요건은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책목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결합된 유인구조로 기부자의 실질 부담이 매우 낮아질 수 있고, 지역별 답례품 경쟁력 등에 따라 기부가 편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 지역 간 재정배분 측면에서 긍정적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기부를 대규모로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라는 추가적인 소액 기부경로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단순한 세액공제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정취약지역에 대해 차등적인 보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순가용재원과 신규 기부자 유입, 재기부율, 재정취약지역에 대한 기여효과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강화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는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10만원 초과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7]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소득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성과 세제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외국인기술자의 지원대상 범주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효과성) 외국인기술자 관련 정책변화가 2019년 이후 이루어져 코로나19 영향과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효과성 분석 대상에서 제외 - (결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현행 50% 감면율의 조정 필요성은 제한적이므로, 단기적으로 일몰을 연장하되 실제 체류·재유입 행태와 장기근속 유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및 요건을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필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정부개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액공제·답례품 결합에 따른 높은 유인과 지역별 기부 편중 가능성 존재. - (효과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은 있으나, 기존 기부를 대규모 대체하기보다 기존 기부자의 추가적인 소액 기부경로로 작용 - (결론)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추가 공제 확대는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재정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 및 성과·비용효율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어업의 법인화·조직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세후 배당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배당편익의 상위 법인 집중과 현물출자 특례의 활용실태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상시화하되 수혜귀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과 의 형평성·정합성을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관련 특례를 상시화하고,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농업의 법인화·규모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효과

성 측면에서는 조세특례가 출자자의 세후 배당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배당 편익이 일부 상위 법인에 집중되는 등 수혜귀착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상시화하되 목적사업 수행 여부와 수혜귀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업회사법인 관련 법인세·배당소득세 및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화하였다.

[표 68]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법인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어업의 법인화·조직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 측면에서 조세지원의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세후 배당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나 배당편익 집중 및 현물출자 특례의 활용실태 점검 필요 - (결론) 상시화와 함께 수혜귀착·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현물출자 과세방식을 농업법인과 동일한 이월과세로 정비할 필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농업의 법인화·규모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 측면에서 제도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출자자의 세후 배당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되나 상위 법인 중심의 편익 집중 가능성 존재 - (결론) 제도 상시화가 타당하나 수혜 귀착과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2026.9. 항목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소전기차의 시장규모와 설문 표본이 제한적이어서 현행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수소차 보조금과 신규 등록 간에 강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생애주기 분석에서도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보다 배출량이 낮으며 수소공급망 개선 시 환경편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조금 효과에는 충전인프라와 지자체 정책의지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 독립적인 지원효과에 대한 정량적 판단은 유보하였다.

종합적으로는 수소전기차 감면을 단기적으로 한시 연장하되, 청정수소 공급과 충전인프라 성과에 연계하여 재평가하고, 전기차와 함께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거나 구매보조금 전환을 제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감면 한도를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부터 종료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69]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개별소비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장규모·설문표본의 제약으로 수소전기차의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정량적 판단에는 한계 - (효과성) 보조금과 신규 등록 간 양(+)의 관계 및 생애주기 환경 편익은 확인되나, 인프라 등의 영향이 혼재되어 독립적인 지원 효과 판단은 유보 - (결론) 단기적으로 한시 연장하되 청정수소 공급·충전인프라 성과에 연계해 재평가하고, 지원 가시성 제고 및 구매보조금 전환을 검토할 필요

주: 음영(■) 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8):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육지 전력계통과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행 면세방식은 실제 추가 발전 비용이나 지원 필요도보다 석유류 사용량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여 지원의 표적성이 낮고, 발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가 자가발전 연료에 대한 조세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무인도화 방지·인구 유지·식수 공급 등 최종적인 정책성과에 미친 인과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도서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현행 석유류 면세방식에서 도서별 실제 추가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발전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를 2026년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증유에서 경유로의 유종 전환을 지원하고 도로 비주행 연료 간 과세형평성의 공백을 보완했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경유 전환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한시적 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세제혜택이 대형 선사에 집중되는 등 지원대상의 적정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연안해송 물동량에 대한 유의한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제혜택이 경유·증유 간 가격격차의 일부만을 상쇄하는 수준이어서 관찰된 유종 전환은 세제지원보다 환경규제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조세지출 방식으로서의 정책효과와 지원 필요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고, 기존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과 연안선박 현대화·친환경선박 지원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를 2026년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기존 지원 제도와의 중복, 목재펠릿의 친환경성 논란, 소규모 조세지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 및 조세지원 방식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연소기 보급·판매량에 뚜렷한 추세 반전이 없어 수요 진작 효과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제지원의 추가성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일몰 도입 또는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폐지 시 연소기 지원이나 국내 생산기반 육성 등 예산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를 2026년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반영하였다.

[표 70]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유류세 등 간접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은 높으나, 현행 면세방식은 석유류 사용량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여 지원의 표적성이 낮고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충 - (효과성) 자가발전 연료비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무인도화 방지·인구 유지·식수 공급 등 최종 정책성과에 대한 인과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움 - (결론) 정부지원은 유지하되, 도서별 실제 추가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발전효율 개선·재생에너지 전환과 연계할 필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유종 전환 지원과 과세형 평성 보완이라는 도입 당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경유 전환이 상당 부분 완료되고 대형 선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등 지속 필요성과 지원 대상 적정성에 한계 - (효과성) 연안해송 물동량에 대한 유의한 정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종 전환 역시 세제지원보다 환경규제의 영향이 컸을 가능성 - (결론) 조세지출 방식의 정책효과와 지원 필요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고, 유류세보조금·친환경선박·선박현대화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필요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친환경성 논란, 소규모 조세지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 및 조세지원 방식의 타당성에 한계 - (효과성) 연소기 보급·판매량의 뚜렷한 증가가 없어 수요 진작 효과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제지원의 추가성도 불분명 - (결론) 일몰 또는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폐지 시 연소기 지원·국내 생산기반 육성 등 예산사업으로 재편할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11):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외」, 2026.9. 항목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금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행 특례가 대토보상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특히 5년 만기 채권보상의 감면율이 대토보상보다 높아지는 등 보상방식 간 감면체계의 정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대토보상의 정책유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상방식별 감면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장기간 직접 경작한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지의 원활한 이전과 영농 지속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장기 자경요건이 실제 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형식적 자경이나 비농업인의 감면 적용 가능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자경요건의 입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3년 자경 특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3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을 포함하였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FTA 대응과 구조조정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 구조조정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지원 필요성은 유지되므로 제도를 지속하되 현행 축산정책 여건에 맞게 정책목적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동 특례를 상시화하였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장기간 직접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및 어업기반의 이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나, 감면실적과 행태효과를 토대로 한 정량적 효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실제 어업 종사 및 목적사업 여부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동 특례를 상시화하였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장기간 직접 임업에 종사한 산림경영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장기 자경요건을 통해 실질적인 산림경

영자를 지원하는 기능은 있으나, 이용실적과 행태변화를 근거로 정책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한 관리와 제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자경산지 감면은 이미 적용기한이 없는 상시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일몰 연장·상시화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표 71]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금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완화 측면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 인정 - (효과성) 대토보상 선택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며, 채권보상과의 감면을 역전 등 보상방식 간 정합성 문제 존재 - (결론) 제도는 유지하되 대토보상의 정책유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상방식별 감면체계 재정비 필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장기 자경농의 세부담 완화와 농지의 원활한 이전·영농 지속 지원 필요성 인정 - (효과성) 실제 농업인 지원 기능은 있으나 형식적 자경·비농업인 적용 가능성 등 한계 존재 - (결론) 제도 유지가 타당하되 자경요건 입증과 사후관리 강화 및 3년 자경 특례의 한시 운영·재평가 필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축산농가의 폐업·업종전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FTA 대응·구조조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다소 약화 - (효과성) 자산 처분 부담 완화 및 축산농가 구조조정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결론) 제도는 유지하되 변화된 축산정책 여건에 맞게 정책목적과 성과관리 체계 정비 필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장기 어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안정적 어업경영·어업기반 이전 지원 필요성 인정 - (효과성) 장기 직접 어업 요건을 통해 실제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능은 있으나 정량적 효과 판단에는 한계 - (결론) 제도 유지가 타당하되 실제 어업 종사 및 감면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항목	심층평가 결과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장기 임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지속적 산림경영 지원 필요성 인정 - (효과성) 실질 산림경영자 지원 기능은 있으나 이용실적·행태변화에 대한 정량적 효과 판단에는 한계 - (결론)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경 여부와 제도 성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점검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일괄 4건)」, 2026.9. 항목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직접투자 집중 완화와 공모 간접투자 활성화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금투세 미도입, ISA·연금계좌와의 중복, 사모 우회·해외투자 가능성 등으로 제도의 타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모 부동산 펀드 판매 잔고와 리츠지수에서 제도 도입·연장에 따른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신규 진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몰이 타당하나,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전제로 2~3년 단기 연장한 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국외 부동산 투자 공모기구 제외, 전용계좌 방식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장병내일준비자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 장병의 전역 후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과세는 매칭지원금·우대금리와 결합한 보완적 지원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납입 유지와 전역 후 최소 준비자금 확보에 보완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가구소득 2,500만원 이하 집단에서 납입효과와 최소 준비자금 달성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분석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는 제도를 연장하되, 불가피한 중도해지에 대한 예외, 전역 이후 청년 자산형성 제도와의 연계, 성과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선제적 사업재편 과

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이전·교환 등의 거래비용을 낮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 제도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대형 금융지주회사 전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중소형 금융기관 등의 추가 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와 사업재편 관련 특례도 구조조정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문가 분석 결과 세 제도 모두 거래비용을 낮추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는 활용 실적이 미미하지만 이를 제도의 효과성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종합적으로는 세 제도 모두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특례와 선제적 사업재편 관련 특례는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 및 이미 감면받은 증권거래세의 환수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 관련 특례는 2028년 말까지,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사업재편 관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타당성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기금관리주체의 차익거래 비용을 낮춰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가격괴리를 완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도 재도입 이후 가격괴리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가격 정합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일몰 연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표 72] 2026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권거래세 관련 제도

항목	심층평가 결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일부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시장 변화·금융세제 간 중복 및 제도설계상 한계 등으로 타당성 약화 - (효과성) 제도 도입·연장에 따른 공모펀드·리츠 시장의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신규 진입도 감소 - (결론) 원칙적으로 일몰이 타당하나, 제도 보완을 전제로 2~3년 단기 연장 후 재평가할 필요

항목	심층평가 결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청년 장병의 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과세는 매칭지원금·우대금리와 결합한 보완적 지원수단으로서 타당성 인정 - (효과성) 납입 유지와 최소 준비자금 확보에 보완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 출신 장병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결론) 일몰을 연장하되, 중도해지 예외·전역 후 자산형성제도 연계 및 성과관리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 거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금융지주 전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및 선제적 사업 재편의 거래비용을 낮춰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전문가 FGI 분석에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로 취득한 주권 양도에 대한 감면은 활용 실적이 미미하나 이를 효과성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결론) 세 제도 모두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금융지주 전환 및 선제적 사업재편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 및 면제 혜택 환수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차익거래 비용을 낮춰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가격 괴리를 완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인정 - (효과성) 제도 재도입 이후 가격괴리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시장 가격 장합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 확인 - (결론) 금융시장 안정화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존속 및 일몰 연장이 필요

주: 음영(■)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항목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02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6.9. 항목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반복되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축소할 필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의 효과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지출의 설계·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 면제는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4건 중 3건(75%)이 면제되었으며, 최근 5년간 면제 비율도 75~88%에 달하는 등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 대한 면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 73]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건수 비율: 2022~2026년

(단위: 건)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시(A)	1	1	2	1	1
면제(B)	7	6	6	3	3
합계(C=A+B)	8	7	8	4	4
면제 비율(B/C)	88%	86%	75%	75%	75%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4가지 예외사유를 두어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과 그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대부분의 항목은 ‘유형 ①(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2026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 3건 모두 유형①에 해당하며,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잠재성장을 제고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면제 항목을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우대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또는 장기간의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7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유형	내용
①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③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평가에 따른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6항 단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그러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면제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예비타당성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항목까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평가 면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지출 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5조원)와 통합투자세액공제(16.6조원)의 경우, 지방우대계수(1.0~1.5)가 도입되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최대 50%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평가 없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1.4조원)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1.1조원) 역시 기존 세제지원의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임에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지방주도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와 같이 추가적인 조세지출을 수반하는 제도의 효과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것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이미 지방우대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와의 중복·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예비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총량이 제약되어 있다면, 한정된 재원을 어떤 정책수단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수도권 소재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부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동일한 조세지출 규모 내에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주도 성장 지원을 주된 사유로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세 가지 제도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기존의 지방 관련 세제지원과 함께 상호 연계하여 정책효과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75]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항목, 내용 및 사유

항목	내용	면제 사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지방우대	R&D비용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을 우대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유형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유형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신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잠재성장률 제고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유형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도입해야 하며, 특히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행의 포괄적인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면제의 구체적인 배경과 근거, 정책적 필요성 등을 충실히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 타당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평가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적용기한 종료 시점에 실시되는 의무심층평가 이전까지 별도의 효과성 평가 없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시점의 적절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도의 지속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보완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규모가 큰 신규 조세지출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의 정책효과와 재정비용을 초기에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점검은 신규 조세지출의 운영 과정에서 정책효과와 재정소요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지속 여부에 관한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절차의 사례로 볼 수 있다.²⁹⁾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도 측정 기준 개선

올해 실시된 31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의무 14건, 임의 17건) 중 26건(의무 11건, 임의 15건)은 일몰 연장·상시화·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건(의무 2건, 임의 2건)은 제도 종료 또는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심층평가는 제도의 연장과 종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는 데 그쳐 제도 존폐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76] 심층평가 결과의 반영여부

평가의견	반영여부		
	반영	기타	합계
연장/상시화/유지	26	-	26
종료/단계적 축소	4	-	4
의견 보류	-	1	1
합계	30	1	31

주: 1.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심층평가는 제도의 연장 또는 종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데 그쳐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세법개정안은 제도 종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및 재정경제부 심층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도 존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 30건(의무 13건, 임의 17건)의 평가결과는 모두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존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제시

29) 이상엽·김애진,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6.9.

되지 않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에도 제도 종료 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심층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만으로는 심층평가가 실제 제도 개선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³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5조는 정책효과성이 크게 낮아 일몰종료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평가의 활용 성과를 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범주형 지표로만 측정할 경우,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심층평가는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원요건 및 제도설계의 개선, 사후관리 강화, 지원수준 조정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단기적으로 특례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도의 존폐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면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책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평가의 내실화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존폐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방식과 지원수준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정책적 당위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평가에서는 해당 조세특례가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조세지출의 비용 대비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0)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사례와 같이 평가 결과 복수의 대안이 제시된 경우, 최우선 대안뿐만 아니라 차선 대안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최우선 대안의 반영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가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효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특례가 정책 목표와 관련된 행태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로 수혜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소득이나 가처분자원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특례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행태가 나타났다면 해당 세부담 감소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책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특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행태 변화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책효과는 외연적 측면(extensive margin)과 내연적 측면(intensive margin)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연적 측면은 경제활동의 참여 여부나 특정 행위의 실행 여부에 관한 변화를, 내연적 측면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의 활동 규모나 강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외연적 효과와, 감면에 따른 취업자의 세후소득 증가라는 내연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³¹⁾ 두 효과는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정책목표가 중소기업 취업이나 고용 유지 등 외연적 측면의 변화에 있는 경우, 세후소득 증가와 같은 내연적 측면의 변화만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책목표가 내연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외연적 측면의 변화를 정책효과의 근거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정책효과의 구체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및 정책수단의 선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역시 조세지출 평가에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이 없었을 경우와의 비교를 통한 효과성, 비용 대비 효율성, 중복지원 및 대체효과, 행정·납세협력 비용, 직접지출 등 대안적 정책수단과의 비교를 주요 평가요소로 제시하고 있다.³²⁾ 이러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별 조세

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제도적 한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만약 고용·취업의 의사결정(extensive margin)에 본 조세특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본 조세특례는 제도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6.9.)

32) Beer, S., Benedek, D., Erard, B., & Loepnick, J. (2022). How to evaluate tax expenditures (IMF Fiscal Affairs How-to Note 22/0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 (2010).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World Bank (2024). Tax expenditure manual: A policymaker’s guide to tax expenditure analysis and reform. World Bank.

특례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수준과 지원방식의 조정, 정책수단의 재설계 등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책수단 간 중복·대체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특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제도들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제도를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각 제도의 효과는 파악할 수 있더라도,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나 중복지원 여부, 정책수단 간 자원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등의 감면’이 별도로 평가되었다.³³⁾ 이러한 사례는 개별 제도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지출 간 관계와 지원체계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심층평가의 범위를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특례와 관련 정책수단으로 확대하여, 개별 제도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도 간 상호관계와 대안적 정책수단의 효과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조세특례의 존치 판단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효과의 규모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일몰을 기본 원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분석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매년 부처 자체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정책효과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세지출의 성과와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조세특례는 원칙적으로 일몰에 따라 종료하고, 적용기간의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비롯하

3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은 각각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논하고 있다.

34) 세계은행은 공통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지출을 함께 평가하여 제도 간 상호보완성과 중복 가능성을 분석하고, 다른 조세수단이나 직접지출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OECD 역시 조세지출을 유사한 목적의 직접지출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과정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orld Bank (2024). Tax expenditure manual: A policymaker’s guide to tax expenditure analysis and reform. World Bank; OECD (2010).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OECD (2021). Tax Expenditures Report by the Tax Experts Commission. OECD.)

여 신규 조세특례 도입에 준하는 수준의 검토와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심층평가에서는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책적 필요성을 주된 근거로 적용기한 연장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이유로 적용기한 연장을 권고하였으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역시 정책 목적 측면에서 당해 연도에 국한된 소폭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과세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일몰 연장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근속유지와 관련된 효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³⁵⁾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몰 연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책 목적이나 제도의 특수성을 근거로 제도 존치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성과와 비용을 기준으로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 연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 관련 특례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혜택 수준의 불충분성이나 외부적 요인의 제약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실제로 효과성 저하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제도 존치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성실사업자 관련 공제 역시 수혜요건 충족이 신고소득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나 사업자의 성실신고 의지·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하거나 존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전제로 제도를 연장할 경우, 동일한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수단의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심층평가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 목적의 중요성이나 제도의 특수성만을 근거로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보다, **일단 일몰에 따라 제도를 종료하고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35) 해당 심층평가는 제도의 인지도 및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응답 결과만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유무나 그 규모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으며, 효과가 없다는 응답 역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부재를 의미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실망이나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되, 실질적인 효과성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별도의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지원대상별로 관련 정책과 제도가 상이하여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행 특례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몰 이후 관련 제도의 재설계 과정에서 지원대상별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대체 가능한 정책수단까지 포함하여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접근이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가능성을 제도 도입 단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평가 범위의 확대와 실증분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 단계부터 사후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사전평가 단계에서 정책목표와 예상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 시행 이후의 평가와 연계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³⁶⁾ 이러한 방식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정책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할 것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사후평가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사전 단계에서 정책효과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사후평가에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의 규모에 비추어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지원방식에 비해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효과의 규모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일몰을 기본 원칙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의 존치를 제한함으로써, 제도 도입 단계부터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자료 등 다양한 자료의 연계와 실증분석체계를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 규모와 수혜 대상, 지원방식의 조정 등 구체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6) 이상엽·김애진,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6.9.

3.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조세지출의 경우 일몰 연장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며,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분류체계 또한 유형별 조세지출 정비 방안과 연계되지 못했던 데에서도 기인한다.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조세체계 중 세법상의 본질에 포함되는 ‘기준조세체계’ 해당 항목을 선정하고, 그 외 세법상의 비과세 및 감면 등 특례를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조세지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출’로 규정된 개별 항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도적 정비 및 재설계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달리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지출의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을 기준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목이 주로 조세지출로 선정되고 관리되었으며, 그 결과 개별 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조세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조세지출의 관리를 위해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부록³⁷⁾에서 최초로 특성에 따라 조세지출을 분류하여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및 구조적 지출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통계를 발표한 바는 있었으나, 이 또한 조세지출의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참고자료에서³⁸⁾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현행 체계상 조세지출로 규정된 항목의 일부를 ‘기준조세체계’로 편입하여 조세지출에서는 제외시키는 방안에 따른 통계를 처음 제시하였다. 다만, 해당 통계를 제시하면서도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세지출과의 구별 기준이 부재하였으며, 조세지출의 범위 및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모호함 문제로 인해 그동안 조세지출이 실효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였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³⁹⁾

이에 정부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⁴⁰⁾ 정부는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안에

김주현 추계세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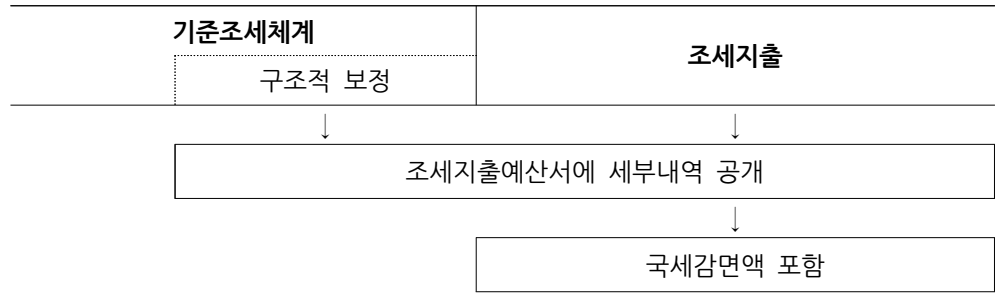
37)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17), p.21

38)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5), p.32

39)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2026), p.81

서 과세대상·세율체계 등 모든 납세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표준적 조세구조에 해당되는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조세지출로 구별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기준조세체계 중에서도 세법 외 공법상 의무에 따른 지출에 대한 세법상 보정항목 등은 ‘구조적 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조세지출 항목에서는 제외하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그 세부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8월까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기준 수립 및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편된 분류체계에 따라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계획을 밝혔다.⁴¹⁾

[표 77] 정부의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가 제시하는 구조적 보정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항목이다. 구조적 보정 항목이 제외되는 경우, 정부는 2026년 국세감면액이 87.0조원에서 72.0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에서 88.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40)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6), p.31

41)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발표하지 않고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발표하여 왔다. 다만, 연초에 발표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경우 조세지출 운영방향 및 성과관리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여 대외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 계획을 수록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8] 재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등

(단위: 억원, %)

	2025년	2026년	2027년
■ 현행 국세감면액(A)	761,084	870,132	1,049,307
■ 구조적 보정(B)	138,589	150,119	163,034
■ 재분류 국세감면액(C=A-B)	622,495	720,013	886,273
■ 국세수입총액(D)	4,021,024	4,447,507	6,153,088
■ 재분류 국세감면율[C/(C+D)]	13.4	13.9	12.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¹⁾	13.2	14.0	14.1

주: 1) 재분류 조세지출 기준 적용시 법정한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러한 정부의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수립 및 조세지출의 구별 기준 공개 필요

정부는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구별 기준을 먼저 제시하여 그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을 개별세법상 과세기본구조(기본 원칙, 과세대상, 세율구조 등), 과세기본구조 보정항목(과세단위·대상 등을 보정), 공적 지출(정부구매·지출, 국방, 치안, 외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 구별 기준에 대한 설명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컨대 개별 세목별로 누가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또한 그러한 소득이나 이익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에서 어떠한 비용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세금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발생한다면 이는 그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혜택이나 정책 유도의 목적을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조세지출 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는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조세지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기준조세체계가 아닌 ‘조세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 감면을 야기하여 재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 단계에서 예비타당성평가, 도입 후 심층평가 등의 절차와, 국세 감면 규모가 산출되어 총액 관리의 측면에서 관리되는 반면, 기준조세체계는 이러한 관리 방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조세체계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세법구조를 반영하여 그 수립 기준이 모두 상이한 만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⁴²⁾ 이에 정부가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그 기준을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조세정책이 운용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구조적 보정 항목의 조세지출 제외 사유 명시 필요

정부는 현재 구조적 보정 항목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구조적 보정으로 분류된 개별 항목이 조세지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구조적 보정 항목으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및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각각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연금보험료공제는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그 내역이 확인될 정도로 오랫동안 조세지출로 분류되었던 항목이다. 그런데 위 항목들을 현 시점부터 기준조세체계로 보아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경우, 조세지출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만큼 분류 개편의 당위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가 역사적으로 동 항목들을 조세지출로 분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서 해당 항목들을 구조적 보정으로 포함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경우, 향후 관리 방안의 용이성 등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보정으로 분류되어 조세지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클 경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⁴³⁾

또한, 조세지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 등 시계열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전 회계연도에 대해 동일한 분류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⁴⁴⁾

42)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2026),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p.96에 수록하였다.

43) 이상엽·김애진(2026),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p.231

44)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구조적 보정 항목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할 경우의 최근 10개년도 국세감면액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해당 항목을 분리한 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다. 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해당여부 검토 필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구조적 보정 외의 다른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도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조세지출 항목 중 같은 논리로 조세지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항목들 중 조세지출로 포함하여 관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세법에 조세감면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지출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그동안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세지출 관리 대상 범위가 모호하였던 데에 반하여, 정부가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던 데에서도 기인한다.

예컨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정부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단위, 주택의 범위, 1주택의 판단기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변경하여 왔다.⁴⁵⁾ 즉, 부동산 경기 상황 등에 따라 경제주체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세지출로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면 실적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경우 유사한 공제 제도를 조세지출로 포함하여 관리하는데, 이는 기준조세체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은 기준조세체계에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공제나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제외(Capital gains exclusion on home sales)를 조세지출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주된 거주주택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 중 최대 25만 달러(부부 합산신고 시 50만 달러)를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⁶⁾

호주의 경우에도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이 발생한 연도에 과세하는 것을 기준조세체계로 보아,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과 최대 2헥타르의 인접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범위에서 자본이득세(CGT) 과세대상에서 제외(Main residence exemption)하고 있다.⁴⁷⁾

답변하였으며, 국세청은 해당 업무가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45) 박훈(2025),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p.1, p.10~34

46) 미국 재무부(2024), 「TAX EXPENDITURES FISCAL YEAR 2026」, p.11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매각일 직전 5년 중 합계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의 주된 거주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혜택을 2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47) 호주 재무부(2025), 「2025-26 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 p.166

두 국가 사례에서 모두 볼 수 있듯이,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조세체계를 먼저 수립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제외를 조세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세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함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세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는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⁴⁸⁾) 제도가 있는데,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을 기준조세체계로 수립하는 경우 현재는 조세지출로 포함되지 않은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 항목 또한 조세지출로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항목에 대해서도 조세지출 해당 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현재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추계신고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하여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확보에 기여한다는 사유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적을 조세지출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게 납세협력과 과세 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56조의3)는 조세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⁴⁹⁾ 위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항목의 경우에도 조세지출 포함 여부가 달리 결정되고 있는 것은, 기준조세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향후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해당 기준조세체계를 먼저 제시하고, 타법상에 조세 감면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조세지출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비과세·감면 제도를 조세지출로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48)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②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49) 이상엽·김애진(2026),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라. 반복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검토와 실적 관리 필요
탄력세율의 경우 물가나 수급상황 등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탄력세율 제도는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탄력세율 제도의 경우 정해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의 한 유형에 해당되는 저율과세와 유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실질적으로 조세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제도가 존속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의 심의가 부재한 채로 제도가 운영된 데에 반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기반하여 제도 운용 및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반복 시행되는 탄력세율이 국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를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하여 밝혀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조세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탄력세율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매년 말에 다음연도 할당관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필요한 경우 연중에도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 정부는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그 지원액은 9,52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⁵⁰⁾⁵¹⁾

다만, 할당관세 지정 대상 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매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으로 연속하여 지정되고 있다. 최근 6년(2021~2026년) 중 3개년도 이상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106개이며, 6년 연속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도 36개 품목⁵²⁾(이하 ‘36개 품목’)으로 확인된다.

50) 재정경제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보도자료, 2025.12.2.

51)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 실적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전년도 할당관세 실적을 추정하고 관련 결과 보고서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2)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나프타 제조용 원유, 겔보리, 계란가공품, 귀금속 잔재물, 농약원제, 대

해당 품목들은 주로 에너지, 철강, 식료품 품목으로, 2025년 관세 징수액은 7.6조원이었는데, 36개 품목이 6년 연속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소한 관세 세입은 3,57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관세 세입의 4.7% 수준이다.

[표 79] 할당관세 품목 반복 지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

(단위: 억원, 개,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관세 징수액(A)		70,585	82,270	103,241	69,723	76,409	72,214 ¹⁾
전체 할당관세 지정 품목수		92	119	117	125	102	84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B)		6,758	19,694	10,753	14,301	8,305	- ²⁾
관세 징수액 대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B/A)		9.6	23.9	10.4	20.5	10.9	
6년 연속 할당관세 지정 36개 품목의 세수 감소 추정액(C)		3,938	11,042	5,593	7,328	3,570	- ²⁾
할당관세 품목 반복 지정으로 인한 관세 감소 비율(C/A)		5.6	13.4	5.4	10.5	4.7	

주: 1) 2026년의 경우 관세 세입 예산 규모임

2) 2026년 할당관세 지원액은 2027년 5월 연구용역을 통해 추정 예정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및 연도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는 매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25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⁵³⁾에서는 수입가격과 국내 가격 간 연결 경로가 직접적인 품목에서는 할당관세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나, 소비자 단계로 갈수록 유통마진, 재고·계약가격, 가공비, 품목 구성, 정부 물가관리 및 시장구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커져 가격전가 효과가 약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식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내 가격 형

두, 대두박, 매니옥칩, 매니옥펠릿, 백금촉매, 분리판, 비트펠프(사료용, 버섯용), 사료용근채류, 사료용조제품, 새끼뱀장어, 생사, 석영유리기판, 설탕, 옥수수(가공용), 옥수수(사료용), 요소(비료용, 산업용), 유장분말, 이산화티타늄, 이온교환막, 인조흑연, 전극, 소성로/탄화로/초고온탄화로, 티타늄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페로크롬, 폴리에틸렌, 전해액·흑연화합물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53) 재정경제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6), 「2025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p.6

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당관세가 조세지출과 유사하게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는 데에 반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 근거하여 반복된 할당관세 항목 지정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할당관세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결산서에 할당관세 지정 품목수, 품목명 및 그 실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역시 2021년 11월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 완화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2023년 말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중동정세 불안, 2024년 중동 지역 긴장 고조, 2025년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 심화, 2026년 3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하 조치가 지속 연장되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현재까지 총 23회 연장되어 그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다.

[표 80]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22.4.30	22.5.1 ~6.30	22.7.1 ~12.31	'23.1.1. ~'24.6.30	'24.7.1. ~10.31	'24.11.1. ~'25.4.30	'25.5.1. ~10.31	'25.11.1. ~'26.3.27	'26.3.27. ~4.30	'26.5.1. ~11.30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7%	△15%	△15%
					경유△37%	△30%	△23%	△15%	△10%	△25%	△25%
					부탄△37%	△30%	△23%	△15%	△10%		△25%
휘발유	820	656 (△164)	573 (△247)	516 (△304)	615 (△205)	656 (△164)	698 (△122)	738 (△82)	763 (△57)	698 (△122)	698 (△122)
경유	581	465 (△116)	407 (△174)	369 (△212)	369 (△212)	407 (△174)	448 (△133)	494 (△87)	523 (△58)	436 (△145)	436 (△145)
부탄	203	163 (△40)	142 (△61)	130 (△73)	130 (△73)	142 (△61)	156 (△47)	173 (△30)	183 (△20)		152 (△51)

자료: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보도자료, 2026.7.24.;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9.18.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입이 3.3조원 감소하였다고 추계

한 바 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분 3.4조원 감액을 포함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적으로 3회 연장됨에 따라 세수감소분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시장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다.⁵⁴⁾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도 명확하게 추계되지 않아 제도 지속 여부가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근거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

탄력세율 제도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탄력세율 제도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개별 세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목들과는 다르게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⁵⁵⁾을 통해 인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장기간의 제도 연장 과정에서 별도의 성과평가 등에 기반한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간 제도 존속으로 인해 세입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는 할당관세로 인한 세입 감소액의 경우 매년 추정치만 발표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액은 발표하지 않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탄력세율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할당관세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을 국세감면액에 포함하여 추산한 결과, 2021~2025년 동안 두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은 연평균 4.8조 원 규모였으며, 이를 반영시 국세감면을 또한 연평균 0.9%p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54) 참고로, 영국 경쟁시장청의 경우 2022년 3월 연료세율 인하를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22년 7월 연료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고 사후평가한 바 있으며, 영국 국세청의 경우 2026년 5월 연료세율의 인하를 연장하면서 해당 정책이 '2026년 4분기 CPI를 0.04%p 낮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연료세율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view-finds-cause-for-concern-in-some-parts-of-road-fuel-mark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ed-fuel-duty-rates-for-2026-to-2027/amended-fuel-duty-rates-2026-to-2027>, 검색일: 2026.10.6.)

55) 할당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유류세 인하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81] 탄력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 반영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 발표 국세감면액 (A)	57.0	63.5	69.8	70.5	76.1
정부 발표 국세감면율 (B)	13.5	13.0	15.8	16.1	15.9
할당관세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C)	0.7	2.0	1.1	1.4	0.8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D)	0.3	4.7	5.1	4.8	3.3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세입감소를 포함한 국세감면액 (E=A+C+D)	58.0	70.2	76.0	76.7	80.2
국세수입총액 (F)	364.0	422.9	370.4	365.7	402.1
탄력세율 제도를 반영한 국세감면율 [G=100*(E/F)]	13.7	14.2	17.0	17.3	16.6
국세감면율 차이 (G-B)	0.2	1.2	1.2	1.2	0.7

주: 국세청·관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값으로 부가세(surtax)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부가세를 포함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 추정액이 더 커질 수 있음

자료: 국세청·관세청 제출자료 및 연도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탄력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성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조세지출의 경우 심층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복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에 대하여도 실제로 탄력세율 제도가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부가 새롭게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하는지에 따라 탄력세율 제도의 관리 방안 또한 함께 달라질 여지가 있어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관세 세입을 조세지출 보고 체계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있다. 호주는 자유무역체계를 기준조세체계로 보며, 따라서 관세의 기준조세체계는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에 국내 생산 상품과 동일하게 상품·서비스세(GST)와 담배·주류·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관세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음(-)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다만 호주가 발표하는 관세 조세지출 규모는 할당관세 제도에 따른 관세 수입의 변화분이라기보다는 내국소비세 상당 관세를 제외한 관세 부과분을 의미하므로, 할당관세로 실제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 전체 관세 항목의 음의 조세지출 절댓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준조세체계 수립에 따라 세목별 세입 실적 및 탄력세율에 따른 효과도 조세지출에

다르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호주의 사례; 조세지출 보고 체계에 포함되는 관세 수입

F21 Customs duty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m)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1,960	-2,190	-2,070	-2,010	-2,030	-2,090	-1,640	-1,140
Tax expenditure type:		Increased rate			2024-25 code:		F21
Estimate Reliability:		Medium - High					
Commencement date:		4 October 1901			Expiry date:		
Legislative reference:		Customs Act 1901					
		Customs Tariff Act 1995					

The benchmark tax treatment is that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same taxes on consumption as domestically produced goods and, therefore, are free from customs duty (except for excise-equivalent customs duty). Customs duty is collected on certain goods imported into Australia (for example, most cars are subject to 5 per cent customs duty upon importation, unless a free-trade agreement applies). This is a negative tax benchmark variation.

자료: 호주 재무부, 「2025-26 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2025), p.188

따라서 정부는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며 탄력세율은 조세체계 중 기준조세 체계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유지되는 탄력세율 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세율 제도가 국내 경제 여건 고려시 꼭 필요하지만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항목을 예측하여 수록하는 것이 일정 부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출 결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세율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분류기준 개편 검토 필요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분류 기준이 새로 수립되는 경우, 조세지출의 관리유형별 분류 기준도 함께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조세지출 항목을 조세지출 특성의 보유 정도에 따라 관리유형을 구별하며,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 가능한 범주를 분류하기 위해 적극적 관리대상·잠재적 관리대상·구조적 지출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분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당 기준만으로

는 항목별 정책적 특성과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 결과 또한 조세지출의 실질적인 정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 기준을 살펴보는 경우, 먼저, 조세지출예산서상 ‘특정성’이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적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로 이를 판단하며, 특정성이 없는 항목은 모두 적극적 관리가 곤란하거나 정비가 사실상 곤란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특정 행위에 대한 장려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정 대상을 선별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항목을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대체가능성’ 기준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다만, 조세지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지원의 경우, 일정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효한 관리 유형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폐지가능성’ 기준의 경우, 정부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많은 세액공제 제도들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적 폐지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제도들의 경우 정부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현행 관리유형의 분류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 또한 그 특성이 다소 모호해지며 조세지출의 실질적 정비와는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경우 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어 3가지 관리 유형 중 정비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3개년도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을 살펴보는 경우 전체 국세감면액 중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액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조세지출이 정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적극적 관리대상의 경우 국세감면액이 2025년 36조 388억원, 2026년 44조 1,525억원, 2027년 59조 7,221억원으로 그 액수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5년 47.4%, 2026년 50.7%, 2027년 5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83]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A)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구조적지출	174,465	22.9	192,576	22.1	206,692	19.7
잠재적 관리대상(B)	222,182	29.2	232,656	26.7	243,312	23.2
적극적 관리대상(C)	360,388	47.4	441,525	50.7	597,221	56.9
경과규정	4,050	0.5	3,376	0.4	2,083	0.2
○국세수입총액(D)	4,021,024		4,447,507		6,153,088	
○국세감면율[A/(A+D)]		15.9		16.3		14.5
○ 관리대상 감면율 [(B+C)/(B+C+D)]		12.6		13.1		12.0
잠재적 관리대상 감면율 [B/(B+C+D)]		4.8		4.5		3.4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율 [C/(B+C+D)]		7.8		8.6		8.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 항목 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0개의 적극적 관리 대상 항목 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64개 항목이었으며, 일몰기한 또는 부분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136개 항목 중에서도 일몰이 4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73개(전체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36.5%)에 달하였다. 즉, 관리유형별 구별 기준과 실질적인 조세지출의 정비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있다.

[표 84] 적극적 관리대상 일몰 여부 현황

구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운영 중 항목	191	200
• 일몰 항목	128 (67%)	136 (68%)
4회 이상 일몰 연장 항목	71 (37%)	73 (37%)
• 일몰 없는 항목	63 (33%)	64 (3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는 ‘적극적 관리대상’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는 다르게 해당 유형의 항목들이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항목이거나, 현재의 분류 기준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고 조세지출 유형별 관리 방법과 무관한 기준으로서 조세지출의 정비에까지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지출 관리 유형 구별기준이 조세지출의 정비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정비와 연계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기준으로는 정책목표의 시의성, 수혜 대상의 범위, 수혜 대상의 저항성, 유사·중복 지원 여부, 직접지출로의 대체 가능성, 제도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확정하면서, 조세지출로 결정된 항목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유형을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비와 조세지출 제도 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

가. 조세지출 전망오차 현황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감면의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산연도 조세지출 전망치는 국세수입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에 활용되므로 전망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2026년 8월 최초 제출된 조세지출결산서에는 2025년도 전망오차의 합계와 일부 항목별 오차 분석이 제시되었다. 다만 전망오차를 단순 합산하면 항목별 과대·과소 전망이 상쇄되어 전체 오차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항목별 전망오차의 절댓값을 합산하여 오차간 상쇄 효과를 배제하고 조세지출 전망의 정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항목(i)별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도 기준으로 직전연도($t-1$), 기준연도(t) 및 예산연도($t+1$)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치 $\{y_{i,t-1}, \hat{y}_{i,t}, \tilde{y}_{i,t+1}\}$ 를 제시한다. 직전연도($y_{i,t-1}$)는 집계된 실적값이며, 기준연도($\hat{y}_{i,t}$)와 예산연도($\tilde{y}_{i,t+1}$)는 전망치이다. 다음 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제출되면 기존 전망 대상 연도의 실적이 확정되므로, 이를 활용해 기준연도 전망오차 ($\hat{y}_{i,t} - y_{i,t}$)와 예산연도 전망오차 ($\tilde{y}_{i,t} - y_{i,t}$)를 산출할 수 있다.

전망오차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서는 항목별 기준연도 전망오차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B_1)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과다추계된 항목의 양(+)의 오차와 과소추계된 항목의 음(-)의 오차가 서로 상쇄되므로, 합산된 전망오차가 실제 오차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 예산연도 전망오차를 합산한 값(B_2)도 산출할 수 있다.

$$B_1 = \sum_i (\hat{y}_{i,t} - y_{i,t})$$
$$B_2 = \sum_i (\tilde{y}_{i,t} - y_{i,t})$$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목별 전망오차의 절댓값을 합산하는 방식(A_1, A_2)이나 제곱값을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⁵⁶⁾ 절댓값을 합산하는 방식은 과다 추계와 과소 추계에 따른 오차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전망오차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useuplee@assembly.go.kr, 6788-4838)

56) Elliott, G., & Timmermann, A. (2016). *Economic forecast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악하는 데 유용하다.

$$A_1 = \sum_i |\hat{y}_{i,t} - y_{i,t}|$$

$$A_2 = \sum_i |\tilde{y}_{i,t} - y_{i,t}|$$

본 절에서는 단순 합산방식에 따른 단순전망오차(B_1, B_2)와 절댓값 합산 방식에 따른 절대전망오차(A_1, A_2)를 활용하여, 기준연도 전망오차와 예산연도 전망오차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경과규정 항목 등을 제외한 251건이며⁵⁷⁾, 해당 항목 중 추정곤란 등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203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조세지출 실적은 75.7조원이다⁵⁸⁾.

[표 85] 조세지출 전망 - 실적 간 차이 추이: 2016~2025년

(단위: 조원, %)

구분	기준연도 단순전망오차 (B_1)		기준연도 절대전망오차 (A_1)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 (B_2)		예산연도 절대전망오차(A_2)	
	오차액	오차율	오차액	오차율	오차액	오차율	오차액	오차율
2016	△0.7	(△2.0)	3.2	(9.4)	△0.9	(△2.8)	5.8	(17.1)
2017	△0.8	(△2.2)	1.7	(4.7)	△2.4	(△6.6)	4.9	(13.3)
2018	△2.0	(△4.8)	3.8	(9.2)	△3.6	(△8.9)	5.5	(13.5)
2019	0.5	(1.0)	1.6	(3.4)	△2.5	(△5.2)	6.4	(13.5)
2020	1.1	(2.1)	2.2	(4.3)	△0.4	(△0.7)	4.8	(9.4)
2021	△0.6	(△1.1)	2.8	(5.0)	0.5	(1.0)	6.8	(12.4)
2022	0.3	(0.4)	4.3	(6.9)	△3.1	(△5.0)	7.5	(11.9)
2023	△0.3	(△0.5)	3.2	(4.7)	△0.7	(△1.1)	10.8	(15.5)
2024	0.9	(1.2)	2.8	(3.9)	6.5	(9.2)	12.9	(18.4)
2025	0.3	(0.4)	3.7	(4.8)	2.0	(2.6)	9.3	(12.3)
예산연도 전망오차율 기간평균			2016~2025년			(4.3)		(13.7)
			- 2016~2020년			(4.8)		(13.3)
			- 2021~2025년			(3.8)		(14.1)

- 주: 1. 일몰기한 이후의 경과규정에서 발생한 실적 및 전망은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단순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합산이며, 절대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절댓값의 합산
 3. 오차율(%)은 (오차액/실적) × 100으로 산정
 4. 연평균 오차율은 해당기간 오차율 절댓값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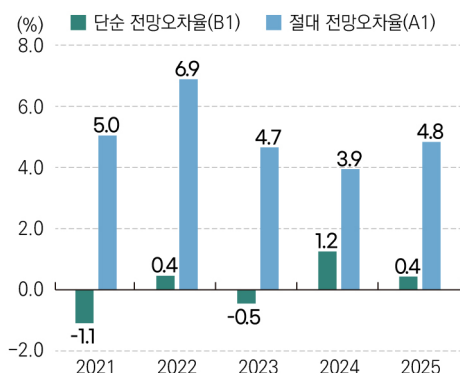
- 57) 경과규정(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례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본 절의 오차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58) 경과규정(39건)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 등을 포함하면 2025년 기준 조세지출 실적은 총 76.1조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조세지출 전망 및 실적의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해당 전망오차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만을 합산하므로, 조세지출예산서의 전망 및 실적의 단순 합산으로 구성한 전망오차와는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조세지출의 기준연도 전망오차는, 단순 합산방식(B_1) 기준 약 0.3조원으로, 전년(0.9조원) 대비 0.6조원($\Delta 64.2\%$) 감소하였다. 반면, 절댓값 합산방식(A_1) 기준 전망오차는 3.7조원으로, 전년(2.8조원)대비 0.9조원(32.2%) 증가하였다. 이는 과다추계와 과소추계에 따른 오차가 서로 상쇄되면서, 전체 조세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전망오차는 감소했으나, 개별 항목의 전망오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차의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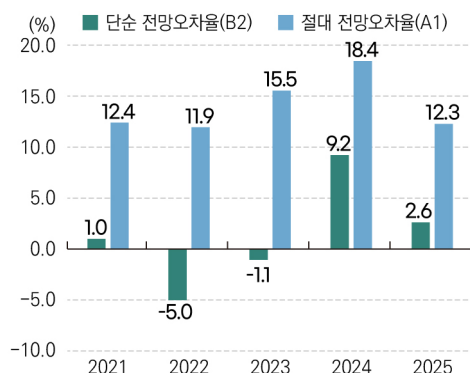
예산연도 전망오차의 경우, 단순 합산방식(B_2) 기준 2025년 전망오차는 2.0조원으로, 전년(6.5조원)대비 4.5조원($\Delta 69.6\%$) 감소하였다. 절댓값 합산방식(A_2) 기준으로는 9.3조원으로, 전년(12.9조원)대비 3.6조원($\Delta 28.2\%$) 감소하였다. 다만, 단순 합산방식에 비해 절댓값 합산방식에서 전망오차의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 단순 합산방식에서 관측된 전망오차의 개선에는 항목 간 오차 상쇄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과 직전 5년(2015~2019년)의 예산연도 전망오차율을 비교하면, 단순 합산방식 기준 최근 5년의 오차율은 3.8%로 직전 5년(4.8%)보다 하락하였다. 반면, 절댓값 합산방식 기준으로는 최근 5년의 오차율이 14.1%로 직전 5년(13.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단순 합산방식에서는 전망오차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항목 간 오차 상쇄를 배제할 경우 최근 5년의 전망오차율은 오히려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두 기간의 비교만으로 장기적인 전망 정확성의 변화 추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9] 기준연도 전망오차율 추이
(단위: %)



[그림 10] 예산연도 전망오차율 추이
(단위: %)



- 주: 1. 일몰기한 이후의 경과규정에서 발생한 실적 및 전망은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단순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합산이며, 절대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절댓값의 합산
 3. 오차율(%)은 (오차액/실적) × 100으로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의 연도별 전망오차율을 살펴보면, 단순 합산방식에서는 기준연도와 예산 연도의 전망오차율이 감소한 이후 다시 크게 상승하는 등 연도별 변동성이 나타난다. 반면, 절댓값 합산방식에서는 일부 연도에 전망오차율이 상승하였으나, 단순 합산방식에서 관측되는 변동에 비해 오차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 합산방식에 따른 전망오차율의 연도별 변동에는 개별 항목의 전망오차뿐만 아니라 항목 간 오차의 상쇄 정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최근 5년(2021~2025년)의 세목별 단순 합산방식과 절댓값 합산방식에 따른 예산연도 전망오차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본다. 절대전망오차율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세목별로 상이한 변동 양상을 나타낸다.

[표 86] 세목별 예산연도 조세지출 전망 오차율

(단위: %)

세목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 (B ₂)					예산연도 절대전망오차율 (A ₂)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2.1	△3.2	△1.7	△0.5	4.0	8.9	9.2	14.5	9.9	7.5
법인세	9.3	△8.1	4.9	65.2	5.2	23.7	13.8	9.7	67.4	27.4
부가가치세	7.2	△9.4	△5.6	2.1	3.4	12.1	12.6	11.0	9.4	7.6
상속세 및 증여세	△5.9	△12.7	24.9	7.6	△38.9	15.2	13.2	81.9	50.5	39.2
개별소비세	9.9	△19.3	△29.0	3.1	18.6	23.3	31.3	32.5	11.4	19.4
기타	△14.7	28.0	16.8	△5.0	△10.7	24.8	63.3	41.1	22.0	36.1
계	1.0	△5.0	△1.1	9.2	2.6	12.4	11.9	15.5	18.4	12.3

- 주: 1. 일몰기한 이후의 경과규정에서 발생한 실적 및 전망은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단순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합산이며, 절대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절댓값의 합산
 3. 오차율(%)은 (오차액/실적) × 100으로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소득세의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은 2024년 △0.5%에서 2025년 4.0%로 상승하였다. 반면, 절대전망오차율은 같은 기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소득세 관련 항목의 절대적인 전망오차 규모는 감소했으나, 2024년에 나타났던 항목 간 반대 방향의 오차가 상쇄되는 효과가 약화되면서 단순전망오차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은 2024년 65.2%에서 2025년 5.2%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절대전망오차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67.4%에서 2025년 27.4%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이는 법인세 관련 세부 항목에서 발생한 오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일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각각 3.8조원과 1.8조원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는 각각 1.7조원과 △1.1조원으로 감소하였다.⁵⁹⁾ 두 항목의 오차를 단순 합산하면 오차규모가 2024년 약 5.6조원에서 2025년 0.6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오차의 절댓값을 합산할 경우에는 5.6조원에서 2.8조원으로 감소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법인세 관련 항목에서의 단순전망오차율의 큰 폭의 개선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 오차의 상쇄효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증여세의 절대전망오차율은 2023년 크게 상승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단순전망오차율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항목 간 반대 방향의 전망오차가 크게 상쇄되면서 실제 오차 규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전망오차율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실질적인 전망오차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의 단순전망오차가 큰폭으로 개선된 것은 법인세 관련 항목의 전망오차 감소와 함께, 상속·증여세 및 기타 세목의 과소추계가 여타 세목의 과대추계와 상쇄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9) 법인세에 한정해 산출한 오차로, 소득세 오차를 포함하면 오차수준이 소폭 변동한다.

[표 87] 조세지출 규모별 전망 오차율

(단위: %)

지출규모 구 분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 (B ₂)					예산연도 절대전망오차율 (A ₂)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1,000억원 이하	△1.5	0.8	25.6	5.9	△0.9	43.7	46.8	48.2	38.6	31.1
5,000억원 이하	△6.2	△10.6	△3.3	5.8	△7.8	13.3	17.1	30.2	26.1	21.9
1조원 이하	△0.3	7.9	17.8	△0.6	8.1	17.9	13.4	36.1	17.5	15.7
1조원 초과	2.2	△6.8	△4.8	11.4	3.4	9.1	9.1	9.0	16.7	9.6
전체	1.0	△5.0	△1.1	9.2	2.6	12.4	11.9	15.5	18.4	12.3
1,000억원 초과 항목의 총액 대비 비중(실적 기준)						72.0	74.0	75.1	74.9	75.1

- 주: 1. 일몰기한 이후의 경과규정에서 발생한 실적 및 전망은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단순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합산이며, 절대전망오차액은 항목별 오차액의 절댓값의 합산
 3. 오차율(%)은 (오차액/실적) × 100으로 산정
 4. 1,000억원 초과 항목의 비중은 1,000억원 초과 범주의 오차액 합계의 절댓값을 각 범주의 오차액 합계의 절댓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전망항목을 구분하여 전망오차율을 살펴보면, 단순전망오차율은 항목 간 오차 상쇄의 영향으로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 반면, 절대전망오차율은 조세지출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전체 조세지출의 전망오차율은 1조원을 초과하는 항목의 전망오차율과 밀접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조원 초과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 이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2021~2025년)의 전망오차율 추이를 살펴보면, 1조원 초과 항목을 제외한 경우 2023년을 정점으로 전망오차율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조원 초과 항목의 경우 2024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3.8조)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조)의 높은 오차규모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은 전망오차율을 기록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88] 전망 - 실적 간 전망오차 상위 10개 항목

(단위: 조원, %)

구분 ¹⁾		세목	2025년		최근 5년 평균	
			지출 실적	단순오차액 (B ₂)	절대오차액 (A ₂)	오차율 ²⁾
1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³⁾	소득세, 법인세	2.5	1.8	1.43	76.2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소득세, 법인세	4.1	-1.0	0.60	18.1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69)	소득세	0.8	0.2	0.44	39.1
4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소득세, 법인세	4.3	-0.3	0.39	16.2
5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상증법 §69)	상속세, 증여세	0.4	-0.2	0.31	67.2
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법 §52① 등)	소득세	7.3	0.3	0.29	5.3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 세 등 (조특법 §88의5,89의3)	소득세	0.9	0.5	0.28	40.8
8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 제(부가법 §42)	부가 가치세	3.6	0.2	0.27	8.6
9	근로장려금(조특법 §100의2~13)	소득세	4.6	0.2	0.25	5.5
10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8의2)	소득세	0.8	0.4	0.24	41.3

주: 1) 최근 5년(2021~2025년)간 (전망 - 실적)의 오차액(절댓값) 평균 기준 상위 10개 항목

2) 연도별 오차율(절댓값)의 평균으로, 연도별 오차율(%)은 (오차액/실적) × 100로 산정

3)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법'은 「소득세법」,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법'은 「부가가치세법」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간 전망오차 규모가 큰 상위 10개 항목의 연평균 절대전망오차율을 살펴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76.2%로 가장 높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67.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41.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40.8%)이 그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법인세 분야의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망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으로 한정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각각 1.8조원(72.3%)과 △1.0조원(△25.3%)의 전망오차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 전체 전망오차 확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

제(0.3조원, 3.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0.5조원, 50.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0.4조원, 49.2%)에서 비교적 큰 전망오차가 발생하였다. 2025년 상위 10개 항목의 전망오차를 단순 합산하면 약 2조원인 반면, 절댓값을 합산하면 약 5조원에 이른다. 이는 항목별 전망오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의 오차가 상쇄되면서 단순 합산한 전망오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조세지출 전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5년(2021~2025년)간 단순전망오차 기준 예산연도 조세지출 전망의 연평균 오차율은 3.8%로, 이전 5년(2016~2020년)의 4.8%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5년 전망오차율도 2.6%로 전년(9.2%)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항목별 전망오차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의 연평균 오차율은 14.1%로 이전 5년(13.3%)보다 오히려 상승하였다. 2025년 절대전망오차율 역시 12.3%로 최근 10년 평균(13.7%)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단순 합산방식에서 나타난 전망오차의 감소가 항목별 전망의 정확성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 오차의 상쇄 효과가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세목별·항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과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망오차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과대추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과소추계가 전체 전망오차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일부 항목에서 큰 전망오차가 발생하고 항목 간 오차가 상쇄되는 상황에서는 전체 전망오차만으로 전망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오차가 집중된 항목과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망오차의 집계 및 분석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와 같이 전망오차의 단순 합계만을 제시할 경우, 항목 간 오차의 상쇄로 인해 실제 전망오차의 규모가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합산한 전망오차와 함께 항목별 전망오차 절댓값을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오차의 방향과 전반적인 규모를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목별·항목별 전망오차를 분석하여 오차가 집중된 주요 항목을 식별하고,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망오차의 분석 결과를 추계방법 개선으로 신속하게 환류**할 필요가 있다. 전망오차가 발생한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실적이 확인되는 즉시 오차의 발생 원인과 추계방법상의 문제를 점검하여 차기 전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망오차의 자체 수정에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⁶⁰⁾, 주요 항목의 전망오차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추계모형, 주요 변수 및 전망 가정의 보완으로 연계하는 등 오차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전망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준연도 및 예산연도 전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추계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항목에 적용된 구체적인 전망방법과 주요 활용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전망치의 산출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전망오차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망오차가 큰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망방법과 주요 활용변수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망오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추계방법의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결산서는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비해 ‘전망 대비 실적분석’과 ‘소득분위별 귀착분석’⁶¹⁾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후적 분석의 범위와 구체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망 대비 실적분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⁶²⁾을 포함하고 있지만, 분석 대상이 3개 항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망오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도 제한적이다. 조세지출결산서의 법정제출기한이 매년 8월 16일로 정해져 있고, 감면실적의 집계 이후 오류 검증 및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결산서가 조세지출의 사후적 평가와 전망방법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주요 항목의 전망오차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60) 본 절의 ‘BOX 3. 조세지출 전망오차의 시점 간 연계성’ 참조

61) ‘소득분위별 귀착분석’은 주요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11개)의 귀착을 소득 10분위별로 제시하여, 기존의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 간 구분에 따른 총계 수준의 분석을 넘어 소득계층별 조세지출 혜택의 분포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내용은 ①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②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③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등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조세지출의 추계·전망치뿐만 아니라 전망치의 변경 내역이나 전망과 실적 간 차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호주⁶³⁾는 전년도 보고서 이후 추계치가 크게 변경된 주요 항목과 그 사유를 설명하며, 캐나다⁶⁴⁾는 주요 추계·전망의 변경사항과 추계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⁶⁵⁾은 조세감면통계(Tax Relief Statistics)를 통해 전년도 전망치와 추계실적 간 차이를 오차율 구간별⁶⁶⁾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정보 제공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망치의 변경 내역과 전망·실적 간 차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세지출 전망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종합하면, 조세지출 전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망오차의 측정·공개 방식 보완, 개별 항목의 전망방법 및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전망오차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분석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전망오차가 큰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산출 근거와 오차 발생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연도 전망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지출 전망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3)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 2025-26 Tax Expenditures and Insights Statement, 2025.12.

64) Government of Canada,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Concepts, Estimates and Evaluations 2026, 2026.2.

65) 조세지출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추계와 별개로,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재정전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의 규모와 변동을 함께 점검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이나 지출 규모의 변화가 두드러진 항목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룬다. 또한 영국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정부의 조세지출 관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감사·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조세지출 추계와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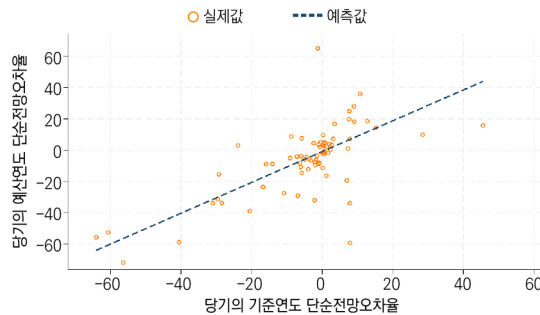
66) 전망치 대비 $\pm 5\%$, $5\sim 25\%$, $25\sim 50\%$, 50% 이상 등의 구간으로 구분한다.

BOX 3. 조세지출 전망오차의 시점 간 연계성

□ 기준연도와 예산연도 전망 간 연계

- 조세지출예산서는 기준연도와 예산연도 전망치를 함께 제시하며, 예산연도 전망은 기준연도 추정액에 경제지표 전망과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이에 따라 두 시점의 전망오차 간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세목별 기준연도와 예산연도 전망오차율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세목별 기준연도 단순전망오차율(B_1)과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B_2)



주: 예측값은 세목별 예산연도 전망오차에 대한 선형회귀분석⁶⁷⁾ 결과에 기반하며, 단순상관계수는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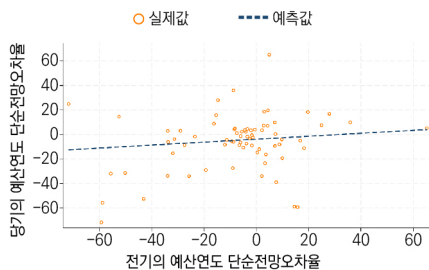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예산연도 전망오차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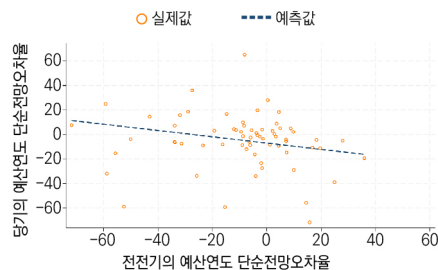
- 세목별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는 1년 시차에서 양(+)의 자기상관을, 2년 시차에서 음(-)의 자기상관을 보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임

세목별 예산연도 단순전망오차율(B_2)의 자기상관

(1년 시차)



(2년 시차)



주: 예측값은 세목별 예산연도 전망오차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에 기반하며, 단순상관계수는 0.26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 예측값은 세목별 예산연도 전망오차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에 기반하며, 단순상관계수는 -0.14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7) 2013~2025년의 세목별 전망 오차율을 대상으로, 예산연도 전망 오차율(전망 시점=t)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는 기준연도 전망 오차율(전망 시점 t-1), 예산연도 전망 오차율(전망 시점 t-1, t-2) 및 연도별 더미변수로 구성된다.

5. 조세지출-재정지출 부문별 연계분석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방법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모두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이지만, 그동안 각각 별도의 체계에서 관리·분석되어 왔다. 이 경우 특정 정책분야에 투입되는 전체 정부지원 규모와 조세지출·재정지출 간 재원배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2018년도부터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인 분야·부문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일한 분야·부문 기준에서 연계하면 특정 정책영역에 투입되는 전체 지원규모와 정책수단별 구성비를 비교할 수 있다.

제II장에서는 12대 분야를 기준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재원배분 구조를 총량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문 단위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고, 정책영역별 전체 지원규모와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상대적 비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총량분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책수단 간 재원배분 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연도는 2026~2027년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과 2027년도 예산안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2026~2027년 조세지출 전망치와 연계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은 16대 분야, 75개 부문, 596개 프로그램, 2,497개 단위사업 및 9,8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 반면, 조세지출은 16대 분야, 41개 부문 및 290개⁶⁸⁾ 조세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야·부문 수준에서는 동일한 기능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양자의 규모를 연계·비교할 수 있으나, 개별 사업 수준에서는 분류단계와 세분화 정도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설정하는 데 제약이 있다.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839)

68) 경과규정 항목 39개가 포함된 수치이다.

조세지출의 부문별 자원배분 구조⁶⁹⁾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41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정보와 전망치를 활용하여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를 직접 집계하고, 분야별 분석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조세지출의 자원배분 구조를 살펴보았다.

2027년 조세지출 전망을 기준으로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혁신지원 부문이 28.3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27.0%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이어 재정·금융 10.6%, 보건의료 10.2%, 사회복지일반 6.2%, 고용 6.0% 순이며, 상위 5개 부문이 전체 조세지출의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총 41개 부문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전체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집중도는 2027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5개 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은 2026년 53.1%에서 2027년 약 59.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조세지출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 연구·인력개발 지출 증가 등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2026년 14.2조원에서 2027년 28.3조원으로 약 두 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27.0%로 1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정·금융은 11.7%에서 10.6%, 보건의료는 11.2%에서 10.2%, 사회복지일반은 7.2%에서 6.2%, 기초생활보장은 6.2%에서 5.1%로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농업·농촌($\Delta 0.9\text{p}$), 고용($\Delta 0.7\text{p}$), 산업·중소기업일반($\Delta 0.6\text{p}$), 공적연금($\Delta 0.6\text{p}$) 등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부문의 조세지출 규모 자체는 모두 2026년보다 증가하며, 비중 하락은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69)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12대 분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결산 자료의 기능별 분류는 16대 분야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12대 분야는 16대 분야 중 일부 분야를 통합한 분류이므로, 앞의 총량분석은 12대 분야 기준으로 실시하되, 보다 세부적인 부문별 연계분석은 16대 분야의 하위 부문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종합하면, 2027년 조세지출의 부문별 분포는 주요 지원부문의 순위가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전체 조세지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주요 부문의 세부 조세특례 구성을 살펴보면, 부문 내에서도 일부 항목에 조세지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금융 부문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8조원)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3.3조원)가 대표적이며, 두 항목이 재정·금융 부문 전체 조세지출의 약 73%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의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보험료 관련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8.8조원)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1.9조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보건의료 부문의 조세지원이 주로 가계의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수산 분야의 농업·농촌 부문에는 20여개 조세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1조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2조원),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0.8조원),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0.7조원)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농어업 생산비 부담 경감과 농어가소득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산업혁신지원 부문에는 연구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및 친환경산업 지원 등과 관련된 40여개 조세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통합투자세액공제(16.6조원)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5조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부문의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0) 다만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농업·농촌뿐 아니라 임업·산촌 및 수산·어촌 부문과도 관련된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각 부문에 귀속되는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의 전체 금액을 농업·농촌 부문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따라서 농업·농촌 부문의 조세지출 규모는 실제 부문별 귀속액보다 크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9] 16대 분야 41개 부문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일련 번호	분야	부문	2026 잠정	2027 전망	비중		
					2026	2027	증감
1	일반·지방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406	442	0.0	0.0	0.0
2		지방행정 재정지원	1,120	1,369	0.1	0.1	0.0
3		재정금융	102,157	111,027	11.7	10.6	△1.2
4	통일·외교	외교통상	10	10	0.0	0.0	0.0
5	국방	전력유지	173	176	0.0	0.0	0.0
6	교육	고등교육	1	1	0.0	0.0	0.0
7		교육일반	10,605	12,354	1.2	1.2	0.0
8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348	711	0.0	0.1	0.0
9		관광	3,879	2,621	0.4	0.2	△0.2
10		체육	50	52	0.0	0.0	0.0
11		문화재	0	0	0.0	0.0	0.0
12	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21,305	21,873	2.4	2.1	△0.4
1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10,561	7,484	1.2	0.7	△0.5
1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3,812	53,896	6.2	5.1	△1.0
15		취약계층지원	7,313	7,844	0.8	0.7	△0.1
16		공적연금	51,745	56,499	5.9	5.4	△0.6
17		보훈	0	0	0.0	0.0	0.0
18		주택	6,848	7,594	0.8	0.7	△0.1
19		사회복지일반	62,260	64,900	7.2	6.2	△1.0
20		아동보육	0	0	0.0	0.0	0.0
21		노인	6,999	7,634	0.8	0.7	△0.1
22		여성·가족·청소년	16,005	14,764	1.8	1.4	△0.4
23		고용	58,337	63,188	6.7	6.0	△0.7
24		노동	20,695	22,667	2.4	2.2	△0.2
25	보건	보건의료	97,687	106,743	11.2	10.2	△1.1
26		건강보험	34,102	36,322	3.9	3.5	△0.5
27	농림수산	농업 및 농촌 ¹⁾	55,364	56,850	6.4	5.4	△0.9
28		임업 및 산촌	5	2	0.0	0.0	0.0
29		수산 및 어촌	212	183	0.0	0.0	0.0
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333	345	0.0	0.0	0.0
31		에너지 및 자원개발	1,371	1,385	0.2	0.1	0.0
32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37,209	38,544	4.3	3.7	△0.6
33		산업혁신지원	141,680	282,902	16.3	27.0	10.7
34		창업 및 벤처	14,195	14,286	1.6	1.4	△0.3
35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41,322	45,275	4.7	4.3	△0.4
36		지식재산일반	0	0	0.0	0.0	0.0
37		철도	2,610	0	0.3	0.0	△0.3
38	교통 및 물류	해운 및 항만	494	57	0.1	0.0	△0.1
39		물류등 기타	4,288	4,378	0.5	0.4	△0.1
4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4,537	4,836	0.5	0.5	△0.1
41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89	94	0.0	0.0	0.0

주: 1)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일부 조세지출 항목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등 복수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부문별 귀속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의 실적 전액을 농업·농촌 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예산분류(분야·부문)별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재정지출의 부문별 자원배분 구조

재정지출도 동일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75개 부문별 자원배분 구조를 살펴보았다.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공적연금 부문이 전체 재정지출의 1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과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각각 10.9%, 재정·금융 6.3%, 주택 5.4%, 노인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6개 부문의 비중은 49.4%로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조세지출의 경우 산업혁신지원한 부문이 전체의 27.0%, 상위 5개 부문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과 2027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세지출은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큰 폭 확대에 따라 해당 부문의 비중이 16.3%에서 27.0%로 상승한 반면, 재정지출은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보통신, 산업혁신지원 등 여러 부문에서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공적연금,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은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재정지출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중이 낮아졌다.

이처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부문별 자원배분 구조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화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정책영역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의 전체 규모와 조세지출·재정지출 간 구성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90] 16대 분야 75개 부문별 재정지출 현황

(단위: 조원, %, %p)

일련 번호	분야	부문	2026	2027	비중		증감
			본예산	예산안	2026	2027	
1	일반·지방 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1.3	1.3	0.2	0.2	0.0
2		국정운영	0.9	0.9	0.1	0.1	0.0
3		지방행정·재정지원	72.5	89.1	10.0	10.9	0.9
4		재정금융	41.4	51.6	5.7	6.3	0.6
5		정부자원관리	1.6	1.9	0.2	0.2	0.0
6		일반행정	3.7	4.2	0.5	0.5	0.0
7	공공질서 및 안전	중대범죄수사	0.0	0.5	0.0	0.1	0.1
8		법원및헌재	2.7	2.8	0.4	0.3	0.0
9		법무	4.9	5.7	0.7	0.7	0.0
10		경찰	14.7	15.4	2.0	1.9	-0.1
11		해경	2.1	2.2	0.3	0.3	0.0
12		재난관리	2.9	2.2	0.4	0.3	-0.1

일련 번호	분야	부문	2026	2027	비중		증감
			본예산	예산안	2026	2027	
13	통일·외교	통일	1.3	1.3	0.2	0.2	0.0
14		외교통상	5.8	5.8	0.8	0.7	-0.1
15	국방	병력운영	21.9	22.4	3.0	2.7	-0.3
16		전력유지	25.4	27.7	3.5	3.4	-0.1
17		방위력개선	20.0	22.7	2.7	2.8	0.0
18		병무행정	0.5	0.5	0.1	0.1	0.0
19	교육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1	89.7	11.3	10.9	-0.4
20		고등교육	16.3	19.3	2.2	2.4	0.1
21		평생·직업교육	1.3	1.5	0.2	0.2	0.0
22		교육일반	0.2	0.2	0.0	0.0	0.0
2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4.6	5.9	0.6	0.7	0.1
24		관광	1.5	1.8	0.2	0.2	0.0
25		체육	1.7	1.8	0.2	0.2	0.0
26		문화재	1.5	1.7	0.2	0.2	0.0
27		문화 및 관광일반	0.4	0.4	0.1	0.1	0.0
28	환경	해양환경	0.5	0.6	0.1	0.1	0.0
29		환경일반	0.6	0.6	0.1	0.1	0.0
30		물환경	5.8	5.7	0.8	0.7	-0.1
3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8	1.9	0.2	0.2	0.0
3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3	4.9	0.6	0.6	0.0
33	사회복지	자연환경	0.9	0.9	0.1	0.1	0.0
34		기초생활보장	24.0	28.8	3.3	3.5	0.2
35		취약계층지원	6.5	7.3	0.9	0.9	0.0
36		공적연금	92.3	98.6	12.7	12.0	-0.7
37		보훈	6.8	7.3	0.9	0.9	0.0
38		주택	38.4	44.0	5.3	5.4	0.1
39		사회복지일반	1.2	1.4	0.2	0.2	0.0
40		아동보육	6.1	6.8	0.8	0.8	0.0
41		노인	29.1	31.8	4.0	3.9	-0.1
42		여성·가족·청소년	2.0	2.1	0.3	0.3	0.0
43		고용	25.0	25.7	3.4	3.1	-0.3
44	보건	노동	11.9	12.3	1.6	1.5	-0.1
45		고용노동일반	0.8	0.9	0.1	0.1	0.0
46		보건의료	5.2	5.6	0.7	0.7	0.0
47		건강보험	14.3	15.5	2.0	1.9	-0.1
48	농림수산	식품의약안전	0.8	0.9	0.1	0.1	0.0
49		농업 및 농촌	20.3	22.5	2.8	2.7	-0.1
50		임업 및 산촌	3.2	3.3	0.4	0.4	0.0
51		수산 및 어촌	3.5	3.9	0.5	0.5	0.0
52	산업·중소 기업· 에너지	식품업	1.0	1.0	0.1	0.1	0.0
53		무역 및 투자유치	1.2	1.4	0.2	0.2	0.0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5.3	10.3	0.7	1.3	0.5
55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0.8	0.9	0.1	0.1	0.0
56		산업혁신지원	8.3	11.1	1.1	1.4	0.2

일련 번호	분야	부문	2026	2027	비중		증감
			본예산	예산안	2026	2027	
57		창업 및 벤처	4.0	5.8	0.5	0.7	0.2
58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	11.9	11.2	1.6	1.4	-0.3
59		지식재산일반	0.4	0.5	0.1	0.1	0.0
60	교통 및 물류	도로	6.3	5.3	0.9	0.6	-0.2
61		철도	8.9	8.4	1.2	1.0	-0.2
62		해운 및 항만	2.2	2.3	0.3	0.3	0.0
63		항공·공항	1.3	1.1	0.2	0.1	-0.1
64		물류등 기타	4.1	5.9	0.6	0.7	0.2
65	통신	방송통신	0.4	0.4	0.0	0.0	0.0
66		우정	6.6	6.8	0.9	0.8	-0.1
67		정보통신	5.0	8.5	0.7	1.0	0.3
68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2.4	2.6	0.3	0.3	0.0
69		지역 및 도시	2.3	3.1	0.3	0.4	0.1
70		산업단지	0.3	0.2	0.0	0.0	0.0
71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5.1	6.3	0.7	0.8	0.1
72		과학기술일반	0.7	0.8	0.1	0.1	0.0
7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0.5	0.5	0.1	0.1	0.0
74		과학기술연구개발	6.7	8.2	0.9	1.0	0.1
75	예비비	예비비	4.0	4.5	0.5	0.5	0.0
합계			727.9	820.9	100	100	0.0

자료: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xl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문별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결과

앞에서 살펴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재원배분 구조를 동일한 정책영역에서 연계하여 살펴보기 위해, 75개 부문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산하고 정책수단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부문에서 정부지원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가운데 어느 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27년 기준 전체 75개 부문 가운데 9개 부문에서 조세지출이 전체 정부지원의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교육일반(87.3%), 사회복지일반(82.5%), 산업·중소기업일반(81.5%), 산업혁신지원(71.8%), 보건의료(65.6%),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53.0%) 등 6개 부문에서는 조세지출 비중이 재정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기능별 분류에 속하는 정책영역이라도 정부지원이 재정사업보다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문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청소년(41.5%),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28.7%), 농업·농촌

(20.2%) 부문에서 조세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문별 연계 결과를 통해 분야 단위의 총량 비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세부적인 정책영역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식별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단 간 역할분담이나 유사·중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정책수단별 구성 변화는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산업혁신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및 보건의료 부문은 재정지출에 비해 조세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 정부지원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은 +8.6%p,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및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각각 2.9%p, 0.4%p 상승했다. 반면 재정·금융(△2.1%p), 기초생활보장(△2.5%p), 농업·농촌(△1.2%p) 부문에서는 조세지출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재정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조세지출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처럼 전체 정부지원이 증가하더라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상대적 증가폭에 따라 정책수단별 구성은 부문별로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신지원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총 정부지원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7.8%에서 2026년 63.2%, 2027년 71.8%로 상승하였다. 특히 2026~2027년 동안 재정지출은 8.3조원에서 11.1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조세지출은 14.2조원에서 28.3조원으로 약 두 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정책수단의 구성이 조세지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라기보다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부문별 연계분석은 특정 정책영역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의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어떠한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동일한 기능별 부문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문별 구성비만으로 정책수단 간 유사·중복 또는 대체관계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부문별 연계 결과는 기능별 분류상 동일한 부문에 포함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실제로도 동일한 정책대상이나 정책목적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개별 조세특례와 재정사업의 지원대상·목적·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일반 부문의 조세지출은 대부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약 1.1조원)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같은 부문의 재정지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 교육부 교육행정지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행정지원 등 주로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별 분류상 동일한 교육일반 부문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세지출을 교육일반 부문의 재정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정책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일반 부문에서 조세지출 비중이 87.3%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분류상 대응관계와 실제 정책내용 간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은 이와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조세지출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2.2조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지출에는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저탄소생태계 조성, 탄소중립기반 구축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프로그램 수준의 정보만으로 개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직접적인 중복·보완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자원순환 및 환경개선이라는 동일한 정책영역에서 두 정책수단이 함께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세지출도 전체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1] 75개 부문별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부 문	2026년 지출			2026년 비중		2027년 지출			2027년 비중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1	입법 및 선거관리	12,993	406	13,399	97.0	3.0	13,136	442	13,578	96.7	3.3
2	국정운영	8,530	0	8,530	100.0	0.0	9,157	0	9,157	100.0	0.0
3	지방행정·재정지원	725,339	1,120	726,459	99.8	0.2	891,142	1,369	892,511	99.8	0.2
4	재정금융	413,703	102,157	515,860	80.2	19.8	515,596	111,027	626,623	82.3	17.7
5	정부자원관리	16,408	0	16,408	100.0	0.0	19,150	0	19,150	100.0	0.0
6	일반행정	36,684	0	36,684	100.0	0.0	42,217	0	42,217	100.0	0.0
7	중대범죄수사	0	0	0	0	0.0	4,724	0	4,724	100.0	0.0
8	법원 및 헌재	26,701	0	26,701	100.0	0.0	28,186	0	28,186	100.0	0.0
9	법무	49,349	0	49,349	100.0	0.0	56,544	0	56,544	100.0	0.0
10	경찰	147,037	0	147,037	100.0	0.0	154,058	0	154,058	100.0	0.0
11	해경	21,047	0	21,047	100.0	0.0	22,257	0	22,257	100.0	0.0
12	재난관리	28,855	0	28,855	100.0	0.0	21,813	0	21,813	100.0	0.0
13	통일	12,819	0	12,819	100.0	0.0	12,956	0	12,956	100.0	0.0
14	외교통상	57,576	10	57,586	100.0	0.0	58,246	10	58,256	100.0	0.0
15	병력운영	218,729	0	218,729	100.0	0.0	223,901	0	223,901	100.0	0.0
16	전력유지	253,589	173	253,762	99.9	0.1	276,515	176	276,691	99.9	0.1
17	방위력개선	199,544	0	199,544	100.0	0.0	227,112	0	227,112	100.0	0.0
18	병무행정	5,178	0	5,178	100.0	0.0	5,249	0	5,249	100.0	0.0
19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1,165	0	821,165	100.0	0.0	897,354	0	897,354	100.0	0.0
20	고등교육	162,965	1	162,966	100.0	0.0	193,014	1	193,015	100.0	0.0
21	평생·직업교육	13,427	0	13,427	100.0	0.0	15,206	0	15,206	100.0	0.0

구 분	부 문	2026년 지출			2026년 비중		2027년 지출			2027년 비중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22	교육일반	1,677	10,605	12,282	13.7	86.3	1,803	12,354	14,157	12.7	87.3
23	문화예술	45,634	348	45,982	99.2	0.8	59,373	711	60,084	98.8	1.2
24	관광	14,804	3,879	18,683	79.2	20.8	17,580	2,621	20,201	87.0	13.0
25	체육	16,987	50	17,037	99.7	0.3	18,334	52	18,386	99.7	0.3
26	문화재	14,971	0	14,971	100.0	0.0	16,645	0	16,645	100.0	0.0
27	문화및관광일반	4,024	0	4,024	100.0	0.0	4,167	0	4,167	100.0	0.0
28	해양환경	4,598	0	4,598	100.0	0.0	5,640	0	5,640	100.0	0.0
29	환경일반	6,339	0	6,339	100.0	0.0	6,411	0	6,411	100.0	0.0
30	물환경	58,007	0	58,007	100.0	0.0	56,530	0	56,530	100.0	0.0
3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7,747	21,305	39,052	45.4	54.6	19,360	21,873	41,233	47.0	53.0
3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3,289	10,561	53,850	80.4	19.6	49,414	7,484	56,898	86.8	13.2
33	자연환경	9,156	0	9,156	100.0	0.0	8,981	0	8,981	100.0	0.0
34	기초생활보장	239,868	53,812	293,680	81.7	18.3	287,510	53,896	341,406	84.2	15.8
35	취약계층지원	65,063	7,313	72,376	89.9	10.1	72,839	7,844	80,683	90.3	9.7
36	공적연금	922,824	51,745	974,569	94.7	5.3	986,370	56,499	1,042,869	94.6	5.4
37	보훈	67,747	0	67,747	100.0	0.0	73,220	0	73,220	100.0	0.0
38	주택	383,986	6,848	390,834	98.2	1.8	439,755	7,594	447,349	98.3	1.7
39	사회복지일반	12,170	62,260	74,430	16.4	83.6	13,767	64,900	78,667	17.5	82.5
40	아동보육	61,164	0	61,164	100.0	0.0	68,325	0	68,325	100.0	0.0
41	노인	290,922	6,999	297,921	97.7	2.3	318,451	7,634	326,085	97.7	2.3
42	여성·가족·청소년	19,673	16,005	35,678	55.1	44.9	20,800	14,764	35,564	58.5	41.5
43	고용	249,703	58,337	308,040	81.1	18.9	257,459	63,188	320,647	80.3	19.7
44	노동	118,990	20,695	139,685	85.2	14.8	123,185	22,667	145,852	84.5	15.5

구 분	부 문	2026년 지출			2026년 비중		2027년 지출			2027년 비중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45	고용노동일반	8,261	0	8,261	100.0	0.0	8,976	0	8,976	100.0	0.0
46	보건의료	52,213	97,687	149,900	34.8	65.2	55,986	106,743	162,729	34.4	65.6
47	건강보험	143,241	34,102	177,343	80.8	19.2	154,662	36,322	190,984	81.0	19.0
48	식품의약품안전	8,348	0	8,348	100.0	0.0	8,919	0	8,919	100.0	0.0
49	농업 및 농촌	203,191	55,364	258,555	78.6	21.4	225,021	56,850	281,871	79.8	20.2
50	임업및산촌	32,132	5	32,137	100.0	0.0	32,753	2	32,755	100.0	0.0
51	수산업및어촌	34,794	212	35,006	99.4	0.6	39,302	183	39,485	99.5	0.5
52	식품업	10,198	0	10,198	100.0	0.0	9,779	0	9,779	100.0	0.0
53	무역 및 투자유치	11,591	333	11,924	97.2	2.8	14,344	345	14,689	97.7	2.3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52,738	1,371	54,110	97.5	2.5	102,834	1,385	104,219	98.7	1.3
55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8,061	37,209	45,270	17.8	82.2	8,766	38,544	47,310	18.5	81.5
56	산업혁신지원	82,667	141,680	224,348	36.8	63.2	111,204	282,902	394,106	28.2	71.8
57	창업 및 벤처	39,512	14,195	53,707	73.6	26.4	57,743	14,286	72,029	80.2	19.8
58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	118,916	41,322	160,238	74.2	25.8	112,286	45,275	157,561	71.3	28.7
59	지식재산일반	4,106	0	4,106	100.0	0.0	4,672	0	4,672	100.0	0.0
60	도로	62,985	0	62,985	100.0	0.0	52,888	0	52,888	100.0	0.0
61	철도	89,496	2,610	92,106	97.2	2.8	83,679	0	83,679	100.0	0.0
62	해운 및 항만	21,502	494	21,996	97.8	2.2	23,358	57	23,414	99.8	0.2
63	항공·공항	13,481	0	13,481	100.0	0.0	10,579	0	10,579	100.0	0.0
64	물류등 기타	40,993	4,288	45,281	90.5	9.5	59,316	4,378	63,694	93.1	6.9
65	방송통신	3,591	0	3,591	100.0	0.0	3,520	0	3,520	100.0	0.0
66	우정	65,924	0	65,924	100.0	0.0	67,530	0	67,530	100.0	0.0
67	정보통신	50,426	0	50,426	100.0	0.0	84,820	0	84,820	100.0	0.0

구 분	부 문	2026년 지출			2026년 비중		2027년 지출			2027년 비중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재정지출 (결산, A)	조세지출 (실적, B)	총재정지출 (A+B)	재정지출	조세지출
68	수자원	23,824	0	23,824	100.0	0.0	26,011	0	26,011	100.0	0.0
69	지역 및 도시	22,664	4,537	27,201	83.3	16.7	30,799	4,836	35,634	86.4	13.6
70	산업단지	2,520	0	2,520	100.0	0.0	2,045	0	2,045	100.0	0.0
71	과학기술연구지원	50,661	89	50,750	99.8	0.2	62,827	94	62,921	99.9	0.1
72	과학기술일반	7,358	0	7,358	100.0	0.0	8,153	0	8,153	100.0	0.0
7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5,333	0	5,333	100.0	0.0	5,498	0	5,498	100.0	0.0
74	과학기술연구개발	67,087	0	67,087	100.0	0.0	82,233	0	82,233	100.0	0.0
75	예비비	40,000	0	40,000	100.0	0.0	45,000	0	45,000	100.0	0.0

주: 1)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일부 조세지출 항목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등 복수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부문별 귀속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해당 항목의 실적 전액을 농업·농촌 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6.9.)의 예산분류(분야·부문)별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xl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하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부문별로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영역에 따라 두 정책수단의 상대적 활용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그 구성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교육일반, 사회복지일반,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혁신지원, 보건의료,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등에서 조세지출이 전체 정부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다수의 부문에서는 재정지출이 주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산업혁신지원과 같이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정책수단별 구성비가 단기간에 변화한 부문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문별 연계는 분야 단위의 총량 비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부 정책영역별 전체 정부지원 규모와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상대적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세지출 비중이 높거나 정책수단별 구성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부문을 식별함으로써,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역할분담이나 개별 제도 간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을 선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연계 결과만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실질적인 대응관계나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기능별 분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교육일반 부문의 사례와 같이 실제 정책목적이나 지원대상이 상이할 수 있는 반면,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과 같이 동일한 정책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지원수단이 함께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문별 연계분석은 정책영역별 정부지원 구조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기초분석으로 활용하되, 구체적인 정책수단 간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통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지출의 분야·부문 분류가 개별 제도의 실질적인 정책목적과 지원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능별 분류는 양 지출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분류상 동일한 부문에 포함된 제도 간 실제 대응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부문별 총량이나 구성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개별 조세지출의 정책목적과 수혜대상,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분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⁷¹⁾

71)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각각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두 제도 모두 자녀양육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아동·보육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이 크다. 또한 무

아울러 이러한 연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지출의 분류·귀속정보를 구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조세지출의 분야·부문 분류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일부 조세지출은 정책영역별 귀속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조세지출의 분야·부문별 귀속정보를 보다 구체화하고, 항목별 실적·전망치와 분류정보를 분석 가능한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부문별 비교·분석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문별 연계 결과를 개별 제도 수준의 검토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분석을 통해 조세지출 비중이 높거나 정책수단별 구성 변화가 큰 영역을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수단 간 역할분담이나 유사·중복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부문별 총량 비교를 개별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계 검토로 연결하고, 예산편성·세제개편·성과평가 및 결산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특별공제는 노동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갖고 있으며, 유사한 주거비 지원 성격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주택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고, 재정지출의 주택 부문에서도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운용중인 조세지출 현황(경과규정 포함 총 290개)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6	9	10
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6.12.31.	0	0	0
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2	0.4	0.7
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5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	신설	추정곤란
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	26.12.31.	0	0	0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2	3	3
8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9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10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26.12.31.	0	0	0
1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1	0.1	0.08
12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13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6.12.31.	47	37	31
15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26.12.31.	87	87	0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799	837	815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6.12.31.	231	266	280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12.31.	128	111	103
19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6.12.31.	20	19	2
20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6.12.31.	3,642	2,610	추정곤란
21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12.31.	4	4	1
22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6.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2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6.12.31.	377	405	437
25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12.31.	16	0	0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82	102	85
27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51	69	94
28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26.12.31.	0.2	0.1	0
2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6.12.31.	3	3	5
30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6.12.31.	408	453	38
3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26.12.31.	34	40	4
3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3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6.12.31.	396	481	518
34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6.12.31.	52	67	70
3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3,545	3,774	4,152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3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6.12.31.	139	142	154
3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	26.12.31.	0.5	0.9	0.9
38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1	0.1
3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26.12.31.	47	76	81
40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02	0.02	0.03
41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12.31.	2,076	2,817	729
4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26.12.31.	9,110	7,800	7,749
4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13	13	3
44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6.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6.12.31.	11,608	12,297	14,239
46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47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4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6.12.31.	5	10	11
49	통합고용세액공제	26.12.31.	43,035	45,542	48,414
5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12.31.	2,814	1,982	500
5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	0	0
5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0.05	0.04	0.04
53	혼인세액공제	26.12.31.	1,218	1,416	1,546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54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26.12.31.	-	신설	추정곤란
5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7.6.30.	19	23	18
56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27.12.31.	0	0	0
57	공공매입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7.12.31.	62	35	38
5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7.12.31.	32	29	31
5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27.12.31.	8	10	14
6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27.12.31.	352	320	353
61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7.12.31.	0.1	0.02	0.02
6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27.12.31.	197	182	199
63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27.12.31.	279	1,615	134
64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7.12.31.	783	652	675
6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7.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6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7.12.31.	2	1	0.5
6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27.12.31.	0.9	0.4	0
6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7.12.31.	222	141	155
6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7.12.31.	9,181	10,413	10,634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27.12.31.	7	0	0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7.12.31.	0.9	0	3
7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8.4.23.	-	신설	956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7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12.31.	101	274	299
7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	신설	3,789
7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8.12.31.	936	440	463
76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12.31.	2,428	3,709	4,042
78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8.12.31.	1	1	1
79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8.12.31.	774	536	545
8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119	90	94
81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8.12.31.	285	2,267	2,304
8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28.12.31.	0	0	0
8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57	19	20
84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바·전통시장 지출분 손금산입 특례	28.12.31.	8	15	16
85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0.01	0	0
86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0	0.01	0.01
87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564	389	410
88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0	0	0
89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	신설	추정곤란
90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28.12.31.	89	47	52
9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12.31.	96	99	105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92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12.31.	24	52	54
9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28.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94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8.12.31.	21,914	20,566	21,304
95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8.12.31.	4	3	3
9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8.12.31.	0	0	0
9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8.12.31.	1,968	1,980	2,145
98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8.12.31.	120	176	185
9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7,996	7,347	5,770
10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155	225	239
10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380	311	334
10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33	40	42
10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280	257	270
10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8.12.31.	222	261	281
10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8.12.31.	771	776	944
10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8.12.31.	489	1,065	1,190
107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8.12.31.	-	신설	0
108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8.12.31.	116	203	204
10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8.12.31.	43,243	41,360	48,292
1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28.12.31.	0.3	0.3	0.3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1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12.31.	16	24	26
11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157	89	94
11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8.12.31.	486	511	564
1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247	333	667
115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12.31.	637	1,721	1,783
116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2	0.7	14
117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	신설	28
11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433	339	281
11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8.12.31.	18,203	21,305	21,873
120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28.12.31.	-	신설	추정공란
12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8.12.31.	3,288	5,820	4,768
1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0.8	0.2	0.3
123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0	0	0
12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8.12.31.	2,655	2,610	2,171
12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8.12.31.	433	486	532
12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8.12.31.	23,404	22,875	24,380
12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1	1	1
12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 지원	28.12.31.	-	신설	0
129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8.12.31.	223	4,258	4,327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30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28.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31	창업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68	123	134
13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12.31.	4	3	3
13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28.12.31.	-	신설	추정곤란
13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8.12.31.	104	128	139
13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3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28.12.31.	282	104	110
137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	신설	추정곤란
138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28.12.31.	-	신설	960
13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28.12.31.	6	0	0
140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8.12.31.	513	486	506
14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9.12.31.	-	신설	추정곤란
142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9.12.31.	2	2	2
143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9.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4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 특례	29.12.31.	850	1,330	1,276
145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	29.12.31.	-	신설	추정곤란
146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9.12.31.	10,259	11,433	11,668
147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9.12.3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4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9.12.31.	2,271	2,449	2,472
149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9.12.31.	579	564	567
1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9.12.31.	-	신설	추정곤란
15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9.12.31.	445	161	40
15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9.12.31.	0	0	0
153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9.12.31.	732	767	392
154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29.12.31.	408	389	392
155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0.12.31.	-	신설	추정곤란
156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31.12.31.	-	신설	136
157	가업상속공제	없음	5,410	3,042	3,518
158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없음	10	0	0
15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없음	4,388	5,894	6,502
160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61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없음	14,074	14,926	16,309
16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379	767	816
163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0	0	0
16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없음	6,442	6,998	7,633
165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6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없음	617	1,120	1,369
167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28	40	41
168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없음	0	0	0
169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없음	34	29	28
170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550	946	980
17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없음	9,368	9,411	11,107
172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에 대한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73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7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없음	33,654	34,102	36,322
175	국민주택 및 동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7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없음	2,091	2,080	2,288
17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없음	24	1	1
178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없음	188	173	176
179	근로장려금	없음	46,367	45,470	46,042
180	금융재산 상속공제	없음	5,571	2,632	3,043
181	기부장려금	없음	0	0	0
18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10	10	11
183	기장세액공제	없음	1,176	1,208	1,301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18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8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8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87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없음	1,747	1,358	1,407
18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없음	345	255	277
189	대학 재정 건전화에 위한 과세특례	없음	1	0.9	1
190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없음	0	0	0
191	동거주택 상속공제	없음	2,869	2,106	2,435
192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없음	35,874	37,209	38,544
193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없음	14,362	15,551	17,016
19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없음	8,343	8,571	9,013
195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비영리단체가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96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없음	0	0	0
19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없음	72,530	80,170	87,591
198	부녀자 추가공제	없음	841	995	1,081
199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506	798	839
20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없음	95	137	0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20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없음	3,636	4,745	5,377
203	상훈법상 훈장에 부속한 부상 또는 각종 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4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	신설	추정곤란
20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없음	254	210	231
20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2,708	2,817	3,030
20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없음	3,810	4,449	4,794
20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없음	31,080	34,935	32,633
20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41,476	69,385	105,114
210	연금계좌세액공제	없음	20,654	25,751	28,010
211	연금보험료공제	없음	47,581	51,745	56,499
212	영농상속공제	없음	2,297	1,829	2,114
2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14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없음	1	1	1
215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없음	9	9	9
216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없음	48	74	75
217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1,280	1,541	1,688
218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4,635	5,602	6,236
219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없음	15,721	17,375	18,999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22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없음	7,578	6,999	7,627
22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없음	2	0.8	0.9
222	자녀세액공제	없음	8,620	13,436	11,965
223	자녀장려금	없음	8,917	8,342	7,854
2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25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없음	4,586	6,105	6,489
226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없음	1,894	2,038	2,111
227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없음	277	289	277
22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없음	20	12	27
229	장애인 추가공제	없음	4,670	4,974	5,429
230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4,233	4,279	4,321
231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32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없음	99	152	163
233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1,964	1,517	1,322
234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없음	357	406	442
235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없음	1,544	2,531	2,602
2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141	139	158
23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238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없음	0.5	0.7	0.7
239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40	주한 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없음	0	0	0
241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없음	1	1	1
242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없음	308	324	286
24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4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과세특례	없음	1,199	1,313	1,444
24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없음	55	17	19
246	통합투자세액공제	없음	24,887	60,116	165,583
247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없음	1,392	1,362	1,376
248	한부모 추가공제	없음	126	158	172
249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5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51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57	58	66
252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년 종료	0	0	0
25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년 종료	8	24	26
254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00년 종료	153	148	161
255	장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0년 종료	253	259	282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256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03년 종료	23	110	119
25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3년 종료	13	3	3
258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09년 종료	0	0	0
259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10.2월 종료	0.8	0	0
260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1.4월 종료	0.06	0.08	0.09
26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12년 종료	322	467	497
262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12년 종료	40	44	47
263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3년 종료	0.06	0.04	0.07
26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4년 종료	135	174	188
265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15년 종료	396	353	265
26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5년 종료	21	8	8
267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15년 종료	130	116	124
268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7년 종료	0	0	0
269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7년 종료	53	36	38
27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년 종료	52	33	34
27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8년 종료	484	257	270
27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9년 종료	0.2	0.1	0.2
27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년 종료	0.01	0	0

(단위: 억원)

연번	조세지출내역	적용 기한	'25 실적	'26 잠정	'27 전망
27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년 종료	0.2	0.1	0.1
275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년 종료	0.01	0	0
276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년 종료	0.9	0.5	0.5
27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1년 종료	3	2	0
27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2년 종료	0	0	0
279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2년 종료	0.06	0.03	0.01
28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2년 종료	0.02	0	0
281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3년 종료	0.5	2.2	2.2
282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4년 종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8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4년 종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8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4년 종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85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5.6.30.	194	0	0
286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5년 종료	0.01	0	0
28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5년 종료	10	7	7
288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25년 종료	1,752	1,324	0
289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25년 종료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9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5년 종료	2	8	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조세지출 신설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¹⁾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세수효과
2022	1	§29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4년 이후
	2	§30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특례	추정곤란
	3	§91의20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정곤란
	4	소득§119의3 법인§93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767
2023	1	§25의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25년 이후
	2	§104의15 §12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5년 이후
	3	§104의33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25년 이후
	4	§105의3 §106①-9의3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25.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5년 이후
2024	1	§47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추정곤란
	2	§71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3	§95	혼인세액공제	△1,285
	4	§98의9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5	§99의1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6	§100의33	주주환원 축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26년 이후
	7	§100의34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26년 이후
	8	§104의34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특례	'26년 이후

1)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세법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개정사항과 다를 수 있다.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세수효과
2025	1	§25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8
	2	§28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3	§38의3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추정곤란
	4	§91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추정곤란
	5	§91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6	§91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7	§91의28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8	§97의10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추정곤란
	9	§104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89
	10	§104의36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960
	11	§115의2	저도수 특정 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추정곤란
	12	개소법 §106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956
2026	1	§19의2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136
	2	§29	국내생산세액공제	'28년 이후
	3	§30의8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4	§71의3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5	§91의29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추정곤란
	6	§91의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추정곤란
	7	§97의11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8	§97의12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추정곤란
	9	§104의30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10	§121의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과세특례	추정곤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조세지출 폐지조항: 「조세지출예산서」기준, 2022~2026년²⁾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해당 연도 전망치
2022	1	§26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0.1
	2	§29의3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71
	3	§30의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329
	4	§83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	0.1
	5	§85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2
	6	§86의42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적용기한 종료	2,317
	7	§91의2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
	8	§97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
2022	9	§106㉠-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4
	10	§111의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807
	11	§118㉠-22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16
2023	1	§7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추정곤란
	2	§3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3	§106㉠-9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6
	4	§121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5	§121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6	§122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32

2)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세법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개정사항과 다를 수 있다.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해당 연도 전망치
2024	1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우대)	추정곤란
	2	§12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3	§28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추정곤란
	4	§29의8③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5
	5	§91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6	§106② §116①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7	소득법 §59의4⑧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추정곤란
2025	1	§13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0
	2	§24	통합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추정곤란 ³⁾
	3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26
	4	§91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정곤란
	5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0
	6	§107의3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177
	7	§109의2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60
2026	1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0
	2	§20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0
	3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9
	4	§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5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0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해당 연도 전망치
2026	6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3
	7	§75	기부장려금	0
	8	§87③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10
	9	§92	혼인세액공제	1,416
	10	§99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추정곤란
	11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
	12	§104의22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10
	13	§104의35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0.1
	14	§105①-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610
	15	§106①-1, §111①-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
	16	§106①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곤란
	17	§106①9의2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2,817
	18	§106①-12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4
	19	§106의2①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453
	20	§109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1,982
	21	§111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40
	22	§116	농·수협 조합원 등의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87
	23	§118①-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 관세 감면	0.1

(단위: 억원)

연도	연 번	조특법 조항	내용	해당 연도 전망치
2026	24	§121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0
	25	개소법 §19의3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0
	26	관세법 §90①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137
	27	부가법 §26①-10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0

주: 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재설계

2) 기존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미만)로 통합 · 재설계

3)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적만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에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더서울미디어(주)(tel 02·2274·358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SN 3022-12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